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8. 12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축산물 등급 판정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노 경 상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 발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노 경 상

수석연구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양 정 희

연구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 의 석

연구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 진 우

| | |
|---------------------------------------|-----------|
| I. 서론 | 1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
|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 |
| | |
| II.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성과분석 | 4 |
| 1.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추진경과 | 4 |
| 2.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실적 | 17 |
| 3.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시행성과 | 32 |
| 가. 제도 시행목적 | 32 |
| 나. 생산부문에서의 성과분석 | 33 |
| 다. 유통부문에서의 성과분석 | 47 |
| 라. 소비부문에서의 성과분석 | 53 |
| 마. 축산물등급판정결과정보의 생산농가 피드백 실적 | 58 |
| 바. 등급판정결과 컨설팅 확대 | 61 |
| 사.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축산물브랜드화 촉진 성과와 과제 | 62 |
| | |
| III. 축산물 등급표시 개선안 | 66 |
| 1. 주요국의 축산물 등급표시 현황 | 66 |
| 2. 우리나라 농·수산물 등급표시 현황 | 68 |
| 3. 우리나라 축산물 등급표시 현황 | 69 |

| | |
|--------------|----|
| 4. 개선안 | 83 |
|--------------|----|

IV. 축산물등급판정의 기계화 96

| | |
|------------------------|-----|
| 1. 국내 기계등급판정 현황 | 96 |
| 2. 외국의 기계등급판정 현황 | 100 |
| 3. 기계등급판정의 문제점 | 102 |
| 4. 향후방향 | 104 |

V.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향후 발전방향 105

| | |
|---|-----|
| 1. 등급판정 대상 품목의 다각화 | 105 |
| 2. 등급제도의 의무 대상품목 확대 | 107 |
| 3. 가격안정과 투명유통 강화를 위한 지육등급별 가격정산 제도화 | 111 |
| 4.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 제고와 컨설팅 기능의 확대 | 111 |
| 5. 이력추적사업의 확대 | 112 |
| 6. 검정 및 개량사업과 연계 | 113 |
| 7. 기관의 명칭 변경 | 114 |
| 8. 재정안정화 방안 | 115 |

부 록

| | |
|-------------------------------------|-----|
| 1. 축산물 등급표시 관련 법령 조문 | 131 |
| 2. 등급별 출현 경향 및 도매시장가격 차이 | 137 |
| 3. 등급표시 개정에 소요되는 정책·사회적 비용 추정 | 140 |
| 4.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전문) | 144 |
| 5.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명단 | 166 |
| 6.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비교 | 167 |

< 표 목차 >

| | |
|---|----|
| < 표 II-1 >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 및 지역본부 정원 | 16 |
| < 표 II-2 > 소 연도별 품종별 등급판정 두수 | 17 |
| < 표 II-3 > 한우 연도별 성별 1등급 이상 출현율 | 18 |
| < 표 II-4 > 소 연도별 등급별 가격 | 19 |
| < 표 II-5 > 도축장당 소 등급판정 두수 | 20 |
| < 표 II-6 > 돼지 연도별 성별 등급판정 두수 | 21 |
| < 표 II-7 > 돼지 연도별 등급별 판정비율 | 22 |
| < 표 II-8 > 돼지 육질등급 출현율 | 22 |
| < 표 II-9 > 돼지 연도별 등급별 가격(규격) | 23 |
| < 표 II-10 > 돼지 등급별 가격(육질) | 24 |
| < 표 II-11 > 도축장당 연도별 돼지 등급판정 두수 | 25 |
| < 표 II-12 > 계란 연도별 등급판정 개수 | 27 |
| < 표 II-13 > 닭고기 연도별 등급판정 물량 | 28 |
| < 표 II-14 > 쇠고기 연도별 부분육 등급확인 실적 | 29 |
| < 표 II-15 > 쇠고기 연도별 이력추적 실적 | 31 |
| < 표 II-16 > 등급판정제도 운영결과 고급육 출현 지표성적 개선 결과 | 33 |
| < 표 II-17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출현율 | 35 |
| < 표 II-18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 35 |
| < 표 II-19 > 한우 2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비율 | 36 |
| < 표 II-20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판정두수, 기준가 및 등급별 가격 | 38 |
| < 표 II-21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차등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산입전) | 38 |
| < 표 II-22 > 한우의 등급별 평균 도체중량 | 38 |
| < 표 II-23 > 한우의 연도별 차등가 및 기준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산입후) | 39 |
| < 표 II-24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출현율 | 41 |
| < 표 II-25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 41 |
| < 표 II-26 > 돼지 평균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비율 | 42 |

| | |
|--|-----|
| < 표 II-27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판정두수 및 기준가격(평균도체중 산입전) | 43 |
| < 표 II-28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차등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산입전) | 44 |
| < 표 II-29 > 돼지의 등급별 평균 도체중량 | 44 |
| < 표 II-30 > 돼지의 연도별 기준가 및 차등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산입후) | 44 |
| < 표 II-31 > 등급판정제도의 평가(한우) | 46 |
| < 표 II-32 > 등급판정제도의 평가(돼지) | 46 |
| < 표 II-33 > 축산물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실적(우편 제공) | 59 |
| < 표 II-34 > IT기반의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정보제공 실적 | 60 |
| < 표 II-35 > 축산물등급판정소 고객상담센터의 고객상담 실적 | 60 |
| < 표 II-36 > 고객 요구사항 중 주요 개선실적 | 61 |
| < 표 II-37 > 연도별 컨설팅 대상자의 확대 | 61 |
| < 표 II-38 > 전국 대비 컨설팅농가 상위등급 출현율 개선효과 | 62 |
| < 표 II-39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심사기준 | 64 |
| < 표 II-40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현황 및 인증브랜드 개수 | 65 |
| < 표 III-1 > 주요국의 등급기준 현황 | 66 |
| < 표 III-2 > 주요국의 쇠고기 거래유형 등에 따른 등급표시 현황 | 67 |
| < 표 III-3 > 현행 우리나라의 쇠고기 지육의 등급표시 방법 | 67 |
| < 표 III-4 > 주요국의 축산물 소매단계 등급표시 현황 | 67 |
| < 표 III-5 > 한우 육질등급별 출현경향 및 도매시장가격 추이 | 75 |
| < 표 III-6 > 돼지고기 등급별 출현율 및 경락가격 | 78 |
| < 표 III-7 > 돼지고기 육질등급별 출현율 및 가격 비교 | 79 |
| < 표 III-8 > 등급표시 예(例) | 81 |
| < 표 III-9 > 등급표시 개선안 중 B안·C안에 따른 도매시장의 한우 가격영향도 분석 | 90 |
| < 표 IV-1 > 돼지 기계등급판정 기준(1차) | 99 |
| < 표 IV-2 > 연도별 돼지 기계등급판정 비율 | 99 |
| < 표 V-1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시점부터의 사업예산 지원 현황 | 116 |
| < 표 V-2 > 사업예산의 정부보조금 및 등급판정수수료 비율 | 117 |
| < 표 V-3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단가 및 조정 내역 | 117 |

| | |
|---|-----|
| < 표 V-4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징수 내역 | 118 |
| < 표 V-5 > 품목별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점유율 | 119 |
| < 표 V-6 > 시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소·돼지 등급판정수수료 단가 | 120 |
| < 표 V-7 > 시간 및 판정규모를 기준으로 한 캐나다의 등급판정수수료 단가 | 121 |
| < 표 V-8 > 주요 3개국의 축종별 등급판정수수료 단가 | 122 |
| < 표 V-9 > 주요국가별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대상자 구분 | 123 |
| < 표 V-10 > 우리나라 등급판정수수료 납부대상자 구성 비율 | 123 |
| < 표 V-11 > 수수료 매출액 대비 자율품목 점유율 | 123 |
| < 표 V-12 > 2006년 및 2007년 등급판정서비스 원가관리 결과 | 124 |
| < 표 V-13 > 2007년 등급판정서비스 원가산출 결과적용 적정단가 책정 | 125 |
| < 표 V-14 > 축종별 등급판정수수료 적정단가의 외국과의 비율 | 125 |
| < 표 V-15 > 적정단가 인상에 따른 2009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변동 추정 | 126 |

< 그림 목차 >

| | |
|--|-----|
| < 그림 II-1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조직도 및 관할 작업장 수 | 16 |
| < 그림 II-2 > 소 연도별 품종별 등급판정 두수 | 17 |
| < 그림 II-3 > 한우 연도별 거세율 | 18 |
| < 그림 II-4 > 소 연도별 등급별 가격 | 19 |
| < 그림 II-5 > 도축장당 소 등급판정 두수 | 20 |
| < 그림 II-6 > 돼지 연도별 성별 등급판정 두수 | 21 |
| < 그림 II-7 > 돼지 연도별 탕박 등급판정 비율 | 21 |
| < 그림 II-8 > 돼지 연도별 등급별 판정비율 | 22 |
| < 그림 II-9 > 돼지 육질등급 출현율 | 23 |
| < 그림 II-10 > 돼지 연도별 등급별 가격(규격) | 24 |
| < 그림 II-11 > 돼지 등급별 가격(육질) | 25 |
| < 그림 II-12 > 도축장당 연도별 돼지 등급판정 두수 | 25 |
| < 그림 II-13 > 돼지 냉도체 판정비율 | 26 |
| < 그림 II-14 > 계란 연도별 등급판정 개수 | 27 |
| < 그림 II-15 > 닭고기 연도별 등급판정 몰량 | 28 |
| < 그림 II-16 > 쇠고기 연도별 부분육 등급확인 실적 | 29 |
| < 그림 II-17 > 쇠고기 연도별 이력추적 실적 | 31 |
| < 그림 II-18 > 소·돼지 고급육 출현 지표의 개선 추이 | 34 |
| < 그림 II-19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 | 36 |
| < 그림 II-20 > 한우 2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추이 | 37 |
| < 그림 II-21 > 한우 기준가와 차등가 비교 | 39 |
| < 그림 II-22 > 한우의 가격변동에 따른 등급별 가격차등 | 40 |
| < 그림 II-23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 42 |
| < 그림 II-24 > 돼지 평균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추이 | 43 |
| < 그림 II-25 > 돼지 기준가와 차등가 비교 | 45 |
| < 그림 II-26 > 돼지 등급 추이 | 51 |
| < 그림 II-27 > 축산물등급판정두수 대비 축산물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비율 추이 | 59 |
| < 그림 III-1 > 도매시장의 한우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형성 추이 | 74 |
| < 그림 IV-1 > 돼지 기계등급판정 장면 및 측정방법 | 98 |
| < 그림 V-1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지원 예산의 종류별 투입 추이 | 116 |
| < 그림 V-2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징수 추이 | 118 |
| < 그림 V-3 > 적정단가 책정에 따른 2009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변동 추이 | 126 |
| < 그림 V-4 > 적정단가 인상에 따른 2009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점유 추이 | 127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은 '89년부터 추진되어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도체증량의 증가 및 거세울 향상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양축가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또한 축산물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여 축산물 유통의 체계화에 이바지 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FTA 확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DDA 협상 등으로 개방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더욱 필요해 졌다. 또한 축산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동향 등의 변화에 맞는 등급 판정제도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의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 및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의 등급판정사업 성과를 사회·경제·공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등급판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축산물등급표시 방법이 소비자의 구매지표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급판정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FTA, DD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등급판정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축산물등급표시 방법이 소비자 구매지표로써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가공·유통업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등급판정 방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등급판정의 기계화 타당성·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기계에 의한 축산물의 등급판정 방향 및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내여건상 기계에 의한 등급판정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하고, 축산분야 선진 외국의 등급판정 방법과 우리의 등급판정제도 및 방법의 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등급판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 평가보고서, 혁신진단결과, 고객만족도조사결과, 기관청렴도 측정결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감사원감사, 농림수산물식품부감사, 내부감사 보고서를 분석평가를 참고하여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다.

등급표시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현행 축종별 등급 표시 방법의 문제점을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육량·육질 등급표시를 상호 균형분석하며 소비자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등급판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기계에 의한 판정 실태조사를 통해 도축장 여건과의 관계, 소요시간, 판정결과의 비교, 기계 구입 등의 소요비용, 유통업자의 반응 등을 분석하고 현행 판정 방법과 기계에 의한 판정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며 축종별 선진국의 판정 방법과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한국의 유통실태, 소비자 수준, 향후 유통변화와 소비자 선호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그간의 등급판정사업 추진결과가 양축가에게 환류 되어 품질향상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고, 등급에 따른 가격 차등화를 분석함으로써 등급이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육류 거래의 투명화와 합리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즉, 등급별·부위별 선택, 각종 요리, 식육관련 정보제공이 소비자 잉여를 어느 정도 상승시켰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 평가결과를 축산물등급판정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발전방향 수립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등급판정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축산물등급판정 업무를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금번 등급판정 표시방법 및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은 안을 제시하여 유통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 채택되도록 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표시 방법 및 적용범위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야 함으로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정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활용방안

- 향후 발전방안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급표시 방법 및 적용범위의 개정이 확정되면 관련법령의 합리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동 자료는 축산물등급판정 업무에 관련된 업계와 전문가들에게 배부되어 현업과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고 양축가와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통계의 해석과 미래의 추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성과분석

1.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추진경과

가. 도입배경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축산물유통의 표준화·규격화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정부가 축산물등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축산물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수행케 한 정부의 정책 사업이다.

축산물등급제도의 도입은 소, 돼지의 생산과잉, 축산물의 소비형태 변화, 쇠고기 수입자유화 압력 등 국내외 축산물 유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루어졌다.

과거 증산중심의 축산진흥시책과 축산물 수입규제로 축산물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생산과잉 기조가 나타남에 따라 '89년 후반기에 정부의 시책방향은 축산산업의 지속적 경영안정을 위한 수급 및 가격안정 중심의 축산발전시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87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그룹 설치로 시작된 UR다자간 농산물협상은 국내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이어졌으며, 국민식생활은 물량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수입육과의 차별화와 국내산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89년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소·돼지도체등급 시행 계획을 반영하게 되었다.

'89년 4월 24일 한국중축개량협회(회장 송찬원) 주관으로 소·돼지 도체등급시행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11차례의 육류등급실무위원회(심의위원회 합동회의 3차례 포함)를 거쳐 마련된 도체등급기준을 '90년 5월 31일 정부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92년 6월 22일 당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소·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안)을 승인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등급판정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도축장업계가 비용부담, 도축시간 지연, 유통의 투명화에 부정적인 태도, 오랫동안의 유통관행 변화에 대한 저항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나 강력한 위기의식을 갖고 '9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물등급에 따라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축산물시장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축산여건의 변화, 사양기술의 발전, 소비형태의 다양화, 가축개량의 촉진 등 시대적 필요성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16년에 걸쳐 11차례 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또한 축산물유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유통효율 증진과 공정거래 실현을 위하여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 확인사업을 200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4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냉장·부분육 유통을 향한 유통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양계산물의 품질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량을 촉진시켜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란(2001년), 닭고기(2003년)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계란 등급판정은 2003년, 닭고기 등급판정은 200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정착화 되면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과 경험 등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유럽·미국·캐나다 등에서 BSE가 발생하여 쇠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을 브랜드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 확대

1)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정부의 축산정책으로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을 결정한 당시의 농림수산부는 등급판정사업이 가축계량과도 연관이 있음을 감안,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하여금 제도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조치하면서 법제화에 착수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93년 6월 11일 축산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동 시행령 : '93. 12. 14. 동 시행규칙 : '94. 6. 29.) 소속변경,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축산물등급판정 사업 관련)

- 최초신설 : 1993. 6. 11(법률 제4557호)
- 신설사유 : 농림수산부장관은 국내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를 두도록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1994. 12. 31(법률 제4843호) : 축산물등급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일부 완화한다.
 - 1999. 1. 29(법률 제5720호) :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제도를 조직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1999. 9. 7(법률 제6018호) :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케 한다.
 - 2001. 1. 6(법률 제6381호) : 축산물등급판정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다.

(2) 축산법시행규칙(축산물등급판정 사업 관련)

- 최초신설 : 1994. 6. 29.(농림수산부령 1146호)
- 신설사유 : 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등급판정제도의 신설에 따라 등급판정 적용대상 축산물의 종류, 거래지역 및 거래규정 내용을 정하여 축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가축개량의 촉진을 유도한다.
- 주요 개정내용
 - 1999. 9. 7.(농림부령 1345호) : 등급판정제외대상 축산물,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 등급판정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징수비용의 지급 등 신설한다.
 - 2001. 6. 16.(농림부령 1387호) : 닭고기의 품질향상 및 개량을 위하여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닭 도체의 등급판정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한다.

- 2004. 2. 14.(농림부령 1460호) :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계란까지 확대하고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비용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한다.
- 2004. 8. 17.(농림부령 1480호) : 쇠고기의 품질고급화와 현실에 맞는 등급 판정을 위하여 육질등급을 4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육질의 등급을 알아보기 쉽도록 등급의 표시방법을 개선한다.
- 2007. 6. 19.(농림부령 1556호) : 돼지도체의 등급판정기준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판정기준으로 분리한다.

2)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이 고시('94. 11. 22. 농림수산부고시 94-63) 되면서 등급 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와 형태, 등급판정확인서 비치, 등급 판정시행 도축장 지정, 등급판정을 위한 도축장 경영자의 협조사항 등이 명문화,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 소는 '92년 2월 서울, 제주를 시작으로 2000년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98년 12월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 개정으로 '99년에는 도서벽지와 산간오지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00년 강원도 태백, 인제, 화천, 양구군으로 확대되면서 소도체 등급판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 지역 등급판정 의무화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냉장육 유통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급화거래지역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와 축산기업조합은 냉도체 등급판정으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초래됨을 들어 도축 당일의 등급판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소도체 당일 등급판정방법 연구'(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농업개발연구소)를 통해 냉도체 등급판정 추진 저해, 생산자와 소비자 측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고려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상이변 등 긴밀한 사유발생, 7일 이내의 성수기 기간)에만 온도체 등급판정을 적용('99. 10. 1)키로 하였다가 도축장의 냉장시설 확충, 등급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등으로 200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도체 등급판정방법을 폐지하게 되었다.

또한 냉도체 등급판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지방에서의 생고기 식 관습과 마찰을 빚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등급판정 전 일부 부위(앞다리, 우둔)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면제, 사전절취를 허용해오고 있다.

○ 돼지는 '92년부터 '95년에 걸쳐 광역시 중심으로 등급화 거래지역을 고시하고 이후 '99년 1월에는 도청 소재지와 인구 50만 이상의 23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10월에는 전국의 81개 시·군 지역까지 등급화거래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돼지의 등급판정거래지역이 전국의 시 단위 이상 행정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관련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 최초고시 : 1994. 11. 30

(고시 제1994-64호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 주요개정내용

- 1996. 6. 24(고시 제1996-37) : 예냉하지 않고 등외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도체의 범위를 예냉 중 불의의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예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고당일 예냉실에 입고된 도체를 추가한다.
- 1997. 7. 15(고시 제1997-51) : 수출규격돈의 생산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돼지 도체의 등급별 체중과 등지방두께를 상향조정한다.
- 1997. 11. 22(고시 제1997-66) : 소도체 육질 1등급 기준에 1⁺등급을 신설하여 3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시행한다.
- 1998. 6. 17(고시 제1998-31) : 돼지 A등급 도체중량을 상향조정한다.
- 1999. 9. 28(고시 제1999-64) : 도체의 등급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태지에 대해 등급적용을 강화시켜 기존의 1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하향조정한다.
- 2001. 6. 2(고시 제2001-38) : 소도체 성숙도 적용범위 기준완화 및 등외등급 기준을 현실화한다.
- 2003. 3. 28(고시 제2003-14) : 닭고기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제정

- 2004. 3. 19(고시 제2004-10) : 돼지 등급별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상향 조정, 돼지 냉도체 및 기계등급판정 기준의 제도화, 계란등급판정세부기준을 제정
- 2004. 11. 9(고시 제2004-66) : 소도체 육량지수 산식 개정, 육질등급 기준에 1⁺⁺등급을 신설하여 4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근내지방도 기준을 7개 단계에서 9개 단계로 세분화한다.
- 2007. 6. 27(고시 제2007-40) : 돼지 등급기준을 규격등급(A, B, C, D, E)과 육질등급(1⁺, 1, 2, 3등급)으로 분리하고 도체 중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조정한다.

(2)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

- 최초고시 : 1994. 11. 30(고시 제1994-63)
 - 95년 2월 6일부터 서울, 제주지역을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으로 최초 지정
- 주요개정내용
 - 1995. 6. 1(고시 제1995-34) : 부산광역시(소도체),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돼지)로 확대한다.
 - 1995. 9. 23(고시 제1995-80) : 경남 김해시를 소도체 고시지역에서 삭제하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를 소도체 거래지역으로 고시한다.
 - 1995. 10. 26(고시 제1995-90) : 예냉 이전에 일정부위(우둔)를 온도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잠정 허용한다.
 - 1996. 7. 4(고시 제1996-40) : 소도체 등급판정시행 도축장이 소재한 61개 시, 군으로 확대한다.
 - 1996. 9. 6(고시 제1996-62) :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을 전북 군산시 외 11개 시, 군으로 추가 확대한다.
 - 1996. 11. 11(고시 제1996-76) :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당일 등급판정을 9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1997. 7. 5.(고시 제1997-50) :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을 울산광역시 및 전북 부안군을 추가 확대한다.

- 1998. 6. 1(고시 제1998-28) : 과천시 등 41개 시·군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으로 확대한다.
- 1998. 12. 17(고시 제1998-80) : 고창군 등 23개 시·군(99. 1. 1), 강릉시 등 9개 시·군(99. 7. 1)으로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 확대, 수원시 등 10개 시·군(99. 1. 1), 포항시(99. 7. 1)의 돼지도체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지정한다.
- 1999. 7. 7(고시 제1999-41) : 홍천, 평창, 영월 등 8개 시·군 소도체 등급화 거래지역 확대, 경기도 26개 시·군 및 경남 지역 17개 시·군 돼지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확대한다. ('99. 9. 28. 고시 제1999-65호에 의해 삭제됨)
- 2000. 6. 2(고시 제2000-44) : 돼지도체 등급화거래지역을 8개도의 58개 시 지역으로 확대한다.
- 2002. 9. 12(고시 제2002-42) : 돼지도체 등급거래지역을 81개 시·군에서 163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3)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 최초고시 : 1996. 1. 4

(고시 제1995-114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국내산쇠고기의 구별표시방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표시방법 제정
- 주요개정내용
 - 1996. 9. 18(고시 제1996-69) : 돼지고기의 등급 의무표시 제외하고, 쇠고기의 등급표시를 업소가 희망할 경우 특상등급(1⁺, 1), 상등급, 중등급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1998. 7. 10(고시 제1998-42) : 대상지역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수원시 등 12개 시 지역으로 확대한다.
 - 1999. 9. 28(고시 제1999-66) : 대상지역을 2000년 7월 1일부터 의정부시 등 인구 20만 이상 60개 시 지역으로 확대한다.

- 2000. 12. 20(고시 제2000-78) : 수입쇠고기의 범위에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통관일로부터 6개월 미만) 포함한다.
- 2001. 11. 22(고시 제2001-69) : 국내산 쇠고기의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 구분, 쇠고기등급별구분판매지역을 8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2004. 11. 6(고시 제2004-67) : 쇠고기 대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 의무화 및 2005년 7월 1일부터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표시를 삭제한다.
- 2005. 7. 1(고시 제2005-50) : 돼지고기의 부위명 확대 및 갈비삼겹 추가,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을 시 지역에서 군 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 2007. 12. 10(고시 제2007-82) : 식육의 소분할 부위명칭 신설 및 돼지고기 육질등급판정제도 도입에 따른 판매단계에서의 육질등급 표시기준을 마련

3) 등급판정 품목의 확대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소, 돼지의 등급판정의 성공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 결과 계란과 닭고기 등급판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먼저 계란은 2000년 7월 소비자에게 계란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제공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여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란 등급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3월 계란등급제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그해 12월 대구경북양계축협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21개소에서 314백만개에(08. 11)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였다.

닭고기는 2001년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급판정대상 도체에 닭도체를 포함하였으며 2003년 4월 체리부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5개 도계장에서 등급판정을 시행하다가 2005. 12월 등급판정 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한 업체의 반대로 등급판정이 중단되었다. 이후 소비자들의 축산물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교 급식에 1등급 이상의 닭고기 사용을 권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2007. 1. 20) 등으로 2007년 3월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 양계산물 등급판정 개정의 주요내용

- 2000. 7. 10 : 계란등급화 방안 정부방침 확정(축통51554-1004)
- 2000. 10. 1 : 양계관련협의회 개최(양계산업발전대책, 계란등급제)
- 2001. 3. 14 : 계란등급제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1. 6. 16 : 등급판정대상도체에 닭 도체 추가(축산법시행규칙 개정)
- 2001. 12. 12 : 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대구경북양계축협)
- 2002. 12. 26 : 자율제로 추진하는 등급판정 품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축산법 개정)
- 2003. 1. 6 : 계란등급판정수수료 징수
- 2003. 4. 1 :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체리부로)
- 2004. 2. 14 : 축산법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1460호)
 - 등급판정 대상품목을 소·돼지·닭도체에서 계란까지 확대(제32조)
 - 닭고기 및 계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근거 조항 마련(제40조)
- 2005. 12. 19 :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중단 결정(농림부)
- 2006. 12. 18 : 닭고기 등급판정제도 재개 추진방안 통보(농림부)
- 2006. 12. 22 :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안) 확정
- 2007. 3. 26 : 닭고기 등급판정 재개(하림, 마니커, 농협목우촌, 신명, 우림)

4)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는 1996년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수수료 징수에 의한 자립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초 계획되어(농림부 '축산물등급판정 자립화 계획' 1996. 12. 30) 2001년 1월 1일 부터 수수료 징수를 개시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1999. 9. 7. 농림부령 제1345호)하였으나,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구제역 발생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시기를 2년간 유예하게 되었고 2003년 1월 6일부터 소, 돼지, 계란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를 시작하였고 2006년 쇠고기 부분육 등급확인, 2007년 닭고기 등급판정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 주요 정책 변화내용

- 축산물등급판정 자립화 계획 수립(농림부 1996. 12. 30)
-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에 관한 법령개정((농림부령 제1345호, 1999. 9. 7)
 - 2001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에 대한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 수수료징수 시행 유예(농림부 방침, 2000. 12. 29)
 - 징수시기의 2년 유예
-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고시(농림부 고시 제2002-65호, 2003. 1. 6)
 - 소 1두 1,600원, 돼지 1두 300원 (2003. 1. 6부터 시행)
-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공고(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 제2003-3호, 2003. 1. 4)
 - 개당 0.5원(1일 100,000개 미만 등급판정은 1일 50,000원 부과)
-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개정 고시(농림부 고시 제2004-12호, 2004. 3. 30)
 - 50천원, 1일 100천개 이상 판정시 초과물량에 대하여 개당 0.5원 가산
-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비용 조정(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 제2004-2호, 2004. 3. 10)
 -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비용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
-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및 소 부분육 등급확인 수수료 징수(농림부 고시 제 2005-82호, 2005. 12. 20)
 - 2006년 1월 1일부터 소 1두 2,000원, 돼지 1두 400원, 소 부분육 1박스 300원, 계란 1개당 1원
-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농림부 고시 제2007-6호, 2007. 2. 14)
 - 2007년 3월 1일부터 70천원, 1일 7천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마리당 8원 가산, 10천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마리당 6원 가산)

다. 조직의 구축

- 1989년 4월 18일 정부로부터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방침을 시달 받은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그해 8월 9일 육류등급사업부를 내부조직으로 설치하였고 이후 축산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1년 1월 26일 축산법 개정 (법률제6381호)에 따라 2001년 7월 27일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4년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되었다가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소속의 변경, 등급판정 품목의 확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 등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1989년 이후 15여 차례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 **1989. 4 ~ 1994. 11.** : 한국중축개량협회 소속

- 한국중축개량협회의 육류등급사업부로 검사과, 규격개발과의 2과 체계로 추진실 무팀 8명으로 업무를 착수하였다.
- 92년 서울특별시 소재 3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하여 등급판정 사업이 착수되고, 94년 개정 축산법 시행에 따라 조직을 확충하여 2부 5과 15 출장소로 총 193명의 조직과 인력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 **1994. 12 ~ 2000. 6** :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속

- 1994년 12월 중축개량협회에서 축협중앙회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1995. 6월 등급화거래지역이 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본소의 업무부 소관 3과를 2과로 축소하고 8개 출장소를 증설하여 총 23개 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 전산화 확대에 따라 1996. 12월 홍보전산실을 신설하고 3개 출장소를 폐쇄하여 2부1실4과20출장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 2000. 1월 소도체 등급화거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정원을 213명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시·군 도축장단위로 운영되던 출장소를 광역화하여 광역시와 도 단위의 10개소로 통합하였다.

○ **2000. 7 ~ 2001. 7**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속

-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농협중앙회와 통합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소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본소차원의 출장소 종합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등급부 소속에서 소장직속으로 전환하여 2부1실4팀 10개 출장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 **2001. 7 ~ 2004. 3** : 독립법인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독립법인이 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2001. 7. 27일 직제규정을 재정하게 되었고 업무의 확대에 따른 등급판정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도에 출장소를 지휘감독하는 10개 지소를 설치하였다.
- 2002. 4. 25일 계란, 닭고기, 부분육의 신규업무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등급부를 등급기술부로 변경하고 1개팀을 신설하였으며(판정팀, 지도팀 → 운영팀, 규격팀, 평가팀) 정원을 232명으로 조정하였다.

- 2003년부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제도에 대비하고 직급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 부여를 위해 10개 지소를 4개 권역별 지역본부로 재편하여 현장조직을 4본부 10지소로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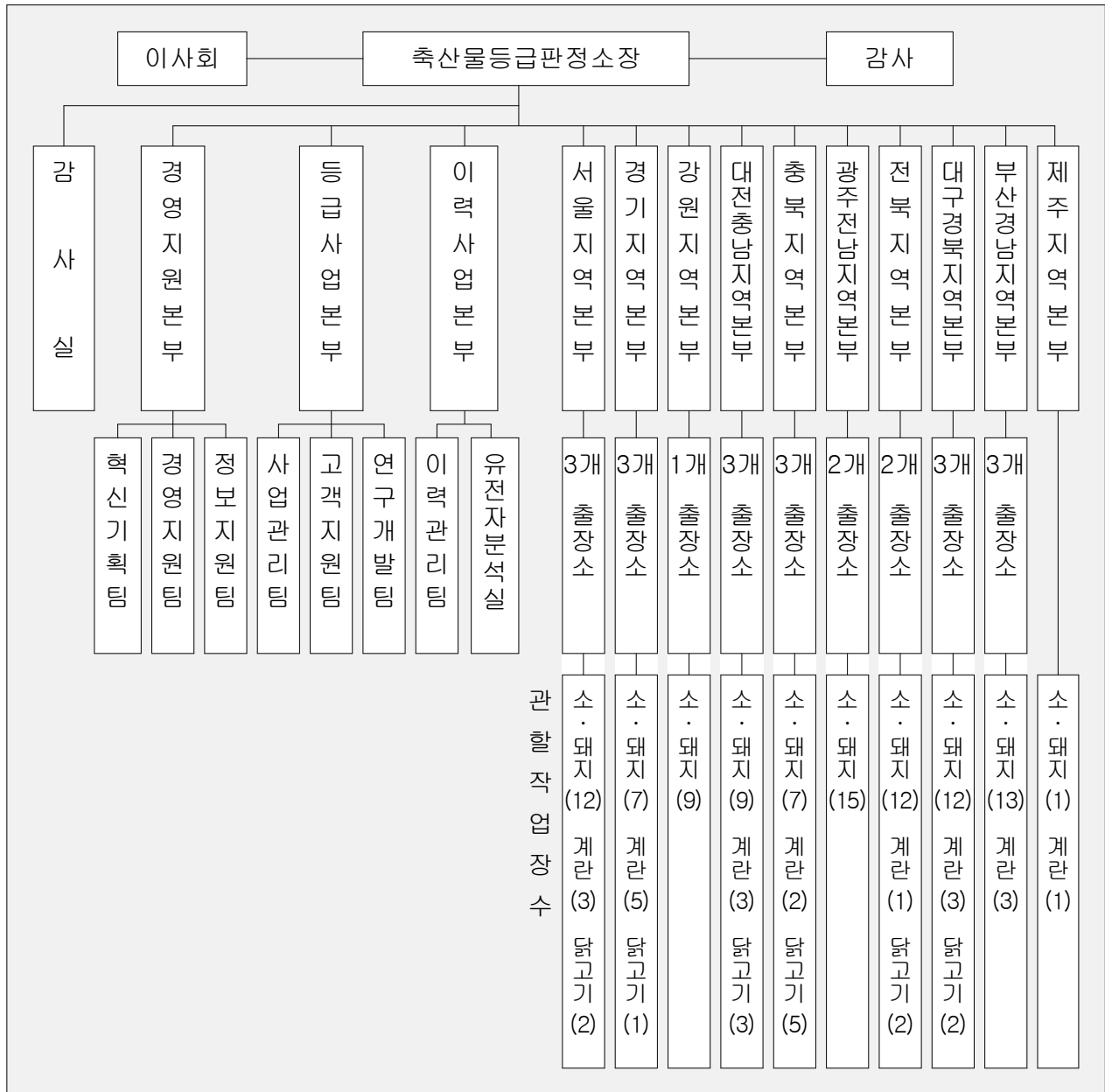
○ **2004. 4 ~ 2007. 3 : 정부산하기관 지정**

- 2004. 4. 1일 정부산하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동법상의 산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직운영을 고객만족 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업무를 강화를 위해 홍보전산실을 홍보전산부로 개편하고 소비홍보팀과 전산팀을 설치하여 본부조직을 3본부 7팀으로 개편(2004. 6. 10)하였으며
-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추진,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실적평가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본부내 소장 직속의 경영혁신팀을 신설하여 본부조직을 1팀 3본부 7팀으로 개편하였다.(2005. 7. 15)
- 2006. 3. 20일에는 급변하는 외부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조직을 통합 조정하여 2본부 6팀으로 슬림화 하고 보직자(1~3급) 직급의 통합 운영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높였다.
- 검사·검증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 강화 및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경영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감사실을 신설하고(1실 2본부 6팀) 사업관리팀을 고객지원팀으로 개정하여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고객중심경영에 두었다.(2006. 10. 12)

○ **2007. 4 ~ 현재 : 준정부기관 지정**

- 2007. 4. 1일 우리기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자 현장조직 중 지소를 지역본부로 변경하여 4지역본부 10지소를 10지역본부로 개정(2007. 7. 16)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전국적인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직제에 반영하여 이력사업본부와 이력관리팀, 유전자분석실을 신설하여 본부조직을 1실3본부7팀으로 개편하고(2008. 5. 1)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9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241명에서 260명으로 개정하였다.

< 그림 II-1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조직도 및 관할 작업장 수('08.12월 현재)



< 표 II-1 >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 및 지역본부 정원('08.12월 현재)

| 구분 | 상임임원 (소장) | 일반직 | | | | | 기능직 | 합계 |
|------|--------------|------|----|----|------|-----|-----|-----|
| | | 1·2급 | 3급 | 4급 | 5·6급 | 소계 | | |
| 계 | 1 | 7 | 15 | 43 | 181 | 246 | 13 | 260 |
| 본부 | 1 | 3 | 8 | 12 | 18 | 41 | 5 | 47 |
| 지역본부 | | 4 | 7 | 31 | 163 | 205 | 8 | 213 |

2.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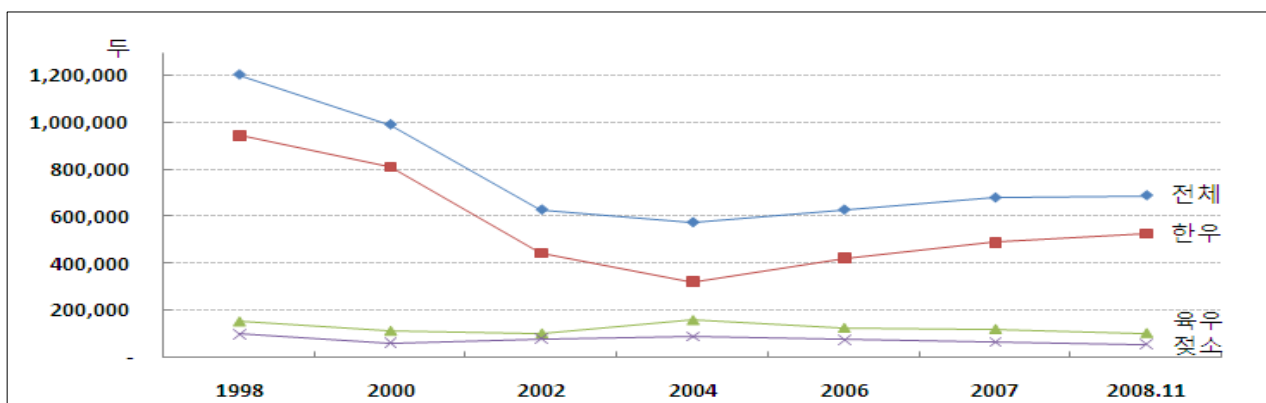
가. 소 등급판정 사업실적

- 소도체 등급판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산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등급판정거래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도매시장 및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소도체 등급판정은 소를 도축하여 1일 냉장후 도체상태에서 판정하게 됨에 따라 도축두수와 일치하지는 않음에 유의하며, 의무적인 등급판정 시행에 따라 소도체를 100% 판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축두수 실적은 생략한다.
- 소 등급판정두수는 1998년 1,205천두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UR협상에 따른 수입자유화('01년) 결정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4년 577천두까지 감소하였으나, 2004년 캐나다 및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후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8년 11월까지의 실적이 전년보다 9,500여두 증가하여 750천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육우와 젓소의 판정두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한우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5%을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표 II-2 > 소 연도별 품종별 등급판정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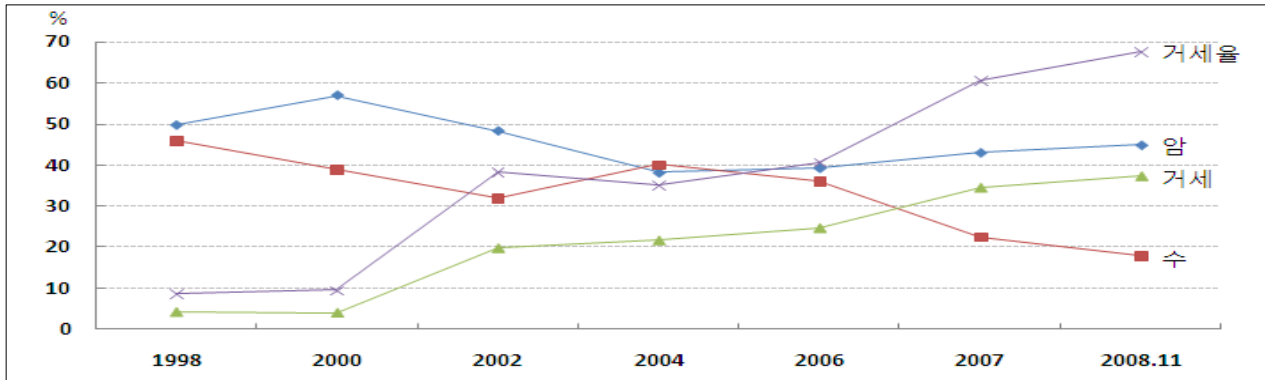
| 구분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2007 | 2008.11 |
|----|------------------------|---------|---------|---------|---------|---------|---------|
| 전체 | 1,204,808 ^두 | 992,792 | 630,442 | 576,814 | 630,380 | 681,695 | 691,280 |
| 한우 | 947,510 | 814,022 | 446,212 | 324,319 | 425,515 | 492,115 | 528,976 |
| 육우 | 155,564 | 114,063 | 102,262 | 161,587 | 127,033 | 121,980 | 104,451 |
| 젓소 | 101,734 | 64,707 | 81,968 | 90,908 | 77,832 | 67,600 | 57,853 |

< 그림 II-2 > 소 연도별 품종별 등급판정 두수



- 등급판정제도가 정착되면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수소의 거세율은 등급판정이 전국으로 확대된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은 약 67%에 달하고 있다.

< 그림 II-3 > 한우 연도별 거세율(성별 출현율과 비교 포함)



- 등급판정 결과의 농가 피드백, 컨설팅 사업, 브랜드 인증사업 확대,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과 함께 등급판정 결과가 소비자의 선택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생산단계에서의 고품질육 생산의욕 증가로 이어진 결과 1998년 한우 1등급 이상의 고품질육 생산은 15.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50%를 넘어섰고, 2008년은 53%를 상회하고 있다. 거세우는 '98년에 50.5% 였으나 '08.11월에는 75%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암소로 56.3%를 나타내고 있다. 거세하지 않은 수소가 2.7%로 매우 낮다.

< 표 II-3 > 한우 연도별 성별 1등급 이상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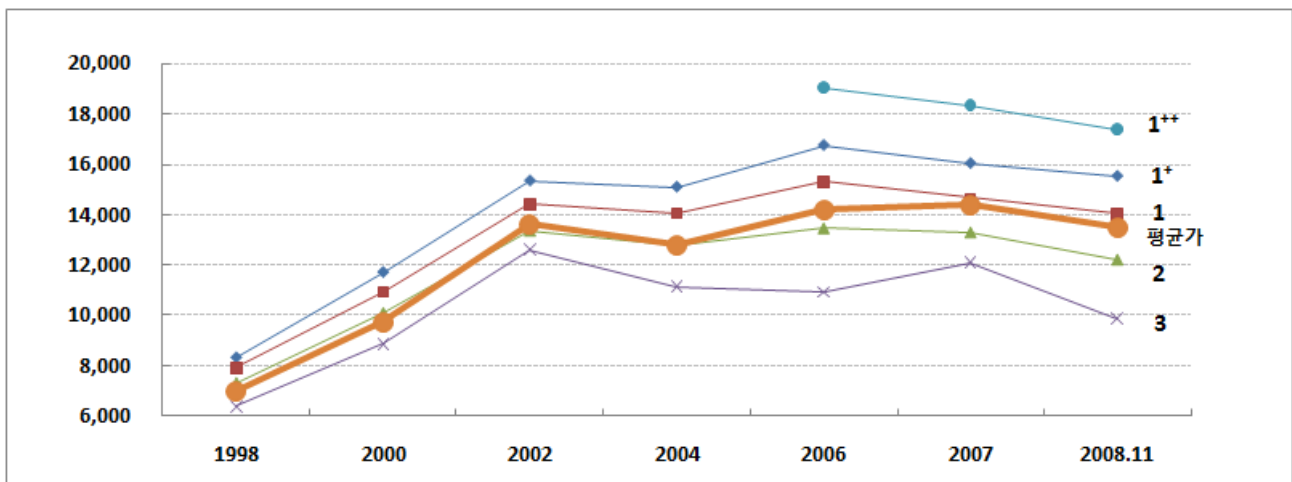
| 구분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2007 | 2008.11 |
|----|-------|------|------|------|------|------|---------|
| 계 | 15.4% | 24.8 | 35.2 | 35.9 | 44.5 | 50.9 | 53.7 |
| 암 | 24.7 | 38.7 | 51.4 | 56.2 | 65.2 | 59.7 | 56.3 |
| 수 | 2.0 | 1.6 | 2.4 | 3.5 | 3.5 | 2.5 | 2.7 |
| 거세 | 50.5 | 52.3 | 48.5 | 60.1 | 71.3 | 71.5 | 75.1 |

○ 한우가격은 2003년 말 미국에서 BSE 발병이후 쇠고기 소비감소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4년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하였으나 한미 FTA 협상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였다.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등급별 평균가격을 산정한 등급별 가격비를 보면 평균가격의 하락에도 등급별 가격비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품질에 의한 가격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표 II-4 > 소 연도별 등급별 가격

| 구분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2007 | 2008.11 |
|--------------------|-----------------------|-------------------|-------------------|-------------------|-------------------|-------------------|-------------------|
| 1 ⁺⁺ 등급 | - | - | - | - | 19,037 (134.3) | 18,336 (127.5) | 17,352 (128.6) |
| 1 ⁺ 등급 | 8,351원/kg (119.4%) | 11,728 (120.1) | 15,351 (112.9) | 15,105 (117.9) | 16,756 (118.2) | 16,043 (111.5) | 15,534 (115.1) |
| 1등급 | 7,915 (113.2) | 10,942 (112.1) | 14,415 (106.0) | 14,070 (109.9) | 15,320 (108.1) | 14,650 (101.9) | 14,016 (103.9) |
| 2등급 | 7,314 (104.6) | 10,090 (103.4) | 13,354 (98.2) | 12,742 (99.5) | 13,455 (94.9) | 13,290 (92.4) | 12,208 (90.5) |
| 3등급 | 6,381 (91.2) | 8,863 (90.8) | 12,606 (92.7) | 11,120 (86.8) | 10,914 (77.0) | 12,084 (84.0) | 9,878 (73.2) |
| 평균가 | 6,995 (100) | 9,762 (100) | 13,593 (100) | 12,808 (100) | 14,173 (100) | 14,383 (100) | 13,495 (100) |

< 그림 II-4 > 소 연도별 등급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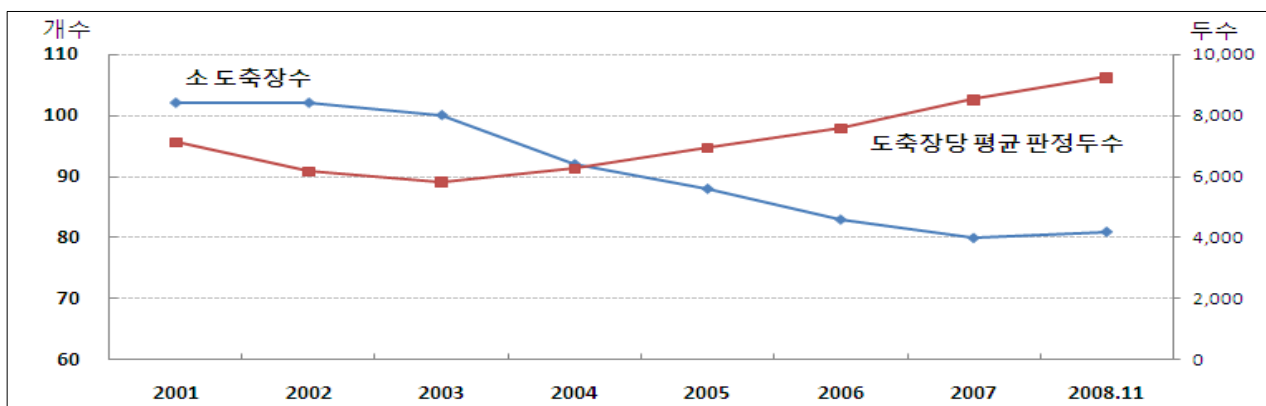


- 소 등급판정을 시행한 도축장은 도축두수 감소와 시설현대화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로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감소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도축장당 평균 판정두수는 증가하여 등급판정의 인력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 II-5 > 도축장당 소 등급판정 두수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08년 추정 |
|-----------------|--------|-------|-------|-------|-------|-------|-------|--------|
| 도축장수(a) | 102개소 | 102 | 100 | 92 | 88 | 83 | 80 | 81 |
| 판정두수(b) | 727천두 | 630 | 583 | 577 | 612 | 630 | 682 | 750 |
| 도축장당판정 (b/a) | 7,132두 | 6,181 | 5,829 | 6,270 | 6,950 | 7,595 | 8,521 | 9,259 |

< 그림 II-5 > 도축장당 소 등급판정 두수



나. 돼지 등급판정 사업실적

-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산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등급판정거래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도매시장 및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 돼지 등급판정 두수는 돼지의 도축이 2003년 이후 배합사료 가격상승, 분뇨 처리 문제, 소모성 질환 등의 축산환경 악화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소 BSE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05년부터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11월 현재 12,491천두를 등급판정하여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거세율은 1998년 59.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98%에 달하고 있다.

< 표 II-6 > 돼지 연도별 성별 등급판정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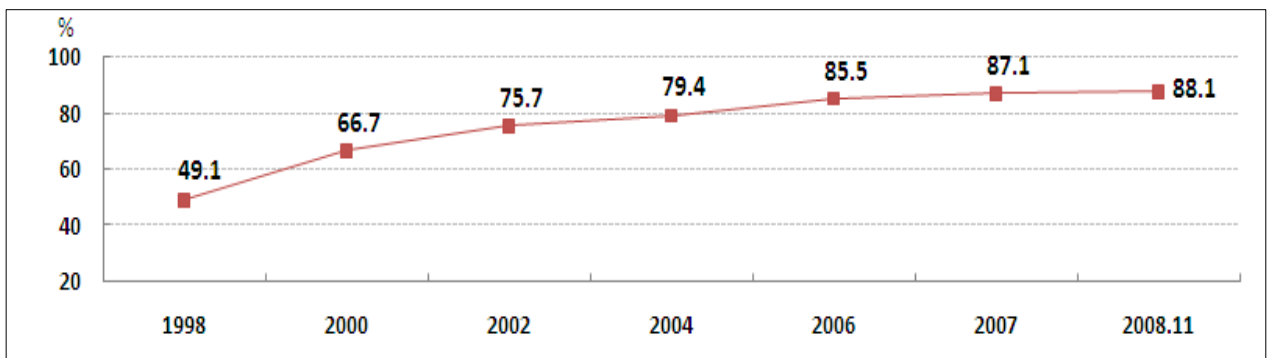
| 구분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2007 | 2008.11 |
|-----|---------|--------|--------|--------|--------|--------|---------|
| 전체 | 9,785천두 | 11,187 | 14,982 | 14,575 | 13,073 | 13,612 | 12,491 |
| 암 | 4,624 | 5,340 | 7,343 | 7,281 | 6,596 | 6,947 | 6,419 |
| 수 | 2,075 | 659 | 396 | 254 | 188 | 178 | 146 |
| 거세 | 3,086 | 5,188 | 7,243 | 7,040 | 6,289 | 3,487 | 5,926 |
| 거세율 | 59.8% | 88.7 | 94.8 | 96.5 | 97.1 | 95.1 | 97.6 |

< 그림 II-6 > 돼지 연도별 성별 등급판정 두수



- 전국에서 판정된 돼지도체의 도축형태별로 보면 탕박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98년 49.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 11월에는 88.1%를 탕박도체 등급판정기준에 의해 등급판정을 실시하였다.

< 그림 II-7 > 돼지 연도별 탕박 등급판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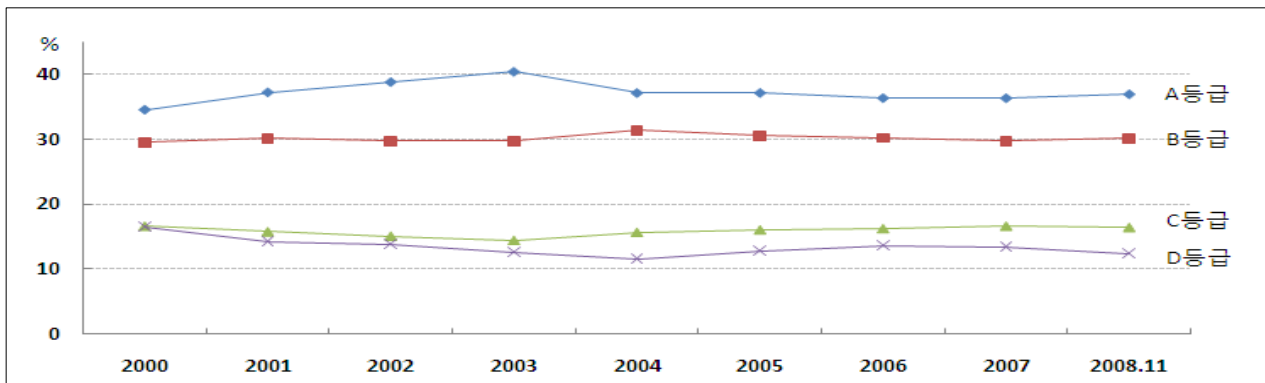


○ 돼지 규격등급에서 A등급 출현율은 2003년 40.4%를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정체되고 있다.

< 표 II-7 > 돼지 연도별 등급별 판정비율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11 |
|----|-------|------|------|------|------|------|------|------|---------|
| A | 34.5% | 37.2 | 38.8 | 40.4 | 37.1 | 37.1 | 36.3 | 36.3 | 36.9 |
| B | 29.5 | 30.1 | 29.7 | 29.7 | 31.3 | 30.5 | 30.2 | 29.7 | 30.1 |
| C | 16.7 | 15.8 | 15.1 | 14.4 | 15.7 | 16.1 | 16.3 | 16.7 | 16.5 |
| D | 16.5 | 14.2 | 13.8 | 12.7 | 11.6 | 12.8 | 13.6 | 13.5 | 12.4 |
| E | 2.8 | 2.7 | 2.6 | 2.8 | 3.3 | 3.5 | 3.6 | 3.8 | 4.1 |

< 그림 II-8 > 돼지 연도별 등급별 판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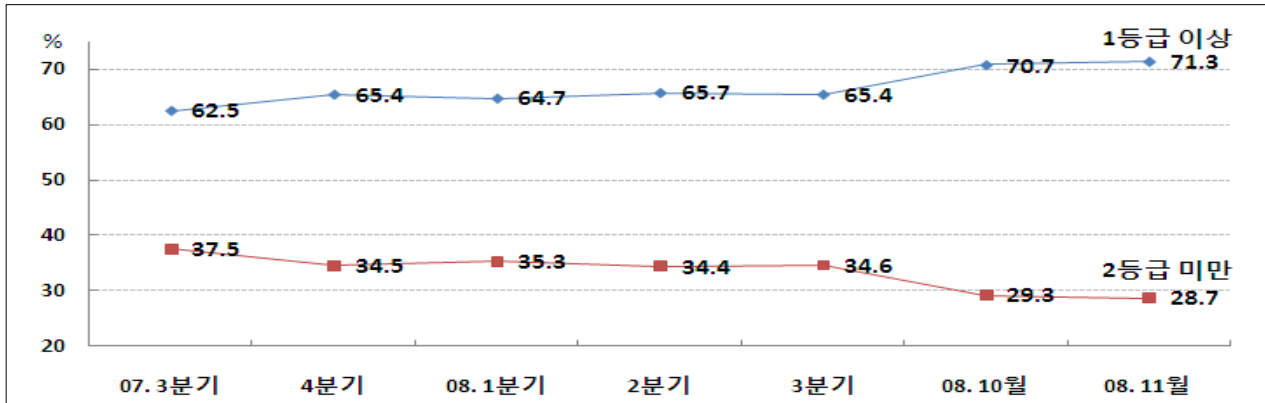
○ 돼지도체 등급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돈육생산 촉진 및 소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구분판매가 가능하도록 07년 7월 돼지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시작한 돼지 육질등급판정결과 1⁺등급은 07년 1.0%에서 08년 11월 1.9%, 1등급 이상은 07년 64.2%에서 08년 11월 7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 II-8 > 돼지 육질등급 출현율

| 구분 | 07. 3분기 | 4분기 | 08. 1분기 | 2분기 | 3분기 | 08. 10월 | 08. 11월 |
|----------------|---------|------|---------|------|------|---------|---------|
| 1 ⁺ | 0.8% | 1.1 | 1.2 | 1.3 | 1.2 | 1.6 | 1.9 |
| 1 | 61.7 | 64.3 | 63.5 | 64.4 | 64.2 | 69.1 | 69.4 |
| 2 | 30.9 | 28.5 | 29.1 | 28.5 | 28.5 | 23.9 | 23.4 |
| 3 | 2.7 | 2.0 | 1.9 | 1.9 | 1.9 | 1.6 | 1.6 |
| E | 3.9 | 4.0 | 4.3 | 4.0 | 4.2 | 3.8 | 3.7 |

*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제도는 '07.7.1일부터 시행

< 그림 II-9 > 돼지 육질등급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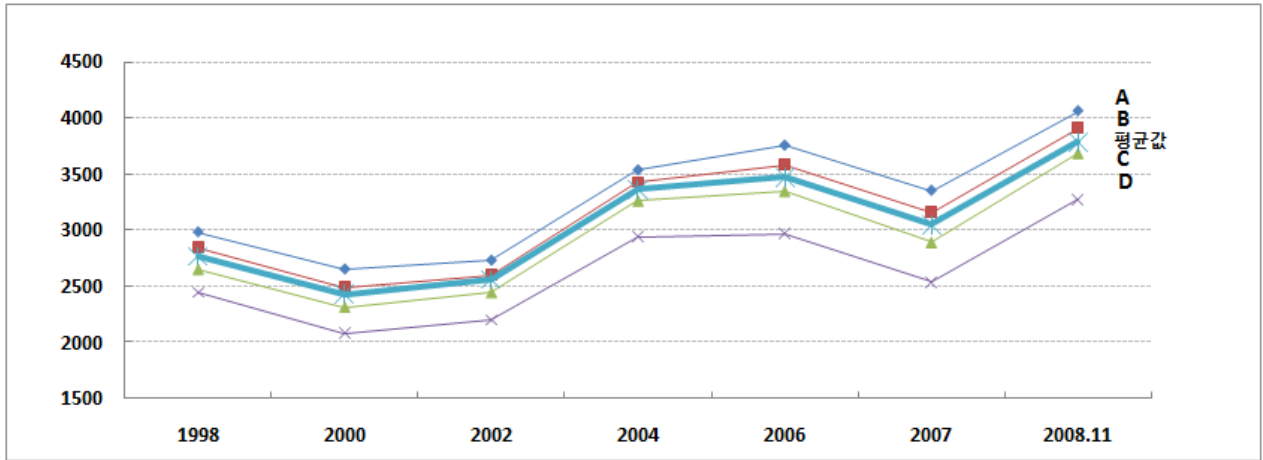
○ 돼지가격은 1997년 수입 자유화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만 2007년 한미 FTA 협상 이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8년에 큰 폭의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다.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등급별 평균가격을 산정한 등급별 가격비를 보면 평균가격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에도 등급별 가격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등급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 표 II-9 > 돼지 연도별 등급별 도매가격(규격)

| 구분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2007 | 2008.1~11 |
|-----|------------------------|------------------|------------------|------------------|------------------|------------------|------------------|
| A등급 | 2,981 원/kg (107.8%) | 2,650 (109.1) | 2,728 (106.6) | 3,533 (105.1) | 3,753 (108.0) | 3,351 (109.9) | 4,060 (107.2) |
| B등급 | 2,849 (103.0) | 2,492 (102.6) | 2,604 (101.8) | 3,427 (102.0) | 3,582 (103.1) | 3,159 (103.6) | 3,910 (103.2) |
| C등급 | 2,651 (95.9) | 2,313 (95.3) | 2,443 (95.5) | 3,262 (97.1) | 3,348 (96.3) | 2,891 (94.8) | 3,686 (97.3) |
| D등급 | 2,444 (88.4) | 2,079 (85.6) | 2,200 (86.0) | 2,944 (87.6) | 2,971 (85.5) | 2,536 (83.1) | 3,279 (86.6) |
| 평균가 | 2,765 (100) | 2,428 (100) | 2,559 (100) | 3,360 (100) | 3,475 (100) | 3,050 (100) | 3,788 (100) |

* ()는 평균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등급별 가격지수

< 그림 II-10 > 돼지 연도별 등급별 도매가격(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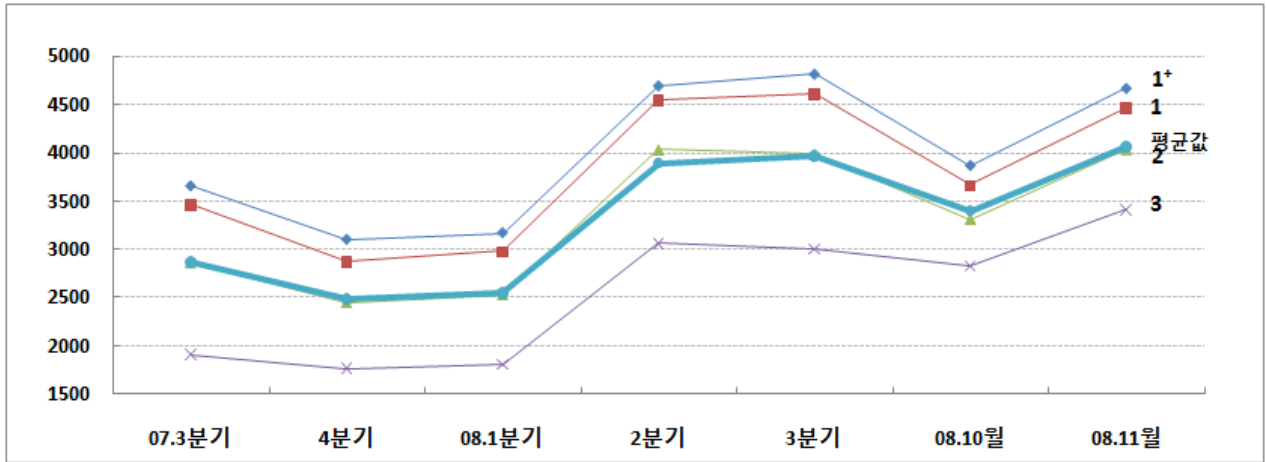
○ 돼지가격을 2007년 7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돼지 육질등급판정제도에 따라 비교해보면, 2007년 한미 FTA 협상으로 가격이 감소하다가 2008년 1분기를 넘어서면서 상승해 오다가 3분기에 고점을 찍고 소폭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등급별 평균가격을 산정한 등급별 가격비를 보면 평균가격이 소폭 상승세에도 등급별 가격비 차이가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품질에 의한 가격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표 II-10 > 돼지 등급별 가격(육질)

| 구분 | 07.3분기 | 4분기 | 08.1분기 | 2분기 | 3분기 | 08.10월 | 08.11월 |
|-------------------|-----------------------|------------------|------------------|------------------|------------------|------------------|------------------|
| 1 ⁺ 등급 | 3,659원/kg (127.2%) | 3,106 (124.8) | 3,175 (124.) | 4,693 (120.5) | 4,814 (121.5) | 3,870 (113.8) | 4,667 (114.9) |
| 1등급 | 3,466 (120.5) | 2,871 (115.3) | 2,975 (116.2) | 4,539 (116.5) | 4,607 (116.3) | 3,662 (107.7) | 4,462 (109.8) |
| 2등급 | 2,860 (99.4) | 2,445 (98.2) | 2,526 (98.7) | 4,035 (103.6) | 3,988 (100.6) | 3,313 (97.4) | 4,040 (99.4) |
| 3등급 | 1,910 (66.4) | 1,768 (71.0) | 1,809 (70.7) | 3,056 (78.4) | 3,001 (75.7) | 2,828 (83.2) | 3,411 (84.0) |
| 평균가 | 2,876 (100) | 2,489 (100) | 2,560 (100) | 3,896 (100) | 3,963 (100) | 3,401 (100) | 4,063 (100) |

*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제도는 '07.7.1일부터 시행

< 그림 II-11 > 돼지 등급별 가격(육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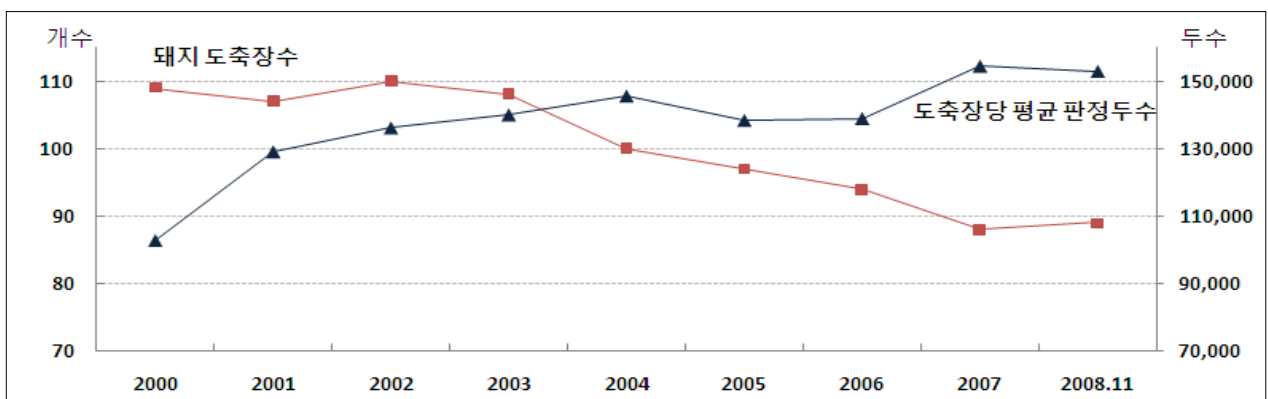


○ 돼지 등급판정을 시행한 도축장은 01년 109개소에서 08년 89개소로 20개소가 감소 하였으며 도축장 당 평균 판정두수는 01년 129천두에서 08년 153천두로 증가하고 있다. 소의 경우와 같이 도축장구조조정에 따라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 도축장당 등급판정 두수는 증가할 것이다.

< 표 II-11 > 도축장당 연도별 돼지 등급판정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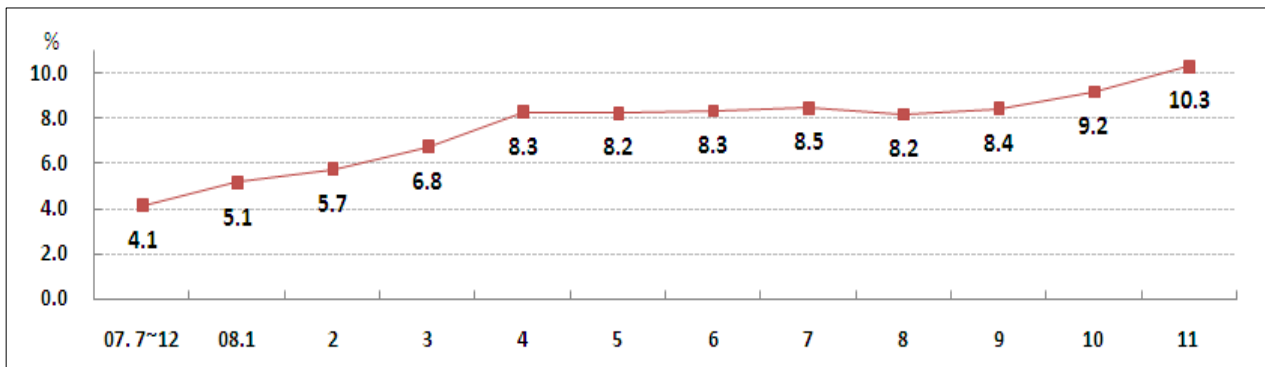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08년 추정 |
|--------|----------|--------|--------|--------|--------|--------|--------|--------|
| 도축장수 | 109개소 | 110 | 108 | 100 | 97 | 94 | 88 | 89 |
| 판정두수 | 13,818천두 | 14,983 | 15,133 | 14,575 | 13,433 | 13,073 | 13,612 | 13,626 |
| 도축장당판정 | 129천두 | 136 | 140 | 146 | 138 | 139 | 155 | 153 |

< 그림 II-12 > 도축장당 연도별 돼지 등급판정 두수



- 돼지 등급판정결과의 정확성을 보다 높임과 아울러 냉장유통체계 구축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하여 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은 07년 284천두(월평균 47천두)도 돼지 총 판정두수의 4.1%를 판정하였고, 이후 꾸준히 냉도체 판정물량을 확대하여 08년은 11월 현재 988천두(월평균 90천두)로 돼지 총 판정두수의 7.9%를 판정하였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돼지 등급판정은 온도체 또는 냉도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냉도체 판정물량의 증가 속도가 느리다. 도축장의 저항으로 온도체를 제외하는데 문제가 있다.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드시 냉도체 등급판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림 II-13 > 돼지 냉도체 판정비율



*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제도는 '07.7.1일부터 시행

다. 계란 등급판정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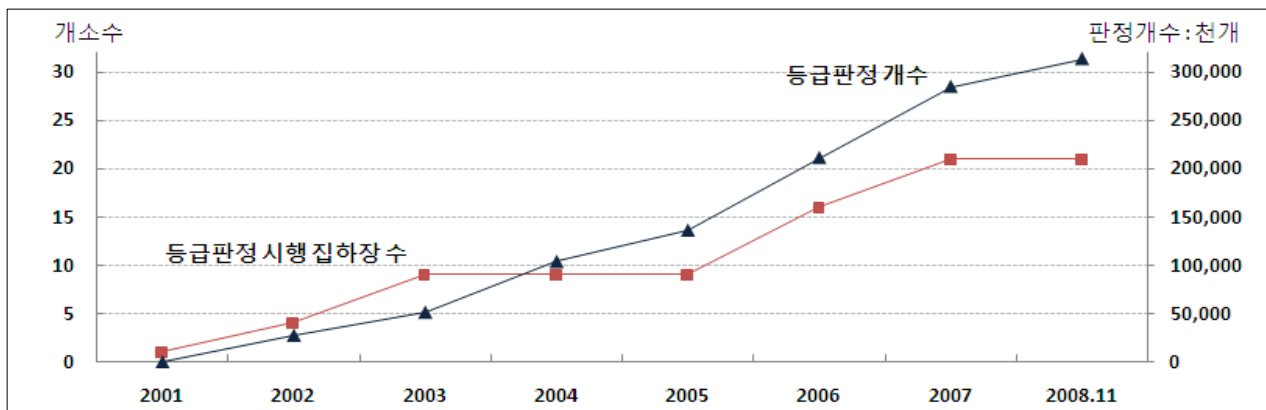
- 계란은 유통경로 및 품질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소·돼지와는 달리 업체의 자율 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2001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수수료 징수를 개시한 2003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계란 등급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법령(축산법 2002.12월 개정, 시행령 2003.12월 개정, 시행규칙 2004.2월 개정) 및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2004.3월 개정)고시 내용에 계란등급판정 부문을 추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계란 등급판정 시행 집하장은 2001년 12월 대구경북양계축협에서 최초 등급판정을 실시한 이후 2003년에는 8개 집하장을 대상으로 수수료 징수를 개시하였으며 08년에는 21개소(경기 9개소, 충남 3, 충북 2, 전북 1, 경북 3, 부산 1, 경남1, 제주 1)로 확대되었다

- 등급판정 물량은 06년 등급계란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홍보활동 확대에 학교 급식 등 소비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04년 103백만개, 06년 211백만개, 08년 11월 현재 314백만개를 판정하였다.

< 표 II-12 > 계란 연도별 등급판정 개수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1~11 |
|-----------|-------|--------|--------|---------|---------|---------|---------|-----------|
| 집하장수 | 1개소 | 4 | 9 | 9 | 9 | 16 | 21 | 21 |
| 판정개수 | 154천개 | 27,687 | 51,278 | 103,878 | 136,072 | 211,207 | 284,865 | 313,547 |
| 증가율 | - | - | 85% | 103 | 31 | 55 | 35 | 10 |
| 집하장당 판정개수 | 154천개 | 6,922 | 5,698 | 11,542 | 15,119 | 13,200 | 13,565 | 14,931 |

< 그림 II-14 > 계란 연도별 등급판정 개수



라.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실적

- 정부에서는 국내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내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양계산물 등급판정 제도의 도입과 닭고기 포장육 유통 의무화 등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물등급판정 대상에 닭고기를 추가함으로써 닭고기 등급판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2003년 4월 (주)체리부로를 시작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4년에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닭고기 등급판정은 희망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KS규격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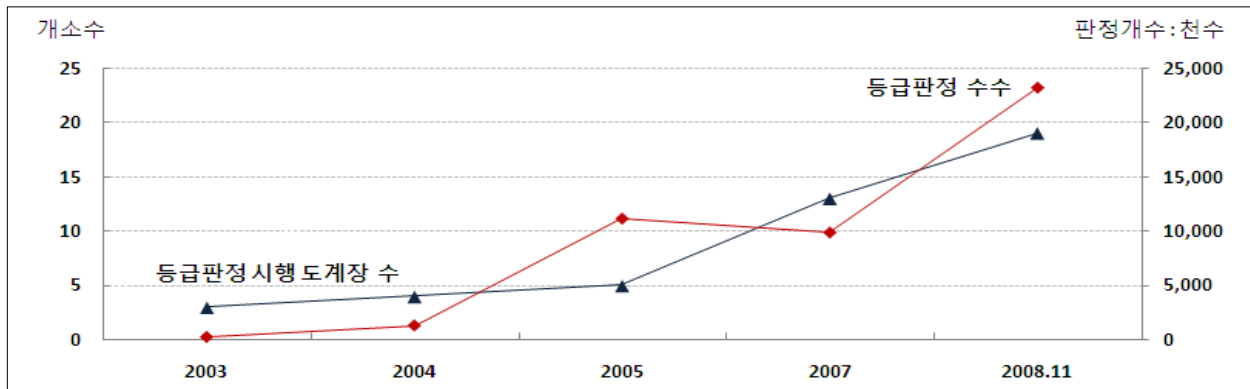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96호)하여 등급표시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닭고기의 품질등급은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닭고기 등급판정은 2005. 12. 19일 등급판정 수수료 부과(06년부터 수당 20원)에 대한 육계 계열화 업체들의 반발로 등급판정이 중단되었다가 학교급식 수요처를 비롯한 소비자들로부터 사업재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07년 3월 업체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재개되었다.
- 닭고기 등급판정 시행 도계장은 03년 3개소에서 05년 5개소로 확대되었다가 06년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07년 사업이 재개되면서 13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08년 11월 현재 19개소(경기 3개소, 대전 3, 충북 5, 전북 6, 대구 1, 경북 1)에서 등급판정을 실시하였다.
- 등급판정물량은 03년 228천수에서 05년에 1천만수를 넘었으며 이후 1년간의 공백에도 등급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및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등 홍보와 급식법 개정으로 08년 11월 현재 중단되기 전인 05년 대비 108%, 07년 대비 135%가 증가한 23백만수를 등급판정 하였다.

< 표 II-13 > 닭고기 연도별 등급판정 물량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11 |
|--------|----------|-----------|------------|------|-----------|------------|
| 시행 작업장 | 3개소 | 4 | 5 | - | 13 | 19 |
| 판정수수 | 228,317수 | 1,297,272 | 11,136,864 | - | 9,854,271 | 23,187,247 |

< 그림 II-15 > 닭고기 연도별 등급판정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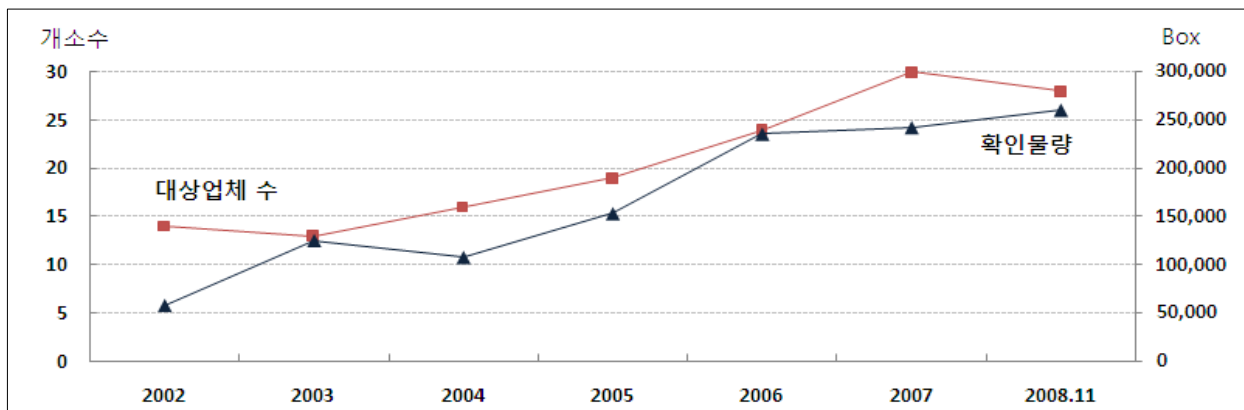
마.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확인 사업실적

-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사업은 유통효율 증진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하여 부분육에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우리축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2002년 14개 축산물부분육 대상업체에서 58천박스를 등급표시 확인을 실시한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8년 11월 현재 28개 대상업체에서 260천두에 대하여 등급표시 확인을 실시하였다.
- 쇠고기 부분육 등급확인 대상 중 한우는 03년과 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쇠고기부분육 상장 도매시장은 02년 협신식품과 농협서울 2곳에서 실시하여 08년 11월 현재 삼성식품, 농협부천, 부경축공 등 3개 도매시장을 추가하여 5개 도매시장으로 확대되었다.

< 표 II-14 > 쇠고기 연도별 부분육 등급확인 실적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11 |
|------|----------|---------|---------|---------|---------|---------|---------|
| 대상업체 | 14개소 | 13 | 16 | 19 | 24 | 30 | 28 |
| 도매시장 | 2개소 | 4 | 4 | 4 | 5 | 5 | 5 |
| 확인물량 | 57,869박스 | 125,087 | 107,560 | 152,984 | 235,309 | 242,100 | 260,168 |
| 한우 | 47,824박스 | 90,562 | 81,048 | 123,034 | 190,334 | 193,885 | 225,196 |
| 육우 | 10,045박스 | 34,525 | 26,512 | 29,950 | 54,071 | 48,215 | 34,972 |

< 그림 II-16 > 쇠고기 연도별 부분육 등급확인 실적



바. 쇠고기 이력사업 실적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2004.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2004년 9개 브랜드경영체가 참여하여 08년에는 20개 브랜드로 확대되었으며, 06년부터 시·군이 참여(3개 시·군)하여 07년 경기도 및 25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2008. 12. 22일부터 생산단계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가공장 및 판매장은 04년 각 10개소에서 08년 11월 현재 70개 가공장 및 362개 판매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산등록두수는 40천두에서 2,260천두로 확대되었다.
- 2005년부터 실시한 DNA 동일성 검사는 1,994건에서 08년 11월 현재 6,770건으로 240% 확대되었으며, 보관용 시료채취는 9,213건에서 49,427건으로 확대되어 09년 6월부터는 도축되는 전체 두수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 또한 07. 12. 21일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조기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08. 12. 22일부터 사육단계에서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하여 귀표부착 및 소거래내역의 관리가 실시되며 유통단계는 ‘09. 6. 2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외국 BSE 등 질병발생에도 동 제도에 따른 국내 소비안정과 촉진효과를 살펴보면, 1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한우의 가치상승 효과가 3,826억원으로 추정된다.
 - * 소비량의 37% 감소(추정)시 경제적 손실액 : 158천톤(‘06년 생산량)x37%x27,326원/kg(한우 3등급 불고기 소매가격)
 - * 자료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비자 태도와 시장가치 연구(‘06 건국대 김종우)
-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동판매 차량 운영주체 확대
 - (현행) 운영주체(축산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승인(농식품부장관)
 - (개정) 운영주체(축산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 조합), 승인(시·도지사)

- 축산물의 거래내역 서류 작성 관련

(현행)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 기록한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개정)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생산단위별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작성, 보관 의무부여

- 축산물의 원산지 등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현행) 식육판매업영업자 : 식육의 종류·원산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음식점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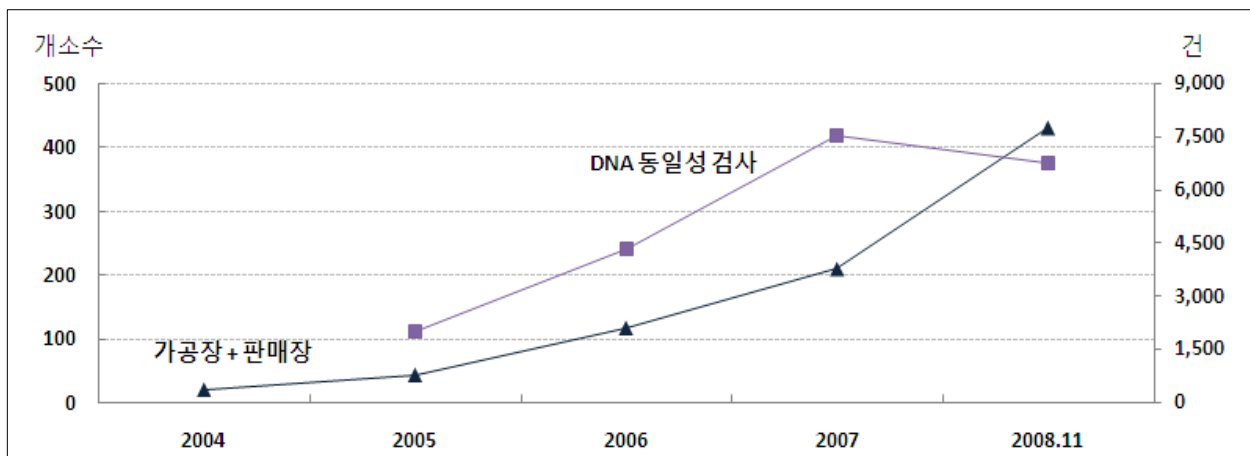
(개정) ·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 식육의 종류, 원산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의무 발급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의무 발급

< 표 II-15 > 쇠고기 연도별 이력추적 실적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11 |
|------------|------|--------|--------|--------|---------|
| 전산등록두수 | 46천두 | 92 | 251 | 732 | 2,260 |
| 참여 가공장 | 10개소 | 13 | 24 | 32 | 70 |
| 참여 판매장 | 10개소 | 30 | 93 | 178 | 362 |
| 참여 도축장 | 10개소 | 13 | 21 | 38 | 전체 |
| DNA 동일성 검사 | - | 1,994건 | 4,316 | 7,530 | 6,770 |
| 보관용 시료채취 | - | 9,213건 | 13,766 | 23,494 | 49,427 |

< 그림 II-17 > 쇠고기 연도별 이력추적 실적



3.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시행성과

가. 제도 시행목적

1) 80년대 중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이전의 계획 단계

80년대 중반 나타난 육류생산과잉 기조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 육류의 가격 경쟁 열세 등 전반적 경향을 반영하여 육류의 물량거래를 품질거래로 전환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품질고급화 유도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89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을 통해 소·돼지도체등급시행 계획을 반영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을 통해 도체등급제를 시행하게 되며 소·돼지도체등급시행 추진계획에 나타난 도체등급제 시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육류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우수품질의 육류생산 유도
- ②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도모
- ③ 소·돼지의 가시적 개량목표 제시로 개량촉진

2) 90년대 중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확대 단계

90년대 중반 나타난 국민 소비성향의 품질위주로의 경향 변화, 강제 급수육 유통 및 수입쇠고기 국산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에 따른 국내산육류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시행 목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 ① 엄격한 육질검사를 통한 부정육의 생산과 유통 방지
- ② 통일된 규격으로의 유통질서 확립
- ③ 소비자의 육류에 대한 부위별 또는 육질 등에 대한 식별능력 제고

3) 2000년대 중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정착 단계

2000년대 전·중반 축산물 수입개방 본격화와 FTA체결 확대 등의 국제화 기조, 외국의 광우병 발병 확대 사례, 국내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위축 등 제반 악재의 연속적 발생 상황에서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기능이 다음과 같이 발전하게 된다.

- ①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차별화 정착
- ② 등급판정결과 정보의 소비자 환류를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나. 생산부문에서의 성과분석

1)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표제시로 개량 및 사양실적 개선

○ 시장경쟁력이 가능한 고품질 생산 기준 제시

- 등급판정제도의 도입 이후, 가축개량기관, 축산관련 연구소, 사료업체 등에 의해서 등급판정 결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 및 경락가격과의 관계가 분석되고 분석결과가 고급육 생산을 통한 상위등급 출현을 제고 방안으로 제시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개량과 사양방법 개선이 지속적으로 촉진되어 왔다.

○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양 목표 제공에 따른 개선 성과

- '97년부터 '07년까지의 10개년 간 고급육 출현 지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표성적이 크게 개선되어 등급판정제도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개량의 촉진'이라는 소기의 제도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16 > 등급판정제도 운영결과 고급육 출현 지표성적 개선 결과

<단위 : %,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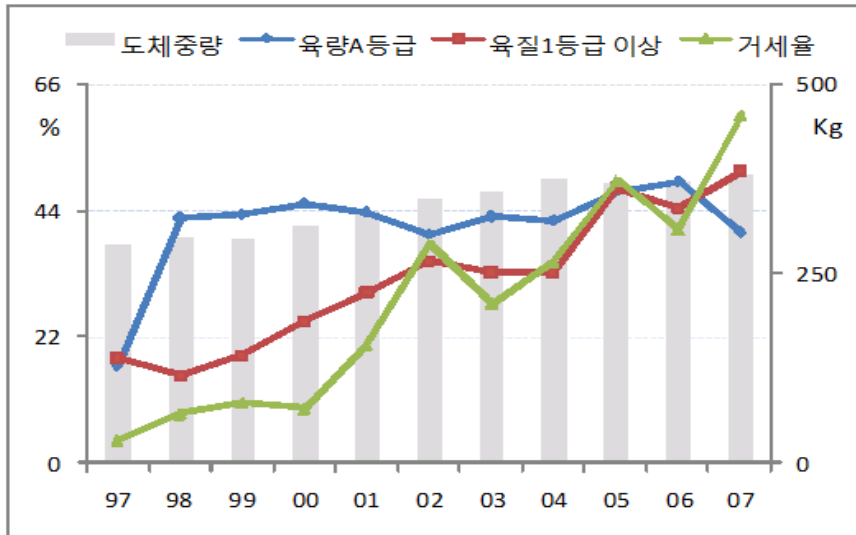
| 구 분 | 등급판정결과 지표 | 1997년(A) | 2007년(B) | 증감(B-A) |
|-----|---------------|-------------|-------------|-----------|
| 한 우 |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 18.4 | 50.9 | 32.5 |
| | 육량 A등급 출현율 | 16.9 | 40.2 | 23.3 |
| | 거세율 | 3.9 | 60.6 | 56.7 |
| | 도체중량(지울율) | 290.2(57.7) | 381.7(59.9) | 91.5(2.2) |
| 돼 지 | 규격 A등급 출현율 | 12.7 | 36.3 | 23.6 |
| | 거세율 | 31.2 | 97.3 | 66.1 |
| | 도체중량 | 76.8 | 80.7 | 3.9 |

- 한우의 경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7년에 18.4%가 '07년에 50.9%로 32.5% 크게 개선되었고 '08.10월에 53.3%까지 올라갔다. 육량 A등급 출현율도 '97년에서 '07년에 40.2%로 23.3% 상승하였으며 거세율도 '07년에 60.6%가 되어 무려 56.7%나 증가하였다. 도체중량도 '97년에 290kg에서 '07년에 382kg으로 92kg 증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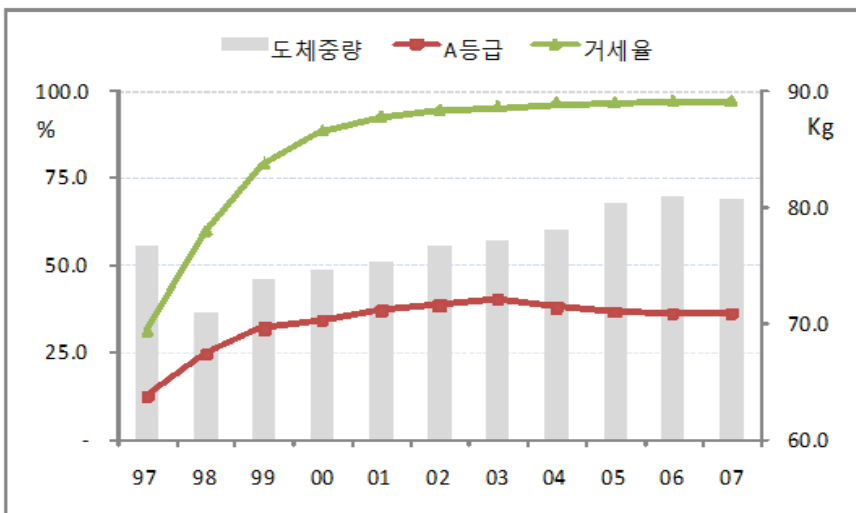
- 돼지의 경우 A등급 출현율이 '97년에 12.7%에 지나지 않았는데 '07년에 36.3%가 되어 23.6% 증가되었고 거세율도 '07년에 97%에 도달하였으며 도체중량도 76kg대에서 80kg대로 증량되었다.

< 그림 II-18 > 소·돼지 고급육 출현 지표의 개선 추이

< 소 >



< 돼지 >



2) 축산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축산물시장의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생산자의 이윤증대에 기여하였다. 이에 생산부문을 한우와 돼지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한우 부문

○ 상위등급 출현을 제고에 따른 축산물고품질화 진척으로 농가소득 증대

- 과거 10개년 간('97~'07년) 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을 분석해보면 '97년 1등급 이상 비율이 18.4%에서 '02년 35.2%, '07년에는 50.9%로 증가하여 한우의 품질 고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표 II-17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출현율

<단위 :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 등급 | - | - | - | - | - | - | - | 1.3 | 9.8 | 8.0 | 7.5 |
| 1 ⁺ 등급 | 0.5 | 3.4 | 4.4 | 6.5 | 9.2 | 12.7 | 14.1 | 16.3 | 15.2 | 15.2 | 18.4 |
| 1등급 | 17.9 | 11.9 | 14.4 | 18.3 | 20.6 | 22.5 | 19.2 | 18.3 | 22.9 | 21.3 | 25.0 |
| 2등급 | 30.0 | 28.2 | 31.6 | 31.9 | 31.3 | 31.4 | 29.1 | 27.4 | 24.1 | 23.5 | 24.5 |
| 3등급 | 48.8 | 54.0 | 48.3 | 42.4 | 38.0 | 32.7 | 36.9 | 35.8 | 27.3 | 31.4 | 23.5 |
| 등외 | 2.7 | 2.5 | 1.2 | 1.0 | 0.8 | 0.7 | 0.8 | 0.9 | 0.6 | 0.6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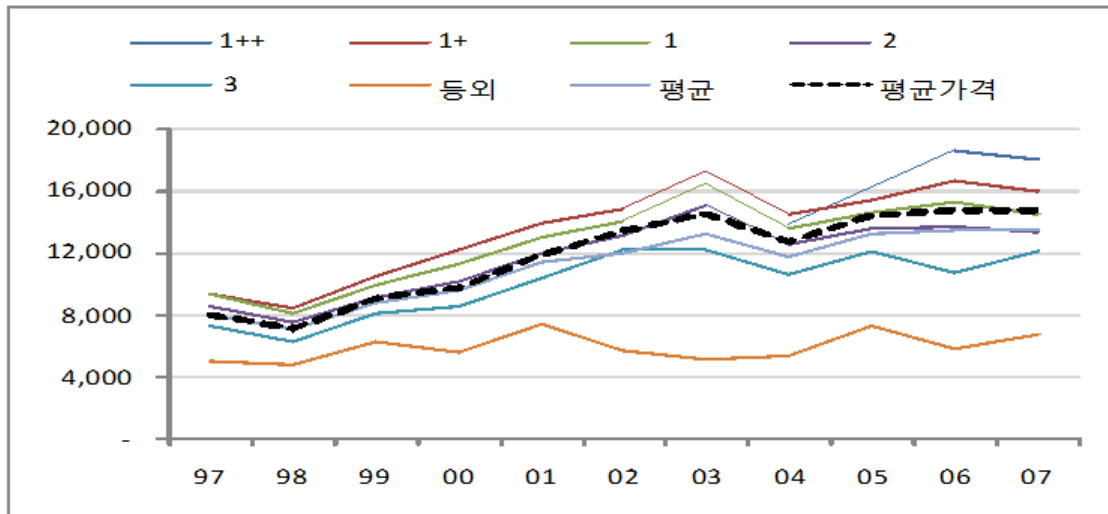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이 제고됨에 따라 등급별 경락가격의 차이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18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농협서울공판장 기준 가격)

<단위 : 원/ Kg>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 등급 | - | - | - | - | - | - | - | 13,849 | 16,204 | 18,625 | 18,017 |
| 1 ⁺ 등급 | 9,276 | 8,399 | 10,500 | 12,188 | 13,918 | 14,805 | 17,192 | 14,437 | 15,318 | 16,585 | 15,881 |
| 1등급 | 9,367 | 8,062 | 9,947 | 11,264 | 13,072 | 14,007 | 16,470 | 13,552 | 14,581 | 15,326 | 14,542 |
| 2등급 | 8,509 | 7,528 | 9,105 | 10,176 | 12,056 | 13,136 | 15,099 | 12,561 | 13,592 | 13,674 | 13,404 |
| 3등급 | 7,356 | 6,335 | 8,104 | 8,561 | 10,453 | 12,233 | 12,185 | 10,590 | 12,173 | 10,711 | 12,070 |
| 등외 | 5,092 | 4,848 | 6,278 | 5,640 | 7,435 | 5,793 | 5,203 | 5,386 | 7,343 | 5,805 | 6,752 |
| 평균 | 7,920 | 7,034 | 8,787 | 9,566 | 11,387 | 11,995 | 13,230 | 11,729 | 13,202 | 13,454 | 13,444 |
| 평균가격 | 7,972 | 7,061 | 8,951 | 9,654 | 11,815 | 13,380 | 14,514 | 12,671 | 14,416 | 14,729 | 14,688 |

< 그림 II-19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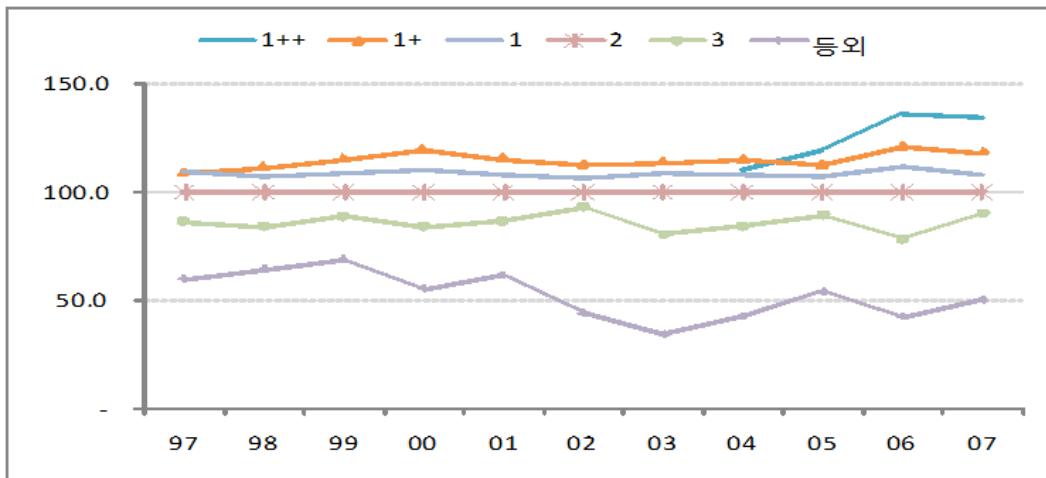
- 위 도표에서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의 평균과 평균가격이 '05년부터 2 등급에 근접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한우 2등급을 기준(100%)로 각 등급별 경락가격의 차이비율을 살펴보면 '97년 최고등급(1+등급)이 109.0%, 최하등급(등외)이 59.8% 수준이었으나 '07년에는 각각 134.4%와 50.4%로 등급별 가격차가 확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도가 시작될 때는 시장에서 등급별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 양축가들의 노력이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아 불평이 많았다. 따라서 '93년부터 한시적으로 1등급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여 고급육 출하를 장려하였다.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차별화가 시작되었으며 장려금 중지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등급별 가격차등화는 심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1⁺⁺등급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최근 소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1등급 이상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 표 II-19 > 한우 2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비율

<단위 :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 ⁺⁺ 등급 | - | - | - | - | - | - | - | 110.3 | 119.2 | 136.2 | 134.4 |
| 1 ⁺ 등급 | 109.0 | 111.6 | 115.3 | 119.8 | 115.4 | 112.7 | 113.9 | 114.9 | 112.7 | 121.3 | 118.5 |
| 1등급 | 110.1 | 107.1 | 109.2 | 110.7 | 108.4 | 106.6 | 109.1 | 107.9 | 107.3 | 112.1 | 108.5 |
| 2등급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3등급 | 86.4 | 84.2 | 89.0 | 84.1 | 86.7 | 93.1 | 80.7 | 84.3 | 89.6 | 78.3 | 90.0 |
| 등외 | 59.8 | 64.4 | 69.0 | 55.4 | 61.7 | 44.1 | 34.5 | 42.9 | 54.0 | 42.5 | 50.4 |

< 그림 II-20 > 한우 2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추이



- 등급판정제도 도입에 따른 육질등급의 구분과 이에 대한 가격의 차별화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등급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등급별 가격 차등화가 형성되지 못했다면 농가소득과 관련된 부가가치 증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나 위에서와 같이 뚜렷한 가격 차등화와 차등폭의 확대추세는 등급제도 도입에 따른 연차별 농가소득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한우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 산출

▪ 산식

$$\begin{aligned}
 & \text{등급제 활성화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액} = \\
 & \sum(\text{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times \text{연도별 등급별 판정두수} \times \text{연도별 등급별 평균도체중량})^1) \\
 & - \sum('97 \sim '04\text{년 한우3등급 평균경락가격}, '05 \sim '07\text{년 한우2등급 평균경락가격} \times \\
 & \quad \text{연도별 총 판정두수} \times '97 \sim '04\text{년 한우3등급 평균도체중량}, '05 \sim '07\text{년 한우} \\
 & \quad \text{2등급 평균도체중량})^2)
 \end{aligned}$$

1)차등가 : 등급별 가격차별이 있는 경우 연도별 경락가격 총합계,

2)기준가 : 등급별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 연도별 평균가격 근접 등급을 기준으로 한 경락가격 총합계

단, 연도별 화폐가치에 따른 이자율 환산 적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등외등급은 제외

< 표 II-20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판정두수, 기준가 및 등급별 가격
(평균도체중 적용前)

<단위 : 두, 백만원>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등급 | | | | | | | | 4,116 | 38,354 | 33,894 | 37,041 |
| 1+등급 | 3,770 | 32,639 | 38,680 | 52,917 | 50,548 | 56,732 | 50,920 | 52,915 | 59,194 | 64,649 | 90,700 |
| 1등급 | 141,731 | 112,871 | 126,016 | 148,691 | 113,201 | 100,326 | 69,138 | 59,424 | 89,548 | 90,685 | 123,268 |
| 2등급 | 237,176 | 266,787 | 276,191 | 259,851 | 171,754 | 140,171 | 104,855 | 88,848 | 94,320 | 100,061 | 120,787 |
| 3등급 | 385,917 | 511,868 | 421,956 | 344,779 | 208,279 | 145,816 | 133,154 | 116,199 | 106,800 | 133,526 | 115,701 |
| 계 | 768,594 | 924,165 | 862,843 | 806,238 | 543,782 | 443,045 | 358,067 | 321,502 | 388,216 | 422,815 | 487,497 |
| 기준가 | 5,654 | 5,855 | 6,992 | 6,902 | 5,684 | 5,420 | 4,363 | 3,405 | 5,277 | 5,782 | 6,534 |

< 표 II-21 > 한우의 연도별 등급별 차등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적용前)

<단위 : 백만원>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등급 | - | - | - | - | - | - | - | 57 | 621 | 631 | 667 |
| 1+등급 | 35 | 274 | 406 | 645 | 704 | 840 | 875 | 764 | 907 | 1,072 | 1,440 |
| 1등급 | 1,328 | 910 | 1,253 | 1,675 | 1,480 | 1,405 | 1,139 | 805 | 1,306 | 1,390 | 1,793 |
| 2등급 | 2,018 | 2,008 | 2,515 | 2,644 | 2,071 | 1,841 | 1,583 | 1,116 | 1,282 | 1,368 | 1,619 |
| 3등급 | 2,839 | 3,243 | 3,419 | 2,952 | 2,177 | 1,784 | 1,622 | 1,231 | 1,300 | 1,430 | 1,397 |
| 계 | 6,220 | 6,435 | 7,594 | 7,916 | 6,431 | 5,870 | 5,220 | 3,973 | 5,416 | 5,892 | 6,916 |

< 표 II-22 > 한우의 등급별 평균 도체중량

<단위 : Kg>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1**등급 | - | - | - | - | - | - | - | 363.5 | 359.9 | 358.7 | 370.0 |
| 1+등급 | - | 289.4 | 293.4 | 300.4 | 311.6 | 332.0 | 339.4 | 354.5 | 358.8 | 357.3 | 367.6 |
| 1등급 | - | 282.3 | 283.0 | 293.5 | 307.2 | 326.4 | 333.6 | 348.8 | 349.4 | 347.8 | 355.2 |
| 2등급 | - | 285.9 | 284.9 | 298.8 | 310.3 | 325.7 | 334.9 | 349.0 | 349.2 | 350.1 | 347.4 |
| 3등급 | - | 294.3 | 299.8 | 320.8 | 328.0 | 337.6 | 349.2 | 361.3 | 350.2 | 357.2 | 342.1 |
| 평균 | - | 288.0 | 290.3 | 303.4 | 314.3 | 330.4 | 339.3 | 355.4 | 353.5 | 354.2 | 356.5 |

※ 1997년 등급별 평균 도체중량은 당시 전산화 미비에 따라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음

< 표 II-23 > 한우의 연도별 차등가 및 기준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적용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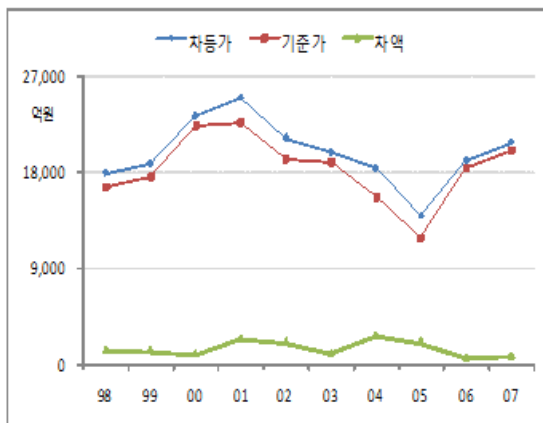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평균 |
|----------|------|--------|--------|--------|--------|--------|--------|--------|--------|--------|--------|--------|
| 1**등급 | - | - | - | - | - | - | - | - | 205 | 2,229 | 2,336 | 477 |
| 1+등급 | - | 101 | 804 | 1,220 | 2,010 | 2,336 | 2,851 | 3,103 | 2,741 | 3,240 | 3,941 | 2,235 |
| 1등급 | - | 3,748 | 2,575 | 3,679 | 5,145 | 4,830 | 4,688 | 3,972 | 2,814 | 4,541 | 4,937 | 4,093 |
| 2등급 | - | 5,770 | 5,722 | 7,514 | 8,205 | 6,744 | 6,166 | 5,525 | 3,897 | 4,488 | 4,753 | 5,879 |
| 3등급 | - | 8,355 | 9,722 | 10,970 | 9,681 | 7,350 | 6,229 | 5,862 | 4,309 | 4,644 | 4,893 | 7,201 |
| 차등가 계 | - | 17,973 | 18,823 | 23,383 | 25,041 | 21,260 | 19,934 | 18,463 | 13,966 | 19,142 | 20,860 | 19,885 |
| 기준가 | - | 16,639 | 17,552 | 22,432 | 22,640 | 19,190 | 18,926 | 15,764 | 11,889 | 18,473 | 20,085 | 18,359 |
| 차액 | - | 1,334 | 1,271 | 951 | 2,401 | 2,070 | 1,008 | 2,699 | 2,077 | 669 | 775 | 1,526 |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한우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 산출 결과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이후 과거 10개년('98~'07)간 등급별 경락가격 차등화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듯이 연도별로 최고 2,700억원에서 최저 670억원까지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급판정제도의 도입과 등급별 경락가격 차등화에 따라서 과거 10개년 간 평균적으로 매년 1,526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한우산업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고품질 쇠고기의 생산을 위한 비육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생산 비용 증가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등급제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는 산출액보다 감소 되겠지만 산출액 그대로를 놓고 보더라도 등급판정제도 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한우산업의 발전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II-21 > 한우 기준가와 차등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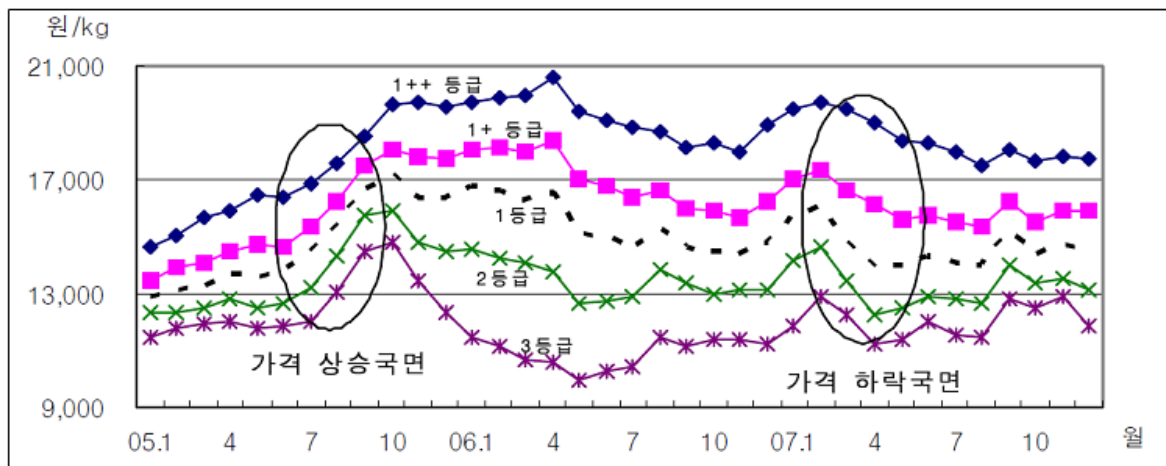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준가와 차등가의 차액이 '00년과 '03년 및 '07년에 큰 폭으로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시적인 거세율의 저하에 따른 상위등급 쇠고기 출현율의 상대적인 하락에 기인한 것이며 이런 현상을 통해 한우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생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저가 국면에서의 생산농가 소득지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년)

- 등급판정제도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등급별 가격차등화 정착에 따라 가격 하락 국면에서 고급육과 저급육 사이의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의 상대적인 소득증가를 발생시킴으로써 등급판정제도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격차등화 정책의 순기능을 활성화 시켰다.

< 그림 II-22 > 한우의 가격변동에 따른 등급별 가격차등



- 가격이 상승국면이었던 2005년 6월 1⁺⁺등급과 1⁺등급의 가격 차이는 Kg당 1,732원이었으며, 가격이 하락국면이었던 2007년 3월에는 2,858원으로 확대되었다. 가격하락 국면에서는 등급별 가격 격차는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좁혀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가격의 저가 국면에서는 등급별 차등가격의 격차가 상위 등급에서 크게 벌어지게 됨에 따라 등급판정제도가 고급육 생산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성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한우 고급육 생산 비율 증가 및 시장차별화(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

- 한우고기의 품질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지 시장에서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가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한우고기(냉장 등심)가격은 500g당 15,570원에서 2006년 36,143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 34,594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또한 수입쇠고기(냉동 등심) 가격은 2000년 5,217원에서 2006년 9,659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 7,751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가격차는 2000년 2.9배에서 2006년 3.7배, 2007년 4.5배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 증가로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시장차별화가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돼지 부문

○ 돼지도체의 규격화 진척으로 농가소득 증대

- 과거 10개년 간('97~'07년) 돼지도체의 규격돈(B등급 이상) 출현율을 분석해보면 '97년 B등급 이상 비율이 44.7%에서 '07년에는 66.0%로 21.3%p 증가하여 돼지의 규격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돼지고기 등급 상승률은 쇠고기 만큼은 높지 않다. 이는 소비자와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육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육량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II-24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출현율

<단위 :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A등급 | 12.7 | 24.8 | 32.2 | 34.5 | 37.2 | 38.7 | 40.4 | 38.2 | 37.1 | 36.3 | 36.3 |
| B등급 | 32.0 | 31.7 | 30.2 | 29.6 | 30.1 | 29.7 | 29.7 | 31.3 | 30.5 | 30.2 | 29.7 |
| C등급 | 32.2 | 22.2 | 18.1 | 16.7 | 15.8 | 15.1 | 14.4 | 15.7 | 16.1 | 16.3 | 16.7 |
| D등급 | 18.2 | 16.9 | 16.1 | 16.4 | 14.3 | 13.8 | 12.7 | 11.6 | 12.8 | 13.6 | 13.5 |
| 등외 | 5.0 | 4.4 | 3.4 | 2.9 | 2.7 | 2.6 | 2.8 | 3.3 | 3.5 | 3.6 |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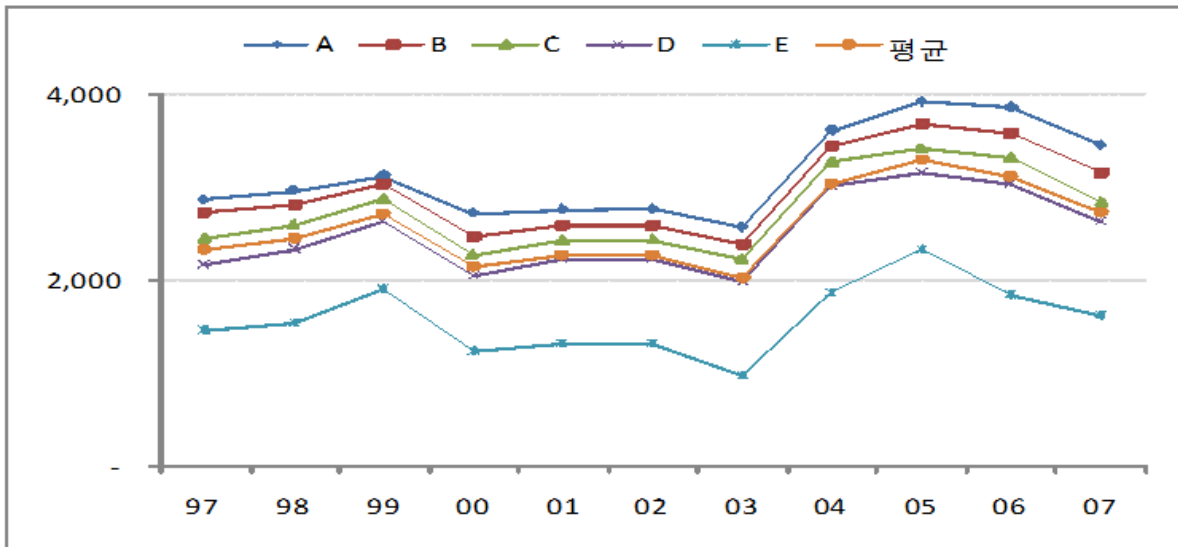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로 돼지고기의 규격돈 생산이 제고·유지됨에 따라 등급별 경락가격의 차이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25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농협서울공판장 기준 가격)

<단위 : 원/ Kg>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A등급 | 2,877 | 2,968 | 3,131 | 2,725 | 2,762 | 2,772 | 2,578 | 3,609 | 3,926 | 3,859 | 3,459 |
| B등급 | 2,730 | 2,808 | 3,041 | 2,466 | 2,595 | 2,581 | 2,388 | 3,438 | 3,684 | 3,579 | 3,152 |
| C등급 | 2,456 | 2,604 | 2,884 | 2,285 | 2,434 | 2,446 | 2,238 | 3,279 | 3,429 | 3,320 | 2,846 |
| D등급 | 2,167 | 2,336 | 2,637 | 2,039 | 2,229 | 2,230 | 1,984 | 3,014 | 3,151 | 3,021 | 2,627 |
| 등외 | 1,471 | 1,554 | 1,911 | 1,235 | 1,333 | 1,320 | 979 | 1,877 | 2,338 | 1,856 | 1,630 |
| 평균 | 2,340 | 2,454 | 2,721 | 2,150 | 2,271 | 2,270 | 2,033 | 3,043 | 3,306 | 3,127 | 2,743 |

< 그림 II-23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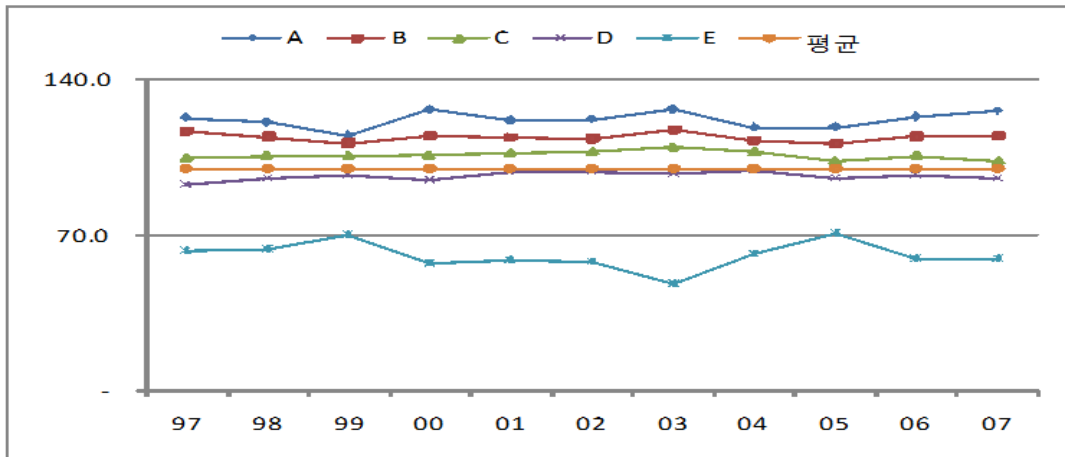


- 위 그림에서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의 평균과 평균가격이 '97년부터 '00년 사이와 '05년부터 '07년 사이에는 C와 D등급사이에, '01년부터 '04년 까지는 D등급에 근접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락 평균가격(100%)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 경락가격의 차이비율을 살펴보면 10개년 평균 A등급이 122.1%, B등급이 114.3%, C등급이 106.3%, D등급이 96.4%, 등외등급이 60.9% 로 등급별 가격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26 > 돼지 평균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비율
<단위 :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A등급 | 122.9 | 120.9 | 115.1 | 126.7 | 121.6 | 122.1 | 126.8 | 118.6 | 118.8 | 123.4 | 126.1 |
| B등급 | 116.7 | 114.4 | 111.8 | 114.7 | 114.3 | 113.7 | 117.4 | 113.0 | 111.4 | 114.5 | 114.9 |
| C등급 | 104.9 | 106.1 | 106.0 | 106.3 | 107.2 | 107.8 | 110.1 | 107.7 | 103.7 | 106.2 | 103.8 |
| D등급 | 92.6 | 95.2 | 96.9 | 94.8 | 98.2 | 98.2 | 97.6 | 99.0 | 95.3 | 96.6 | 95.8 |
| 등외 | 62.9 | 63.3 | 70.2 | 57.4 | 58.7 | 58.2 | 48.1 | 61.7 | 70.7 | 59.4 | 59.4 |
| 평균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그림 II-24 > 돼지 평균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 추이



- 등급판정제도 도입에 따른 규격등급의 세분화와 이에 대한 가격의 차별화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등급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등급별 가격 차등화가 형성되지 못했다면 농가소득과 관련된 부가가치 증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나 위에서와 같이 뚜렷한 가격 차등화와 차등폭의 유지는 **등급제도 도입에 따른 연차별 양돈 농가소득에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돼지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 산출
 - 산식

등급제 활성화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액 =

$$\sum(\text{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times \text{연도별 등급별 판정두수} \times \text{연도별 등급별 평균도체중량})^{1)}$$

$$- \sum(\text{돼지 평균경락가격} \times \text{연도별 총 판정두수} \times \text{연도별 평균도체중량})^{2)}$$

- 1)차등가 : 등급별 가격차별이 있는 경우 연도별 경락가격 총합계,
- 2)기준가 : 등급별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 연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락가격 총합계 단, 연도별 화폐가치에 따른 이자율 환산 적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등외등급은 제외

< 표 II-27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판정두수 및 기준가격(평균도체중 산입전)

<단위 : 천두, 백만원>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A등급 | 955 | 2,431 | 3,401 | 3,859 | 5,142 | 5,804 | 6,114 | 5,561 | 4,982 | 4,741 | 4,946 |
| B등급 | 2,412 | 3,105 | 3,187 | 3,307 | 4,153 | 4,454 | 4,502 | 4,562 | 4,097 | 3,948 | 4,045 |
| C등급 | 2,428 | 2,168 | 1,915 | 1,866 | 2,179 | 2,266 | 2,172 | 2,283 | 2,169 | 2,132 | 2,271 |
| D등급 | 1,371 | 1,652 | 1,700 | 1,830 | 1,969 | 2,069 | 1,924 | 1,691 | 1,713 | 1,783 | 1,831 |
| 계 | 7,167 | 9,356 | 10,203 | 10,862 | 13,443 | 14,594 | 14,712 | 14,097 | 12,962 | 12,604 | 13,093 |
| 기준가 | 18,329 | 25,064 | 29,827 | 25,838 | 33,675 | 36,590 | 33,794 | 47,015 | 45,981 | 43,417 | 39,555 |

< 표 II-28 > 돼지의 연도별 등급별 차등가(등급별 평균 도체중 산입전)

<단위 : 백만원>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A등급 | 2,749 | 7,216 | 10,649 | 10,515 | 14,202 | 16,090 | 15,763 | 20,069 | 19,560 | 18,294 | 17,108 |
| B등급 | 6,585 | 8,719 | 9,690 | 8,155 | 10,778 | 11,496 | 10,751 | 15,684 | 15,095 | 14,130 | 12,749 |
| C등급 | 5,963 | 5,645 | 5,524 | 4,263 | 5,304 | 5,543 | 4,860 | 7,486 | 7,437 | 7,079 | 6,464 |
| D등급 | 2,972 | 3,858 | 4,484 | 3,732 | 4,389 | 4,614 | 3,818 | 5,098 | 5,398 | 5,385 | 4,811 |
| 계 | 18,269 | 25,438 | 30,347 | 26,666 | 34,673 | 37,743 | 35,191 | 48,337 | 47,490 | 44,889 | 41,133 |

< 표 II-29 > 돼지의 등급별 평균 도체중량

<단위 : Kg>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A등급 | - | 77.3 | 80.0 | 80.1 | 80.3 | 81.0 | 81.3 | 83.3 | 84.7 | 85.1 | 85.3 |
| B등급 | - | 74.9 | 77.6 | 77.3 | 77.6 | 78.7 | 79.1 | 80.5 | 82.2 | 83.0 | 84.0 |
| C등급 | - | 74.0 | 77.6 | 77.8 | 78.4 | 80.0 | 80.7 | 80.2 | 82.2 | 83.3 | 83.5 |
| D등급 | - | 76.7 | 81.8 | 82.7 | 83.3 | 86.1 | 86.8 | 83.8 | 87.0 | 88.8 | 87.6 |
| 평균 | - | 75.7 | 79.3 | 79.5 | 79.9 | 81.5 | 82.0 | 82.0 | 84.0 | 85.1 | 85.1 |

※ 1997년 등급별 평균 도체중량은 당시 전산화 미비에 따라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음

< 표 II-30 > 돼지의 연도별 기준가 및 차등가 (등급별 평균 도체중 산입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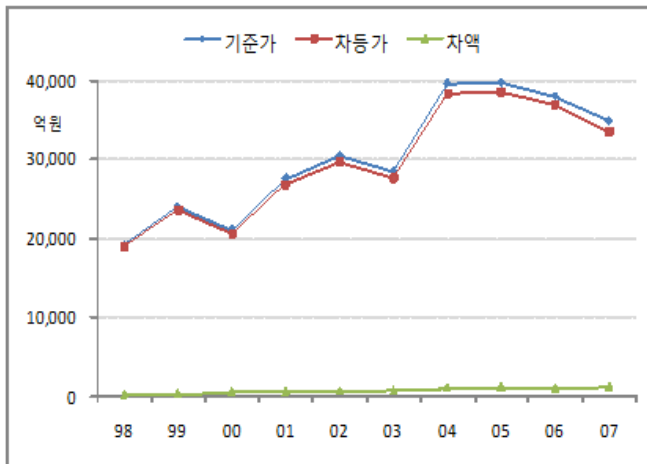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계 |
|----------|------|--------|--------|--------|--------|--------|--------|--------|--------|--------|--------|--------|
| A등급 | - | 5,558 | 8,519 | 8,423 | 11,405 | 13,033 | 12,815 | 16,718 | 16,567 | 15,569 | 14,594 | 12,320 |
| B등급 | - | 6,531 | 7,520 | 6,304 | 8,363 | 9,048 | 8,504 | 12,626 | 12,408 | 11,728 | 10,709 | 9,374 |
| C등급 | - | 4,177 | 4,286 | 3,317 | 4,158 | 4,434 | 3,922 | 6,004 | 6,113 | 5,897 | 5,398 | 4,771 |
| D등급 | - | 2,959 | 3,668 | 3,087 | 3,656 | 3,973 | 3,314 | 4,272 | 4,697 | 4,782 | 4,214 | 3,862 |
| 차등가 계 | - | 19,245 | 23,993 | 21,130 | 27,582 | 30,487 | 28,555 | 39,619 | 39,785 | 37,976 | 34,915 | 30,329 |
| 기준가 | - | 18,980 | 23,638 | 20,535 | 26,907 | 29,803 | 27,702 | 38,529 | 38,636 | 36,926 | 33,662 | 29,532 |
| 차액 | - | 265 | 355 | 595 | 675 | 684 | 853 | 1,090 | 1,149 | 1,050 | 1,253 | 797 |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돼지생산농가 소득증대 효과 산출 결과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이후 과거 10개년('98~'07)간 등급별 경락가격 차등화에 따른 양돈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듯이 연도별로 최고 1,150억원에서 최저 265억원까지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급판정제도의 도입과 등급별 경락가격 차등화에 따라서 과거 10개년 간 평균적으로 **매년 797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양돈산업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소득증대 효과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알 수 있는데 연평균 20.6%P씩 증가되고 있다. 이는 97%를 넘어서는 거세율과 '97년 44.7%의 규격율(A·B등급출현율)이 '07년에 66%에 이르는 등의 양돈업계의 지속적인 품질개량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II-25 > 돼지 기준가와 차등가 비교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준가와 등급판정제도에 의한 차등가의 간격이 가격 하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에 따라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상대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축산물등급판정제도 활성화에 따른 축산생산농가의 정책 만족도 제고

- 한우 산업정책 중 '유통구조 개선' 부문에서 '등급판정제도' 정책 만족도 평가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한우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정책을 평가한 결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 중 "등급판정 제도"에 대해 조사농가의 77.6%가 보통이상을 평가하였으며 53.9%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년)

< 표 II-31 > 등급판정제도의 평가(한우)

<단위 : %>

| 정책구분 | 과거 정책의 농가소득 기여도 | |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합계(보통 이상) |
| 등급판정제도 | 3.9 | 50.0 | 23.7 | 22.4 | 0.0 | 100.0(78) |
| 최고기이력추적제 | 2.8 | 19.4 | 23.6 | 38.9 | 15.3 | 100.0(46) |
| 브랜드컨설팅지원 | 2.8 | 25.4 | 18.3 | 50.7 | 2.8 | 100.0(46) |
|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 1.4 | 32.9 | 21.9 | 38.4 | 5.5 | 100.0(56) |

- 양돈 산업정책 중 ‘유통구조 개선’ 부문에서 ‘등급판정제도’ 정책 만족도 평가결과
 - 유통구조 개선 정책 중 “등급판정 제도”에 대해 양돈농가의 73.9%가 보통이상을 평가하였으며 42.6%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표 II-32 > 등급판정제도의 평가(돼지)

<단위 : %>

| 정책구분 | 과거 정책의 농가소득 기여도 | |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합계(보통 이상) |
| 등급판정제도 | 3.8 | 38.8 | 31.3 | 22.5 | 3.8 | 100.0(74) |
| 브랜드컨설팅지원 | 1.4 | 27.8 | 31.9 | 30.6 | 8.3 | 100.0(63) |
|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 4.1 | 41.9 | 25.7 | 24.3 | 4.1 | 100.0(72) |

- 축산농가의 축산정책 평가결과 “가축개량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해 62.5%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62.6%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축산물등급판정제도가 가축개량 촉진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 유통부문에서의 성과분석

-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물유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
 - LPC 조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 영세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원료확보난, 판매망 미개척 등 전후방 연계 미흡으로 LPC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 지자체의 도축세 감소 우려 등으로 도축장의 통폐합이 지연되고 있었고
 - 소매단계의 유통선진화 부진에 따라 소규모 식육판매점의 난립으로 산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연동되지 않고, 부정유통 등이 성행되는 바
 -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출현 등으로 생계비 유지를 위해 둔갑판매, 무자료 거래, 일정마진 유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에 의한 관행적인 지육유통으로 냉장·부분육 유통이 미흡함에 따라
 - 수요자(대형할인점, 소매점, 백화점)가 요구하는 냉장부분육 유통이 불충분하며
 - 지육유통으로 유통과정에서의 오염 및 품질저하를 초래하였다.
 - 등급화거래 등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 형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투명성이 낮음에 따라
 - 부위별 구분 구분판매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인원 부족, 국내외 식별기술 미흡 등으로 위반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낮고 제재의 실효성도 미흡한 형편이었다.
 -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선도적 유통 수행기능의 미흡에 따라
 - 산지유통에서의 중간 수집상 견제기능과 도소매에서의 시장 선도기능이 미미한 형편이었다.

1) 거래조성 기능 활성화

- 일반적으로 유통의 기능은 배급기능, 물적기능, 거래조성기능 등으로 구분하며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의 거래조성 기능에 있어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표준화는 상품의 등급과 등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등급화는 상품을 선별하여

표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등급화는 정확하고 능률적인 가격형성, 견본 거래와 대량거래에 의한 거래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소비수요의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한다.

- 축산물등급거래에 따른 시장정보(가격, 수요, 공급 등)는
 -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판매전략과 생산계획 수립,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에 기여하여 왔다.
 - 또한, 유통담당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물량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2) 부정육 유통 근절

○ 강제급수 근절 및 냉동육 유통에 의한 육질저하 방지

- '90년대 중반까지 강제급수를 통해 쇠고기의 지육량과 정육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밀도살 하는 등 고질적인 악행이 상습적으로 일부 중간상인과 유통업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식육유통이 냉동육으로 유통됨에 따라 이러한 강제급수에 의한 부정식육이 최종 소비단계까지 드러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강제급수육의 유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규정된 축산법 제43조의 '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에서 소의 등급판정을 위해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도록 명시하고 또한 "등심 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토록 규정하여 준수토록 하였으며 축산법 시행규칙에 등급판정기준을 통해 "절개후 30분이 경과한 후 절개면을 보고 판정"토록 하였다.
- 강제급수된 도체의 경우 등급판정 항목 중 "육색"과 "조직감"을 통해 그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등급판정결과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생검사의 재검을 통해 부정육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 또한, 등심 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축 후 즉시 냉장고에 입고되어 12시간 이상의 냉장보관을 한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강제급수 후 온도체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부정육을 유통하는 시스템을 와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강제급수된 식육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진위여부 확인 기반 마련

-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규정에 의해 축산물의 등급판정 이후 등급판정결과(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등급판정사명, 작업장명, 등급판정신청자 또는 매수자성명, 업소명, 도체번호, 귀표번호, 품종, 성별, 도체중량, 등급)가 표기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교부된다. 이렇게 교부된 등급판정확인서는 해당 도체가 판매되는 동안 농식품부 장관 고시사항인 '축산물등급거래규정'에 의해 소매점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소매점에 비치된 등급판정확인서의 내용확인과 추적을 통해 실제 판매되는 식육의 진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도'의 DNA동일성검사가 연계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충원된다면 거의 모든 식육에 대한 둔갑판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짐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 품종, 성별 및 등급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도축두수 등의 축소와 무자료 거래를 통한 고의적인 세금 탈루의 방지

- 축산법 제4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당일과 월간누계로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되는 내용에는 당일 '도축두수'와 '등급판정 신청두수 및 판정두수'가 기재되며 이렇게 제출된 반출상황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최종적으로 취합되어 전국, 각 지역별, 작업장별 도축두수와 반출두수에 대한 통계자료로 작성되어 관리된다. 과거에는 작업장과 유통과정에서 무자료거래가 공공연하게 성행되어 고의적인 세금 탈루가 있어 왔는데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이후 작업장에서의 당일 도축두수 및 반출상황의 관리와 유통업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의적인 세금 탈루를 억제하고 지자체에서 투명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3) 유통형태의 선진화 유도

○ 고기의 지육유통을 부분육 유통체계로 전환 유도

- 우리나라의 경우 도축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식육의 이동형태가 관행적으로 지육형태로 유통되어 왔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도축장내에 육가공시설이 완비되어 부분육이 박스형태로 유통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육유통은 운반되는 동안 식육의 교차오염과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후진국형 유통형태라고 할 수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 이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의해 '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사업'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유통과정의 효율증진 및 공정거래 실현을 목표로 부분육에 대한

등급을 확인하여 표시함으로써 우리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02년 쇠고기를 대상으로 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07년 5개 도매시장과 31개 축산물부분육 대상업체를 지정·확대하였으며 돼지고기 부분육에 대해서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소도체 1두가 농림부 고시 2007-82호에 의거 분할·정형된 대분할부위의 부분육형태로 가공된 후 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을 통해 등급표시가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육은 규격화된 박스로 포장되어 도매시장에 상장되고 낙찰되어 유통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육 상장 및 유통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되었다.
- 등급 확인된 부분육은 품종과 등급을 알 수 있으므로 매장 여건에 맞는 부위를 적정량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재고부담을 줄이는 등 식육판매업소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등급이 확인된 부분육 거래는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 주어 국내축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 축산물 냉장유통 시스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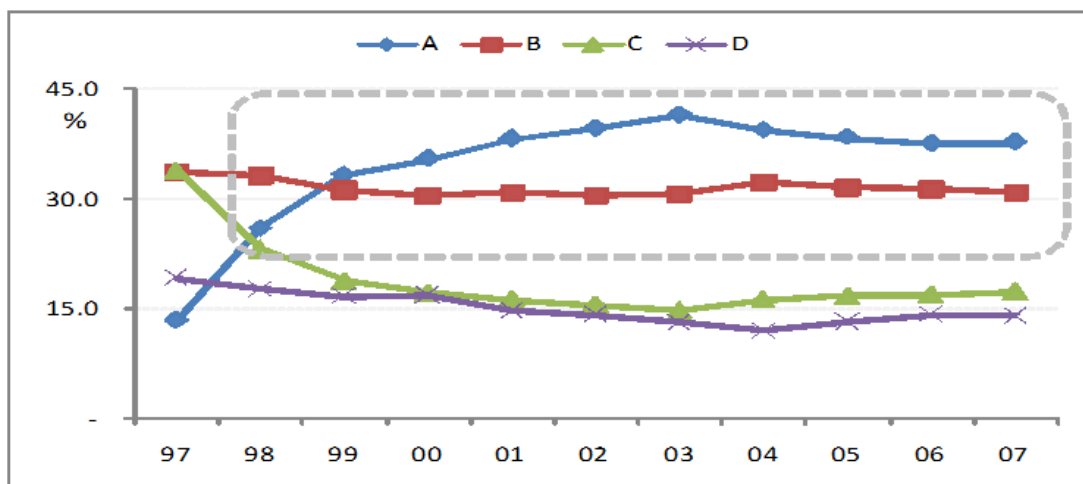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취지중 하나는 국내산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제도 도입 당시, 국내 축산물의 또 다른 유통관행은 식육이 대부분 냉동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통관행의 단점은 축산물의 물리적 특성상 동결보장된 식육을 해동할 시 세포질 파괴에 의한 드립발생 등 급격한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구분된 고품질 축산물의 차별화된 품질상태를 소비단계까지 유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냉장유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냉동유통 시스템이 서서히 줄어들고 선진화된 냉장유통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 보관 관행도 고급육에 대한 냉장숙성이 고기의 연도와 풍미를 개선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변화된 냉장유통체계와 연계되어 냉장보관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식육의 냉장유통시스템이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착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 축산물규격화 유도를 통한 대외 수출 촉진 기반 마련

- 지리적인 근접성에 의해 대일수출에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국내 양돈업계의 경우 '97년부터 구제역 발생 이전인 '99년까지 3개년 간 등심·안심·전지 및 후지 등 일부 부위에 대한 대일 수출이 활성화 되었다. 국내산 축산물의 대외수출을 위한 전제는 품질과 규격의 균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진척된 국내 돼지고기의 규격화는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대일수출이 가능토록 작용하여 수출 촉진의 기반이 되었다.

- 다음의 표에서 점선상의 A등급과 B등급이 대일 수출에 적합한 규격에 해당되며 '97년을 기점으로 A등급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C등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C등급에 해당하는 돈육의 규격이 B등급이상으로 상향되는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97년부터 대일 수출 마지막 해인 '99년까지의 구체적인 규격상승율을 살펴보면 A등급은 13.3%에서 33.3%로 20%P가 증가되었으며, B등급은 33.7%에서 31.2%로 2.5%P감소하였고, C등급은 33.9%에서 18.8%로 15.1%P 감소되었으며 D등급은 19.1%에서 16.7%로 2.4%P 감소되었다. 즉 돈육 규격의 상향화가 동일기간 동안 20%P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규격돈이 단기간 동안 증가된 사유중 하나는 대일 수출에 대한 양돈농가의 기대감과 대일수출 활성화를 위한 품질고급화 및 규격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II-26 > 돼지 등급 추이



- 당시 양돈산업에서 수출촉진을 위해 행해진 정책들을 보면 규격돈 구매, 생산장려금 지원, 품질개선단지 조성, 등급화 추진이 그것인데 이중 규격돈 구매 및 생산장려금 지원은 등급판정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이었다. 90년대 후반의 국내 돼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제도를 통한 국내산 돈육의 규격화 촉진결과에 의해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돈산업이 안정될 수 있었으며 일본시장에 대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수출증대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농촌경제연구원, 2000년)

('97) 52천톤, 248백만\$ → ('98)88천톤, 313백만\$ → ('99)80천톤, 332백만\$

○ 축산물선물거래의 도입 기반 마련

- '05년 8월 선물업계를 중심으로 한 돈육선물 상장 논의가 본격화 된 후 마침내 '08년 7월 돈육선물상장거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돈육 선물시장은 미래의 돈육 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가격예시기능 또는 가격발견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선물 가격은 미래의 수급 상황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예측이 합치되어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므로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양돈시장에서는 수급전망만이 발표되어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구하기 어려우나, 선물시장을 활용할 경우 미래 돈육 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물 가격 정보는 누구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농촌경제연구원, 2008년)
- 이러한 선물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개관적인 '돈육대표가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돈육선물거래의 도입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제도에 따른 도매시장에서의 등급별 차등가격이 정착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등급별 차등가격의 추이에 대한 관리가 '97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급판정제도 시행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주요 정보관리업무중 하나로 수행되어 왔다.
- 돈육선물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왜곡되지 않은 거래가격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돈육선물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돈육선물거래를 주도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이러한 거래가격의 선정을 위해 고심하였으나 등급판정제도에 따른 돈육시장의 등급별 차등화 가격의 신뢰성과 공시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돈육대표가격의 산출을 등급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돈육선물거래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돈육 대표가격 산출 산식 (단위: 원/kg)
(k일 도체중량가중평균방식)

$$I_t = \frac{\sum_{i=1}^{t-(k-1)} \sum_{i=1^*A \sim 3D} \text{도체별 경락가격}_i \times \text{도체중량}_i}{\sum_{i=1}^{t-(k-1)} \sum_{i=1^*A \sim 3D} \text{도체중량}_i}$$

i = 전체도매시장 상장 돈육도체중 1*A~3D등급, E등급 제외
t = 지수산출일, k가중평균일수 = 2일
* 대표가격 발표는 t+1일 오전 10시, 소수점 이하의 가격은 반올림
* 1*A~3D등급이란 1*A, 1*B, 1*C, 1*D, 1A, 1B, 1C, 1D, 2A, 2B, 2C, 2D, 3A, 3B, 3C, 3D를 말한다.

- 돈육선물거래의 개시와 더불어 쇠고기의 경우에도 선물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일찍부터 등급제도가 정착되어 상품의 표준화·규격화가 이루어져 왔고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 가격결정의 투명성, 공시체계 등에서 우수하며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선물시장 상장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라. 소비부문에서의 성과분석

1) 소비자의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 강화

○ 부위별, 등급별 구분 판매제 도입을 통한 선택 기준 확대

- 90년대에 진입하면서 안정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육의 소비성향도 양에서 질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화에 맞추어 축산물에 대한 고품질화를 지향하며 등급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성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식육의 품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품질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고품질화 진척에 불구하고 수입식육과의 철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여기에 일부 식육업자의 둔갑판매와 같은 부정육 유통이 더해지기도 했다.
- 이러한 소매단계에서의 부조리한 현상을 타계하기 위하여 정부는 등급판정결과와 연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고시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식육에 대한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정보를 진열된 식육의 전면 표시판에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였다.
- 200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에 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세분화된 정보의 제공은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제공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기재사항과 연계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식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쇠고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그 외 부위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표시
 -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
 -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은 소도체 검사시 쇠고기 종류별로 구분한 색깔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쇠고기의 종류로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
 -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표기하되 종류를 명시하고 수입쇠고기는 수출국을 표시
-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유통 및 소비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확한 축산물의 소비정보는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보세분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소비자의 식육에 대한 식별능력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단체급식 납품기준으로서 축산물등급기준 설정을 통한 부정납품 예방 및 국민 건강권 보호

○ 등급결과의 학교급식 납품 기준 선정에 따른 공공기여도 확대

- 2000년대 중반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의 식중독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면서 단체급식시장에서의 식품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의 영양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식재료의 안전적 보급이었다.
- 축산물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위생검사결과 합격된 물량만이 등급판정의 대상이 되며 세분화된 품질이 표기되고 표기된 정보의 진위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확보되었음에 따라 위의 단체급식에 있어 이상적인 식재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상태가 확보된 경우 품질유지를 위한 유통체계도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07.1월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한 납품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 쇠 고 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C등급 이상
 - 닭 고 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계 란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이렇듯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유통체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소비행태와 연계되면서 제도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추후,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군수 및 병원, 대규모 단체급식장에 대해서도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될 수 있는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납품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축산물검수시스템 도입을 통한 학교급식 부정납품 차단

- 상기된 것과 같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납품기준으로 등급기준을 설정한 이후 등급과 고기부위 등을 속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의 보장을 위하여 축산물검수시스템의 사용이 학교급식에서 상례화 되었다.
- 축산물검수시스템은 특정 소·돼지도체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에 기재된 품종, 성별, 도체중량, 육량등급에 근거한 마리당 추정 부분육 생산량('04.12월 축산과학원 연구 발표자료 인용)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생산량 초과 납품을 제한함으로써 축산물납품업자가 학교급식을 위해 일선 학교에 납품 시 악의적으로 확인서 및 등급을 위·변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납품축산물에 대해 진위를 검수하는 것이다.
- 동서비스는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전국 8,485개 학교에서 가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스템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의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의한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의 검수를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축산물검수시스템은 2007년 305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중에서 10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 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국가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의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DNA동일성검사 기법이 가미된다면 국내 축산물의 부정유통 사례가 급속하게 감소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유치원 및 병원 등 대형 단체급식처에 대한 축산물납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와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국민건강권 보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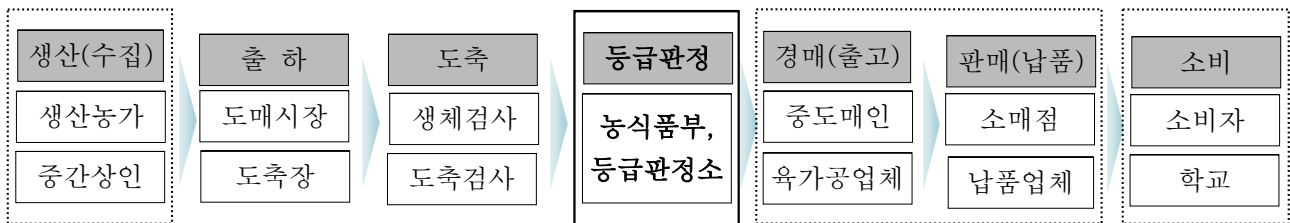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기능과 성과 정리

생산부문

- ① 등급판정결과의 생산농가 피드백 및 분석연구를 통한 시장경쟁력이 가능한 고품질축산물 생산지표 제시
 - 가축개량 촉진 및 사양방법 개선
- ② 등급별 차등가격 정착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로 생산농가 소득 향상
 - 상위등급 출현율 제고에 따른 축산물고급화 진척
 - 축산물가격의 저가국면에서의 고품질축산물 생산농가 소득 지지
 - 수입축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시장 형성
 - 생산농가의 축산정책 신뢰성 제고

생산부문

유통부문



소비부문

유통부문

- ① 축산물거래조성 기능의 핵심요소
 - 축산물등급화를 통한 정확하고 능률적인 가격 형성
 - 건본거래와 대량거래에 의한 거래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 소비수요 확대
- ② 부정육 유통 근절
 - 강제급수 근절 및 냉동육 유통에 의한 육질저하 방지
 - 등급판정결과자료의 데이터관리 및 활용을 통한 둔갑판매 방지 기반 마련
 - 무자료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방지
- ③ 유통형태의 선진화 유도
 - 지육유통을 부분육 유통체계 전환 및 냉장유통 시스템 정착 유도
 - 축산물규격화를 통한 대외수출 촉진 및 축산물선물거래 도입 기반 마련

소비부문

- ① 소비자의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 강화
 -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판매제 도입을 통한 선택 기준 확대
- ② 단체급식 납품기준으로서 축산물등급판정기준 설정을 통한 부정납품 예방 및 국민건강권 보호
 - 등급결과의 학교급식 납품 기준 선정에 따른 공공기여도 확대
 - 축산물검수시스템 도입을 통한 학교급식 부정납품 차단

마. 축산물등급판정결과정보의 생산농가 피드백 실적

○ 등급판정결과농가통보 체계의 발전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시행은 축산물의 고품질화, 가축개량의 촉진 및 축산물 유통의 원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도입 목적의 실현 과정은 축산물등급판정 행위에 의해 도출된 결과물인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정보화와 이의 분석결과를 생산농가와 유통업자 및 소비자에게 피드백 하고 각 대상자가 이를 사양관리, 가축개량, 유통 및 소비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 이러한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고유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도도입과 동시에 구현된 업무프로세스가 축산물등급판정결과에 대한 환류과정이며 이는 ①축산물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②등급판정 받은 축산물 개체에 대한 등급표시 ③도매시장에서 상장된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등급 공표 ④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교부 ⑤축산물거래명세서의 등급표기 ⑥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판매 제도 ⑦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상의 등급 조회 ⑧등급판정통계연보 발행 ⑨등급정보지 발행 ⑩돼지선물거래 돈육대표가격 공시 ⑪경매시황 중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환류를 위한 시스템 중 특히 가축개량 및 사양관리의 개선을 위한 '축산물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시스템'은 축산물 생산 및 품질개선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중요도에 걸맞게 환류프로세스가 발전되어 왔다.
 - 1994년부터 시작된 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시스템은 초기에는 출하자별 출하개체의 등급판정성적을 등급판정 항목별로 기술하여 우편으로 통보하는 단순한 시스템에서 출발하였으나 2003년에는 우편 통보와 병행하여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결과통보 방식이 도입되었고 2004년부터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세부분석 항목이 추가되었다.
 - 2005년부터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IT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이메일 통보 시스템이 도입되어 등급판정 개체결과와 분석결과에 대한 통보가 확대되었으며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등급판정결과 및 경락가격 정보가 모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로 생산농가에게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 특히,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시행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축산물등급판정 관련정보 일체를 통합하여, 2006년부터 '등급정보 365+'라는 브랜드명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축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축산정보의 통합브랜드화 서비스로서 정보제공의 신속성과 뛰어난 정보집

근성 및 광범위한 정보제공 범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계 정보제공 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 잡히며 축산업계의 독보적 통합 정보 콘텐츠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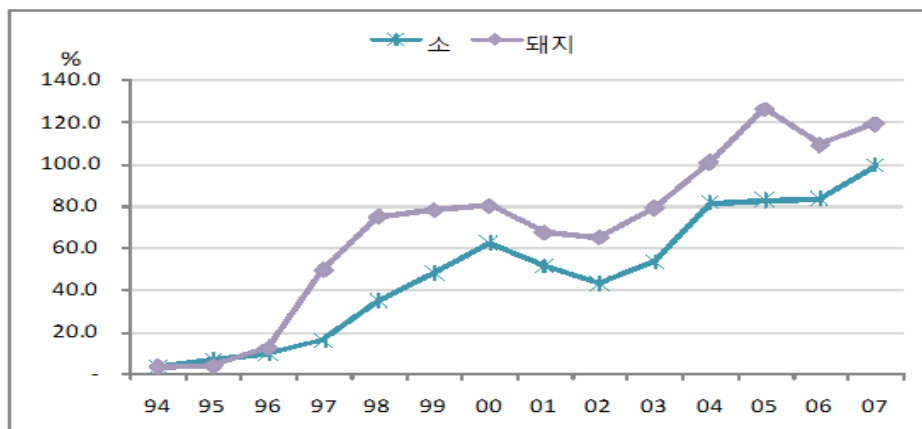
< 표 II-33 > 축산물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실적(우편 제공)

<단위 : 천두, 백만개, %>

| 구 분 | 소 | | | 돼지 | | | 계란 | | |
|------|-------|------|------|--------|--------|-------|------|------|-------|
| | 판정두수 | 통보두수 | 비율 | 판정두수 | 통보두수 | 비율 | 판정개수 | 통보개수 | 비율 |
| 1994 | 85 | 3 | 3.4 | 2,761 | 92 | 3.3 | - | - | - |
| 1995 | 230 | 16 | 6.8 | 4,999 | 192 | 3.8 | - | - | - |
| 1996 | 568 | 54 | 9.5 | 6,117 | 760 | 12.4 | - | - | - |
| 1997 | 1,028 | 166 | 16.1 | 7,546 | 3,729 | 49.4 | - | - | - |
| 1998 | 1,205 | 416 | 34.5 | 9,784 | 7,331 | 74.9 | - | - | - |
| 1999 | 1,058 | 508 | 48.1 | 10,557 | 8,231 | 78.0 | - | - | - |
| 2000 | 993 | 617 | 62.2 | 11,773 | 9,424 | 80.0 | - | - | - |
| 2001 | 727 | 373 | 51.3 | 13,817 | 9,315 | 67.4 | - | - | - |
| 2002 | 630 | 271 | 43.0 | 14,982 | 9,742 | 65.0 | - | - | - |
| 2003 | 583 | 311 | 53.4 | 15,133 | 11,945 | 78.9 | - | - | - |
| 2004 | 577 | 471 | 81.6 | 14,575 | 14,699 | 100.9 | - | - | - |
| 2005 | 612 | 505 | 82.5 | 13,433 | 16,946 | 126.2 | - | - | - |
| 2006 | 630 | 524 | 83.2 | 13,073 | 14,261 | 109.1 | 211 | 258 | 122.3 |
| 2007 | 682 | 675 | 99.0 | 13,612 | 16,213 | 119.1 | 285 | 369 | 129.7 |

주) 2004년부터의 돼지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및 2006년의 계란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비율의 100% 이상 실적은 개체통보 및 분석통보의 병행통보에 따른 실적에 기인함

< 그림 II-27 > 축산물등급판정두수 대비 축산물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 비율 추이



< 표 II-34 > IT 기반의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정보제공 실적

<단위 : 천건>

| 구 분 | 등급판정결과 인터넷 조회 서비스 | 등급판정결과 이메일 통보 서비스 | 등급판정결과 SMS 문자서비스 | 경매시황중계 서비스 |
|------|----------------------|----------------------|---------------------|---------------|
| 2004 | 36 | - | - | 286 |
| 2005 | 44 | - | - | 410 |
| 2006 | 358 | 93 | - | 1,640 |
| 2007 | 398 | 1,784 | 29 | 2,123 |
| 1998 | 636 | 2,975 | 235 | 3,659 |

○ 축산물등급판정결과 통보 서비스의 대농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상담 센터 (해피콜)의 운영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제도의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축산물 등급판정결과 통보 서비스 등 등급판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제도 시행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검사검증 유형 공공서비스 수행 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축산물등급판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순위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등급판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2005년부터 고객상담 센터인 해피콜을 기관내에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과 개선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대농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고객요구의 서비스반영에 힘써 왔다. 추후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등급판정제도의 발전과 아울러 국내 축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II-35 > 축산물등급판정소 고객상담센터의 고객상담 실적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11.현재 |
|---------|------|------|------|------------|
| 고객상담 실적 | 498건 | 878건 | 966건 | 1,064건 |

< 표 II-36 > 고객 요구사항 중 주요 개선실적

| 고객 요구 사항 | 주요 개선 실적 |
|--------------------|-------------------------------|
| □ 등급판정결과 안내 방법 개선 | - SMS도입, E메일통보 확대, 우편안내 절차 개선 |
| □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 | - 돼지 등급판정기준 홍보 확대 및 기준 개정 |
| □ 등급판정결과 분석 안내 요구 | - 등급판정결과 분석 내역 확대 |
| □ 사양관리 정보 요구 | - 등급정보지 사양정보 게재 및 생산 컨설팅 확대 |

바. 등급판정결과정보의 활용을 통한 생산농가 고품질축산물 생산 컨설팅 확대

- 축산물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등급판정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03년부터 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고급육생산 컨설팅 활동은 등급판정 제도 이용자에 대한 등급결과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등급판정제도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고급육 생산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생산농가 및 생산단체를 일차적 대상으로 한다.
 - 대한양돈협회 및 한우협회의 시·군지부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축산물 생산 작목반
 - 컨설팅 요청 생산단체 및 개별 농가
- 고급육생산 컨설팅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 내 컨설팅 지원센터 콘텐츠를 통해 컨설팅에 필요한 각종 등급판정결과 분석자료와 축산정책, 축산기술 및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사양관리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 컨설팅의 직접적 활동은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생산현장 방문과 교육, 생산자 업무회의 직접 참석을 통한 생산관리 협의, 생산자 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 협의, 생산자의 축산물등급판정 현장 사무실 방문 협의, 기타 등급판정 결과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연도별 컨설팅 대상자의 확대 추세는 다음과 같다.

< 표 II-37 > 연도별 컨설팅 대상자의 확대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작목반 | 10개반 | 17 | 20 | 96 | 100 |
| 생산농가 | 245농가 | 432 | 1,592 | 3,882 | 4,675 |

- '03년 대비 '07년까지 4개년간 컨설팅 작목반 수는 900% ,생산농가는 1,808% 확대되어 연평균 작목반 225%, 생산농가 452%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등급판정정보 활용을 통한 고급육생산 컨설팅 결과, 컨설팅 대상농가의 고급육 출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등급판정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농가와와의 입체적 연계가 국내 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생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07년 고급육생산 컨설팅 활동은 134명의 등급판정사가 소(3,095농가), 돼지(1,558), 계란(22)를 대상으로 생산현장 방문과 교육(204회), 생산자 업무회의 직접 참석을 통한 생산관리 협의(134), 생산자 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협의(104), 생산자의 축산물등급판정 현장 사무실 방문 협의(218), 기타 등급판정결과 분석정보의 제공(8,305) 등 총 8,965회를 실시하였으으며, 그 결과 소도체 1등급이상 출현율은 전년대비 6.9%p, 돼지 B등급이상출현율은 0.4%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결과는 동기간 동안의 전국 상위등급 개선율보다 소 1.4%p, 돼지 2.7%p 컨설팅을 실시한 농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38 > 전국대비 컨설팅농가 상위등급 출현율 개선효과

| 구 분 | 전국(한우) | | | 컨설팅대상농가 | | | 비고 (f-c) |
|-----------------|-------------|-------------|------------|-------------|-------------|------------|-------------|
| | 2006 (a) | 2007 (b) | b-a (c) | 2006 (d) | 2007 (e) | e-d (f) | |
| 소도체(1등급이상 출현율) | 44.5% | 51.0 | 5.5 | 71.8 | 78.7 | 6.9 | 1.4 |
| 돼지도체(B등급이상 출현율) | 66.1 | 63.8 | △2.3 | 69.6 | 70.0 | 0.4 | 2.7 |

사.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축산물브랜드화 촉진 성과와 과제

○ 축산물브랜드화사업의 개요와 문제점(2003년.농촌경제연구원)

- 국내산 축산물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수입산 축산물에 비하여 가격 또는 품질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축산물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이다.(김한곤, 1992) 이러한 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 브랜드사업에 대한 축산업계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 축산물 브랜드사업은 특정 주체가 생산한 제품이 다른 제품과 품질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업이다. 축산물 브랜드 업체의 수는 2003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의하면 700개로 조사되었었는데 2005년 그 수가 845개로 3개년간 약 21%P 증가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축산물브랜드 업체의 증가가 반드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대의 반증인 것은 아니다. 정부가 2000년부터 지역 축협을 중심으로 저리자금을 지원한 축산물 브랜드 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 노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축산물 브랜드가 제품의 차별화가 안 되고 난립함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움
 -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음
- 축산물브랜드라면 브랜드에 걸 맞는 혈통관리와 일관된 사료급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없이 '브랜드'만을 내세워 고가로만 판매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피해 확대와 더불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축산물브랜드 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 브랜드개념의 정립과 브랜드 제품의 개발(사양관리의 규격화를 통한 제품의 질적인 차별화)
 - 객관적인 브랜드 사업 참여 대상 선정 기준의 설정(일정기간 최소 출하두수, 혈통관리 여부, 권장 사료 및 사양관리 지침 준수 여부, 고급육 출현율 등)
 - 안정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계획의 수립
 - 정책적 지원 대상의 발굴과 지원내용의 구체화(브랜드 전문 컨설팅 업체 양성, 생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 브랜드제품의 신선도 유지·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 여부의 수시 감독
 - 홍보 방법의 개선과 지원

○ **축산물등급판정제도를 활용한 우수브랜드 육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규모가 작아 품질의 균일성 유지 및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한계를 노출하여 왔다. 이를 극복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이 2004년부터 실시되어왔다.
- 2008년 현재 4개 축산물 품목(한우, 육우, 돼지, 육계)에 대하여 브랜드 인증이 실시되고 있으며 브랜드 인증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의 주요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 II-39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배 점) | 한 우 | 육 우 | 돼 지 | 육 계 |
|------------------|---|--|--|---|
| 고품질 (20~25) | - 육질등급정도 (1등급이상 출현율) | - 육질등급정도 (1등급이상 출현율) | - A·B등급 출현율 - 육질등급 정도 (냉도체 1등급이상 출현율) - 냉도체 등급판정율 | - 1등급 출현율 - 신선도수준 (닭도체심부온도) - 닭고기 등급판정율 |
| 품질관리 (20~25) | - 혈통등록 - 사료통일 - 사양관리 (출하시기) | - 혈통등록 - 사료통일 - 사양관리(출하시기) | - 종돈통일 - 사료통일 - 사양관리 (비육후기사료, 출하시기) | - 종계통일 - 사료통일 - 출하사료 급여일수 - 사양관리 - 브랜드 회원농가 변동율 |
| 브랜드관리 (15~20) | - 사육기반 (전체) - 브랜드출하물량 - 브랜드명 소매판매 비율 | - 사육기반(거세우) - 브랜드출하물량 - 브랜드명 소매판매 비율 | - 사육기반(모든두 수) - 브랜드출하물량 - 브랜드명 소매판매 비율 | - 사육기반 (육계상시 사육수수) - 브랜드출하물량 - 브랜드명 소매판매 |
| 위생안전성 (25~35) | - 농장단계 (동물약품안전사용 방역, 사육환경) - 출하단계, 도축단계, 부루세라검사 (검사율, 감염율), - 가공단계, 유통단계 (운반) | - 농장단계 (동물약품안전사 용·방역, 사육환 경) - 출하단계, 도축단 계, 부루세라검사 (검사율, 감염율), - 가공단계, 유통단계 (운반) | - 농장단계 (동물약품안전사용 ·방역, 사육환경) - 출하단계, 도축단계 - 가공단계, 유통단계 (운반) | - 농장단계 (방역, 동물약품안전 사용, 사육환경, 출하 단계) - 도축단계(미생물 오염도, HACCP 운영수준) - 가공단계, 유통단계 (포장, 운반) |
| 기타 (5)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 HACCP지정 농가 참여 - 브랜드관리 규정 보유 - 홍보실적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 HACCP지정 농가 참여 - 브랜드관리 규정 보유 - 홍보실적 | - HACCP지정 농가 참여 - 해양배출 농가 비율 - 축산분뇨 자원화 - 브랜드관리 규정 보유 - 홍보실적 | - 닭고기 등급판정 작업장 지정 - 친환경인증 농가 참여 - 브랜드관리 규정 보유 |

-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이행과 그 결과 고품질 축산물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축산물브랜드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핵심요소중 하나이며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의 고급화와 규격화 진척은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와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증대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의 브랜드화 촉진 기반으로 작용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 연도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현황과 축산물브랜드 개수는 다음과 같다.

< 표 II-40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현황 및 인증브랜드 개수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
| 한 우 | 8개 | 13 | 15 | 21 |
| 육 우 | 10개 | 12 | 2 | 1 |
| 돼 지 | - | - | 14 | 20 |
| 육 계 | - | - | 5 | 6 |
| 계 | 18개 | 25 | 36 | 48 |
| 축산물브랜드 개수 | 788개 | 845 | 774 | 700 |
| 우수 축산물 브랜드 비율 | 2.3% | 3.0% | 4.7% | 6.9% |

○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브랜드 진척을 위한 향후 과제

- 축산물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우수한 균질의 상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안정적인 판매망이 확보되고 거래교섭력이 제고 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소비촉진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2003년, 농촌경제연구원)
- 이를 위하여 광역화 및 규모화 된 우수 브랜드의 집중 육성과 브랜드 축산물의 시장교섭력 강화 정책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농식품부의 2007년 '축산물브랜드 발전대책'에 의하면 현재 축산물브랜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브랜드 선정, 평가기준 재정립·강화 및 퇴출제도 도입
 - 브랜드경영체 간의 사업 연합·통합 등 규모화·광역화 유도
 - 품질 고급화·균일성 제고를 위한 가축개량 등 대책 강화
 - 친환경 축산물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의 정책 연계 강화
 - 산지와 연계한 직판장 설치 등 유통비용 절감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
 - 인증제도 개선 등 브랜드 차별화 및 홍보 강화

Ⅲ. 축산물 등급표시 개선안

1. 주요국의 축산물 등급표시 현황

○ 주요국의 축산물 등급표시에 관한 제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등급기준

○ 주요국은 '축산물 등급기준'을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육질 등급표시 종류는 (소) 5~13개, (돼지) 4~7개, (닭) 2~3개 등이고 등급표시 방법은 숫자, 문자 (일어·영어) 및 표현어(Prime, Choice 등)로 표시하고 있다.

< 표 Ⅲ-1 > 주요국의 등급기준 현황

| 구분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계란 |
|-----|---|--|--|--|
| 미국 | (육질)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 Canner (육량) 1, 2, 3, 4, 5 | (종합) U.S. No.1, 2, 3, 4, Utility | (육질) A, B, C * 증량표시: 100g 단위로 포장지에 표시 | (품질) AA, A, B (규격) Jumbo, Extra large, Large, Medium, Small. Peewee |
| 캐나다 | (육질) Prime, AAA, AA, A, B1, B2, B3, B4, D1, D2, D3, D4, E (육량) 1, 2, 3 * 단, Prime 및 A등급에 한함 | (종합) 1, 2, 3, 4, 5, 6, 7 | A, Utility, C | A, B, C, Nest Run |
| EU | (외관) S, E, U, R, O, P (지방) 1, 2, 3, 4, 5 | (종합) S, E, U, R, O, P | A, B | (품질) A, B, C (규격) 1, 2, 3, 4, 5, 6, 7 |
| 일본 | (육질) 5, 4, 3, 2, 1 (육량) A, B, C | (종합) 극상, 상, 중, 병, 등외 | A, B | (품질) 특급, 1급, 2급, 등외 (규격) LL, L, M, MS, S, SS |
| 한국 | (육질) 1 ⁺⁺ , 1 ⁺ , 1, 2, 3 (육량) A, B, C | (육질) 1 ⁺ , 1, 2, 3 (규격) A, B, C, D | (육질) 1 ⁺ , 1, 2 (규격) 특대, 대, 중, 중소, 소 | (품질) 1 ⁺ , 1, 2, 3 (규격) 왕, 특, 대, 중, 소 |

※ 쇠고기·계란 등급표시는 주요국 모두 복잡하나 돼지·닭고기는 단순한 경향

나. 등급표시 현황

- 등급표시는 도·소매단계 거래유형 및 소비자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전달매체 등에 따라 등급표시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지육·박스육, 확인서, 식육판매표지판, 소포장 용지 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 표 III-2 > 주요국의 쇠고기 거래유형 등에 따른 등급표시 현황

| | 유통단계 | | 등급표시 방법 |
|------------------|------|------|---------|
| | 도매단계 | 소매단계 | |
| ① 지육(All Nation) | | | 육질, 육량 |
| ② 박스육(US·CA) | | | 육질 |
| ③ 확인서(US·Kor) | | | 육질, 육량 |
| ④ 판매표지판(Kor) | | | 육질 |
| ⑤ 소포장 라벨지(kor) | | | 육질 |

< 표 III-3 > 현행 우리나라의 쇠고기 지육의 등급표시 방법

| 구 분 | | 육 질 등급 | | | | | |
|------------------|-----|--------------------|-------------------|-----|-----|-----|----|
| | | 1 ⁺⁺ 등급 | 1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 ⁺⁺ A | 1 ⁺ A | 1A | 2A | 3A | |
| | B등급 | 1 ⁺⁺ B | 1 ⁺ B | 1B | 2B | 3B | |
| | C등급 | 1 ⁺⁺ C | 1 ⁺ C | 1C | 2C | 3C | |
| | 등외 | D | | | | | |

※ 육질등급(5개), 육량등급(3개) 및 등외등급 등 총 16개로 표시

- 소매단계에서 등급표시는 주요국 대부분이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5개 부위(등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 *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제2007-82호

< 표 III-4 > 주요국의 축산물 소매단계 등급표시 현황

○ 일부 의무표시, △ 자율표시

| 구 분 | 미국 | 캐나다 | 일본 | 한국 |
|------|----|-----|----|----|
| 도매단계 | ○ | ○ | ○ | ○ |
| 소매단계 | △ | △ | △ | ○ |

※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 대상

2. 우리나라 농·수산물 등급표시 현황

가. 농산물 품질표시

우리나라의 농산물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거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0호 '농산물 표준규격'에 의함
- 대 상 : 92개 품목 (과일류16, 곡류16, 채소류24, 화훼류23 등)
- 등급종류 : 특, 상, 보통(3개로 구분)
- 판정방법
 - 판정요소 : 무게, 선택, 당도, 신선도 등 품목의 특징요소로 판정
 - 판정기관 : 출하자가 품질규격에 따라 자체 판정하여 출하
 - 표시방법 :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하여 속포장 및 겉포장용기에 표기

나. 수산물 품질표시

우리나라의 수산물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거규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8-2호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에 의함
- 대 상 : 56개 품목 (활어·패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등)
- 등급종류 : 특등, 1등, 2등, 3등, 등외(5개로 구분)
- 판정방법
 - 판정요소 : 외관, 선택, 선도, 선별 등 품목의 특징요소로 판정하되, 수출·수입 대상국에서 요구할 경우, 요구기준에 따라 판정
 - 판정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 표시방법 : 제품명, 중량(또는 내용량), 업소명(제조업소명 또는 가공업소명), 원산지명 등을 표시검사결과와 병행하여 포장용기에 날인

※ 농산물과 수산물은 품목별 특성의 차이로 등급종류가 다름

3. 우리나라 축산물 등급표시 현황

가. 축산물 등급표시의 법적 근거

축산물 등급표시는 축산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축산법 관련 규정

- 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등급의 표시), 제45조(등급 판정확인서 발급), 농식품부 고시 제2005-14호(축산물거래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2항 별표13 및 농식품부 고시 제2007-82호(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 소매단계 등급표시 관련 주요내용 >

- 근거 : 농식품부 고시 제2007-82호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 주요내용

-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D등급)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E등급)로 표시한다.

※ 소매단계에서 등급 의무표시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로 정함

나. 등급표시 제·개정 경위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제도의 변천과정은 '92년 제정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가) 등급판정기준 제정('92.6)

○ 제정방향

- '89년 UR협상 타결, 향후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기의 등급에 따라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육질, 육량 등급을 표시
- 미국·일본·EU 등 주요국과 같이 '육량과 육질' 등급으로 구분 병행표기
- 등급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등급표시의 수를 최소화 함
- 일본 육질등급표시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1'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높아 낮은 숫자를 높은 등급으로 정함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2, 3등급, (육량) A, B, C등급, (등외) D등급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A1, A2, A3 등 10개 등급

* 사양지표로서의 육량등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육량·육질순으로 등급표시 (예, A1)

○ 등급표시 적용 : 지육, 확인서 및 등급판정결과 통보서 등에 육량·육질 등급으로 표시

※ 제정 당시의 등급별 출현율('93) : 1등급(10.7%), 2등급(49.2), 3등급(34.5), D등급(5.6)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 정착 및 고급육 생산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와 우수축 출하유도를 통해 국내산 육류의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수축 출하 포상금을 '93년 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중단하였다. 그 후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재개하였다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 2009년부터 다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나)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제정('96.1)

○ 제정방향

- 도체상태에서 판정받은 등급의 결과가 소매단계에 까지 연계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육질등급을 표시하되,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과거부터 쇠고기의 품질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인 특상·상·중등급으로 표시(의무)

○ 관련규정 : '식육의 부위·등급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방법'(농림부 고시 제 1995-114호, '96.1월)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2, 3등급, (육량) A, B, C등급, (등외) D등급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특상, 상, 중, 등외 등 4개 등급

* 도체등급 결과인 1, 2, 3등급을 각각 특상, 상, 중등급으로 표시토록 함

○ 등급표시 적용 : 등심과 채끝 등 2개 부위에 육질등급만 의무표시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등급표시

※ '96.9월 개정에 따라 소매단계에서 쇠고기의 등급표시를 도체등급판정 결과인 1, 2, 3, 등외등급으로 표시하되, 다만 식육판매업소가 희망할 경우 특상, 상, 중, 등외등급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등급기준 개정('97.12)

○ 개정배경

- 한우고기의 품질향상으로 1등급의 출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자단체로부터 1등급의 세분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지표 개정 요구

○ 등급기준 개정 : 육질등급 1⁺등급 신설

(당초) 1, 2, 3등급 → (조정) 1⁺, 1, 2, 3등급

※ 육량등급은 당초 A, B, C등급으로 유지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1, 2, 3등급, (육량) A, B, C등급, (등외) D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A1⁺, A1, A2, A3, B1... 등 13개 등급

○ 등급표시 적용(이전과 변동없음)

- 지육, 확인서 및 등급판정결과 통보서에 육량·육질 등급순으로 표시

※ 공청회 당시 1⁺등급을 1등급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품질이 좋은 쇠고기의 등급을 낮추는 것은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관계로 볼 때 1등급 이상은 고급육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등급 보다 품질이 높은 의미로 '플러스(+)' 개념 도입하였다.

※ 1등급 출현율 : ('92) 10.9% → ('97) 18.4%

라)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98.7)

○ 개정배경

• 등급기준 개정('97.12)에 따른 후속조치 : **특상(1⁺)등급 신설**

○ 관련규정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방법'(농림부 고시 제1998-42호, '98.7월)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1, 2, 3등급, (육량) A, B, C등급, (등외) D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1⁺, 1, 2, 3, 등외등급 등 5개 등급

※ 도체 등급기준에 따라 소매단계도 동일하게 1⁺, 1, 2, 3, 등외 등급으로 표시하게 하되, 특상(1⁺), 특상(1), 상(2), 중(3) 등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등급표시 적용(이전과 변동없음)

- 등심과 채끝 등 2개 부위에 육질등급만 의무 표시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등급표시

마) 등급기준 및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04.11)

□□ 등급기준 개정

○ 개정배경

• 1⁺등급 신설이후 품질 1⁺등급이 1등급 수준으로 출현됨에 따라 새로운 품질지표 필요성이 제기되어 1⁺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의 신설 요구**

• 식육의 거래가 육량 보다는 육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고려되어 등급표시를 육량·육질에서 **육질·육량으로 변경 요구**

○ 등급기준 개정

- 육질등급 1⁺⁺등급 신설

(당초) 1⁺, 1, 2, 3등급 → (조정) 1⁺⁺, 1⁺, 1, 2, 3등급

※ 육량등급은 당초 A, B, C등급으로 유지

- 육량·육질 표시순서를 육질·육량으로 변경

(예) 당초 A1⁺ → 조정 1⁺A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1⁺, 1, 2, 3 (육량) A, B, C (등외) D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1⁺⁺A, 1⁺A, 1A, 2A, 3A, 1⁺⁺B... 등 16개

○ 등급표시 적용

- 지육, 확인서 및 등급판정결과 통보서에 육질·육량 등급순으로 표시

※ '04.4월 쇠고기 등급기준 공청회 결과

1⁺등급(또는 1⁺⁺등급)을 1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2, 3, 4등급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품질이 좋은 쇠고기의 등급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초이스(choice)등급과의 경쟁관계로 볼 때 1등급이상은 고급육이라는 인식 정착과 한우산 업발전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표시방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개정 당시의 등급별 출현율('04) : 1⁺등급(17.6%), 1등급(18.3), 2등급(27.4), 3등급(35.8), D등급(0.9)

□□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

○ 개정배경

• 특상·상·중등급 등과 병행하던 등급표시방법을 도체 등급의 표시와 달라 혼란이 온다는 지적과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소매단계도 도체에 표시된 등급과 일치하도록 변경 요구

• 등급기준 개정('04.11)에 따른 후속조치 : 육질등급 1⁺⁺등급 신설

• 2개 부위에 대한 등급표시 의무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어 등급표시 의무부위 확대를 요구

○ 관련 규정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농림부 고시 제2004-67호, '04.11월)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1⁺, 1, 2, 3 (육량) A, B, C (등외) D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1⁺⁺, 1⁺, 1, 2, 3, 등외 등 6개 등급

※ 특상·상·중등급 등 한글로도 등급표시했던 방법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과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도체 등급기준상의 육질등급으로만 표기토록 하였다. 이에 특상·상·중등급의 표시방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시행토록 하였다.

○ 등급표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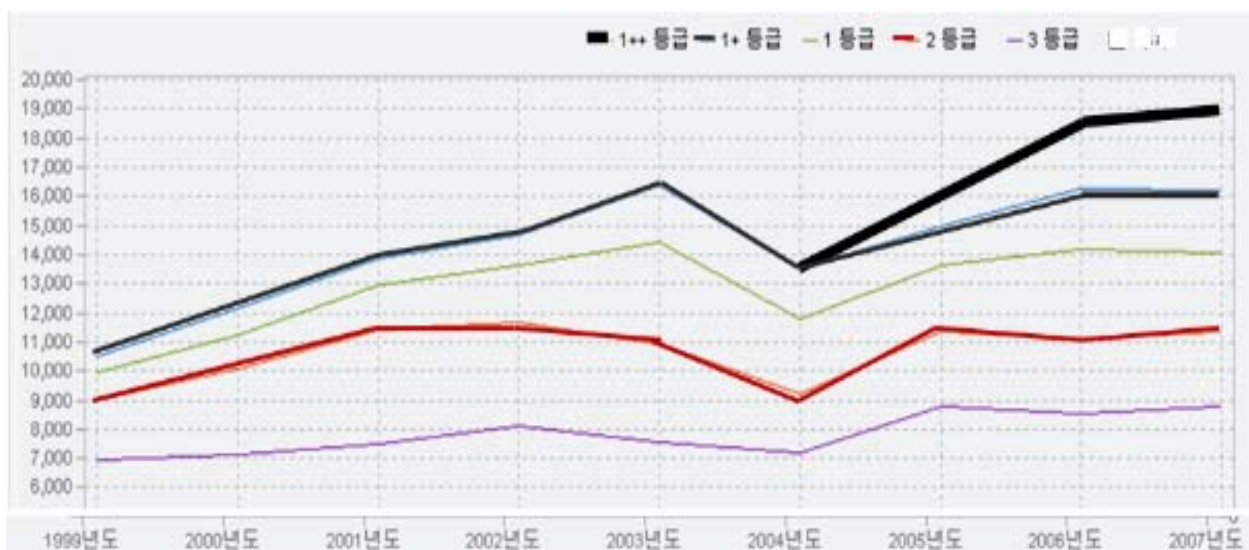
- 등급표시 의무부위를 2개에서 5개로 확대

(당초) 등심, 채끝 → (조정) 등심, 채끝, 안심, 양지, 갈비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등급표시

※ 현재('08.10월) 등급별 출현율 : 1⁺⁺등급(6.5%), 1⁺등급(15.7%), 1등급(22.6), 2등급(23.6), 3등급(24.5), D등급(7.1)

< 그림 III-1 > 도매시장의 한우 연도별 등급별 경락가격 형성 추이('99~'07)



※ 기준 : 농협서울공판장 한우

< 표 III-5 > 한우 육질등급별 출현경향 및 도매시장가격 차이

(단위 : %, 원, 천원)

| 육질등급 | 연 도 | | | | | 경락가격 | |
|-----------------|------|------|------|------|------|---------|-------|
| | '93 | '98 | '05 | '07 | '08 | 평균 | 가격차이 |
| 1 ⁺⁺ | % | | 9.8 | 7.5 | 7.3 | 17,125원 | |
| 1 ⁺ | | 3.4 | 15.2 | 18.4 | 19.2 | 15,523 | 613천원 |
| 1 | 10.7 | 11.9 | 22.9 | 25.0 | 27.1 | 14,114 | 1,153 |
| (1등급이상) | 10.7 | 15.3 | 47.9 | 50.9 | 53.6 | | |
| 2 | 49.2 | 28.2 | 24.1 | 24.5 | 25.5 | 12,298 | 1,848 |
| 3 | 34.5 | 54.0 | 27.3 | 23.5 | 20.1 | 9,676 | 2,852 |
| 등외 | 5.6 | 2.5 | 0.7 | 1.1 | 0.8 | 5,496 | 4,452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주) 1. 한우 기준 (2008년은 10월까지 누계 기준)
 2. 경락가격은 '08.1~10월까지 농협서울공판장 평균가
 3. 가격차이는 1⁺⁺등급 기준, 생체 650kg(도체율 58.9% 적용)

* '97년 1⁺등급 신설, '04년 1⁺⁺등급 신설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한 결과 1등급 이상이 '93년 10.7% 대비 5배 급증

* 1⁺⁺등급과 3등급간 경락평균가격이 2배 차이

- 더구나 생체 650kg 출하시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2,852천원

2) 돼지고기

가) 등급판정기준 제정('92.6)

○ 제정방향

- '89년 UR협상 타결, 향후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기의 등급에 따라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육질과 육량을 종합하여 표시
- 미국·일본·EU 등 주요국과 같이 '육량과 육질' 등급을 종합한 단일등급으로 표기

- 등급표시 기준 : A, B, C, D, E등급
 - ※ 주요국과 같이 육질과 육량을 종합한 단일 등급으로 제정 및 등급표시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A, B, C, D, E 등 5개 등급
- 등급표시 적용 : 지육, 확인서 및 등급판정결과 통보서에 단일 등급으로 표시
 - ※ 제정당시 등급별 출현율('93) : A등급(5.6%), B(30.8), C(39.9), D(18.6), E(5.1)

나)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제정('96.1)

- 제정방향
 - 도체상태에서 판정받은 등급의 결과가 소매단계에 까지 연계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을 표시하되,
 - 육질과 육량을 종합한 단일등급으로 등급별 품질차가 크지 않아 A, B, C, D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표시(의무)
- 관련규정 : '식육의 부위·등급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방법'(농림부 고시 제 1995-114호, '96.1월)
- 등급표시 기준 : A, B, C, D, E(등외)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기준등급, 등외 등 2개 등급
 - * 도체등급 결과인 A, B, C, D등급을 소매단계에서는 '기준등급'으로 표시
- 등급표시 적용 : 목심과 삼겹살 등 2개 부위 의무 등급표시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등급표시

※ 소매단계 등급표시를 위하여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의 구별 표시방법' 제정('96.1) 당시에는 목심·삼겹살 부위에 대하여 의무표시토록 하였으나, '96.9월 1차 개정시 부위별 등급표시 의무를 폐지하였다.

다)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98.7)

- 개정배경
 - '기준등급'으로 표시하던 등급표시방법이 도체 등급의 표시와 달라 혼란이 온다는 지적에 따라 소매단계도 도체에 표시된 등급과 일치하도록 변경 요구

- 관련규정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방법'(농림부 고시 제1998-42호, '98.7월)
- 등급표시 기준 : A, B, C, D, E(등외)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A, B, C, D, E 등 5개 등급
 - * 도체등급 결과인 A, B, C, D등급을 소매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등급표시(자율)
- 등급표시 적용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등급 표시(자율)

라) 등급별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조정을 위한 등급기준 개정이 6차에 걸쳐 있었음

※ A등급의 범위(탕박기준) 개정

(제정 당시) 도체중(62~89kg), 등지방(9~17mm)

('08년 현재) 도체중(80~94kg), 등지방(17~27mm)

마)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04.11)

- 개정배경
 - 대일수출 돼지고기의 품질에 문제(PSE발생 등)가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02년에 냉도체 육질등급(1⁺,1,2,3) 제정
 - * 냉도체 육질등급 판정은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는 자율사업
 - 이에 따른 참여업체들이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 요구
- 관련 규정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농림부 고시 제2004-67호, '04.11월)
- 등급표시 기준 : A, B, C, D, E(등외) 등 5개 등급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A, B, C, D, E(등외) 등 5개 등급
 - ※ 소매단계는 A, B, C, D, E 등 단일등급으로 표시하고, 다만 업체가 희망하여 추가로 냉도체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A(1⁺), A(1), A(2), A(3) 등과 같이 육질등급과 병기하여 17개로 표시가능토록 하였다. (자율)
- 등급표시 적용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등급 표시(자율)

바) 등급기준 및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07.7)

○ 개정배경

- 대일수출 중단과 장기간 돼지가격 상승에 따라 조기비육출하의 성행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수입 돼지고기와의 품질차별화가 어려움
-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등급표시가 소매단계까지 연계시켜 육질중심의 소비 문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육질등급제 도입

□□ 등급기준 개정

○ 등급기준 개정 : 육질등급 신설(1⁺, 1, 2, 3)

(당초) A, B, C, D, 등외(E) → (조정) (육질) 1⁺, 1, 2, 3
(규격) A, B, C, D, 등외(E)

※ 육질등급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은 규격등급으로 존치

- 등급표시 기준 : (육질) 1⁺, 1, 2, 3 (규격) A, B, C, D (등외) E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1⁺A, 1A, 2A, 3A, 1⁺B 등 17개
- 등급표시 적용
 - 지육, 확인서 및 등급판정결과 통보서에 육질·규격 등급순으로 표시

< 표 III-6 > 돼지고기 등급별 출현율 및 경락가격

| 구 분 | | 육질등급 | | | | | | 경락가격 (평균) |
|------------------|---|----------------|-------|-------|-------|-------|-------|--------------|
| | | 1 ⁺ | 1 | 2 | 3 | 등외 | 계 | |
| 규 격 등 급 | A | 0.8% | 33.2% | 2.8% | 0.1% | - | 37.0% | 4,105원 |
| | B | 0.4 | 24.4 | 5.0 | 0.3 | - | 30.1 | 3,952 |
| | C | 0.1 | 4.9 | 11.1 | 0.3 | - | 16.4 | 3,725 |
| | D | 0.0 | 3.0 | 8.3 | 1.1 | - | 12.4 | 3,325 |
| | E | - | - | - | - | 4.0 | 4.0 | 2,195 |
| | 계 | 1.4% | 65.5 | 27.3 | 1.8 | | 100 | 3,535 |
| 경락가격(평균) | | 4,244원 | 4,029 | 3,543 | 2,777 | 2,195 | 3,535 | |

주) 기준 : '08.1~12월, 전국 도매시장 경락가격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66.9%, B등급 이상은 67.1%

* 1⁺등급 경락가격은 4,244원/kg, A등급은 4,10513원/kg

□□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개정

- 관련 규정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농림부 고시 제2007-82호, ‘07.12월)
- 등급표시 방법 개정 : 육질등급 신설(1⁺, 1, 2, 3)
 - ※ 새롭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된 지표인 육질등급을 소매단계에 표시토록 함
- 등급표시 방법 및 종류 : 1⁺, 1, 2, 3, E(등외) 등 5개 등급
- 등급표시 적용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등급별 구분 판매 및 식육표지판에 육질등급만 표시(자율)

< 표 III-7 > 돼지고기 육질등급별 출현율 및 가격 비교

| 구분 | 출현율 | 경락가격 | | 1두당 가격차이 |
|----------------|------|--------|-------------------------|----------|
| | | 평균 | 차이(1 ⁺ 등급기준) | |
| 1 ⁺ | 1.6% | 3,865원 | | |
| 1 | 69.1 | 3,655 | 210원 | 17천원 |
| 2 | 23.8 | 3,308 | 557 | 46 |
| 3 | 1.6 | 2,821 | 1,044 | 86 |
| 등외 | 3.8 | 2,762 | 1,103 | 91 |
| 계(평균) | 100 | 3,398 | | |

주) 1. 경락가격은 '08.10월 전국 도매시장 경락가격
 2. 1두당 가격차이는 1⁺등급 기준, 생체 110kg(도체율 74.9% 적용)

* 2008년 10월 기준 1⁺등급 출현율은 1.6%, 1등급은 69.1%

* 1⁺등급과 3등급간의 가격차이는 1,044원으로 나타남

※ 닭고기·계란의 등급표시 사항은 소·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인 점과는 달리 희망하는 업체에만 등급판정하는 자율사업으로 시장에서의 판정점유율이 4%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현 축산물 등급표시 현황

1) 등급기준

○ 축산물 등급기준은 품목별로 육질·육량·등외 및 품질·규격 등급으로 구분

| 구분 | 등급기준 | | | 표시방법 계 |
|------|--|-----------------|----|--------|
| | 육질(품질) | 육량(규격) | 등외 | |
| 쇠고기 | 1 ⁺⁺ , 1 ⁺ , 1, 2, 3 | A, B, C | D | 16개 |
| 돼지고기 | 1 ⁺ , 1, 2, 3 | A, B, C, D | E | 17 |
| 닭고기 | 1 ⁺ , 1, 2 | 특대, 대, 중, 중소, 소 | | 15 |
| 계란 | 1 ⁺ , 1, 2, 3 | 왕, 특, 대, 중, 소 | | 20 |
| 계 | 3~5개 | 3~5개 | 1개 | 15~20개 |

2) 등급표시

○ 도축·가공단계(도체 및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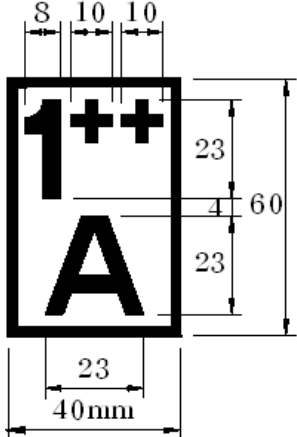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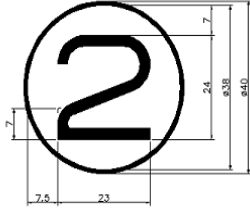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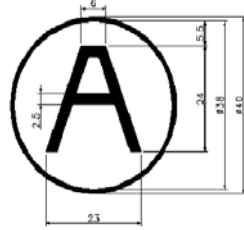
- 소 : 1⁺⁺A, 1⁺A, 1A, 2A, 3A, 1⁺⁺B... 등 16개
- 돼지 : 1⁺A, 1A, 2A, 3A, 1⁺B... 등 17개
- 닭 : 1⁺특대, 1특대, 2특대, 1⁺대... 등 15개
- 계란 : 1⁺특, 1특, 2특, 3특, 1⁺대... 등 20개

○ 소매단계 등급표시

- 소 : 1⁺⁺, 1⁺, 1, 2, 3, D(등외) 등 6개 (등심, 채끝 등 5개 부위 의무 표시)
- 돼지 : 1⁺, 1, 2, 3, E(등외) 등 5개 (자율 표시)
- 닭 : 1⁺특대, 1특대, 2특대, 1⁺대... 등 15개 (등급판정 받은 경우 의무 표시)
- 계란 : 1⁺특, 1특, 2특, 3특, 1⁺대... 등 20개 (등급판정 받은 경우 의무 표시)

< 표 III-8 > 등급표시 예(例)

□ 소·돼지 도체(지육)

| 소 도체(육질·육량) | 돼지 도체 | |
|--|---|---|
|  |  <p>(육질)</p> |  <p>(규격)</p> |

□ 닭·계란 겉(속)포장, 계란 난각

| 닭·계란 겉포장 | 닭·계란 속포장 | 계란 난각 | | | | | | | | | | | | | | | | | | | | |
|--|--|-------|------|---|-----|---------|--|--------------|--|---|-----|--|----|-----------|-----|--------------|----|---------------|----|--------------|----------|------------|
|  <p>등급판정일 :</p> | <table border="1" data-bbox="627 1285 954 1630"> <thead> <tr> <th>품질등급</th> <th>중량규격</th> </tr> </thead> <tbody> <tr> <td></td> <td>특 란</td> </tr> <tr> <td colspan="2">등급판정일 :</td> </tr> <tr> <td colspan="2">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td> </tr> </tbody> </table> | 품질등급 | 중량규격 |  | 특 란 | 등급판정일 : |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 | |  <table border="1" data-bbox="1169 1350 1398 1570"> <thead> <tr> <th colspan="2">범 례</th> </tr> <tr> <th>등급</th> <th>등급판정 확인표시</th> </tr> </thead> <tbody> <tr> <td>ABC</td> <td>집하장명(영문 3자리)</td> </tr> <tr> <td>01</td> <td>생산자번호(숫자 2자리)</td> </tr> <tr> <td>02</td> <td>계급번호(숫자 2자리)</td> </tr> <tr> <td>03.12.27</td> <td>등급판정일(년월일)</td> </tr> </tbody> </table> | 범 례 | | 등급 | 등급판정 확인표시 | ABC | 집하장명(영문 3자리) | 01 | 생산자번호(숫자 2자리) | 02 | 계급번호(숫자 2자리) | 03.12.27 | 등급판정일(년월일) |
| 품질등급 | 중량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특 란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판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 | | | | | | | | | | | | | | | | | | | | | | |
| 범 례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 | 등급판정 확인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ABC | 집하장명(영문 3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01 | 생산자번호(숫자 2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02 | 계급번호(숫자 2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03.12.27 | 등급판정일(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닭·계란은 등급판정 받은 경우에만 겉·속포장에 위와 같이 표시

- 특히, 계란 난각에 '등급, 생산자, 판정일자 등'을 표기하여 품질수준 뿐만아니라 이력추적 관리까지 가능

□ 등급판정 확인서

| 확인서(소) | | | | 확인서(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 제 43호 서식]</p> <p>발급번호 : 0509-16856</p> <p>축산물 (소) 등급판정 확인서</p> <p>『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07월 0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충청지역본부 성 명 : 유승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td> <td>성 명</td> <td>차상협</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2">301-85-09099</td> </tr> <tr> <td></td> <td>업소명</td> <td>한국농장중부공장</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주 소</td> <td>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제리 421-3</td> <td>043-211-7721</td> <td colspan="2"></td> </tr> <tr> <td>도축장</td> <td>업체명</td> <td>한국농업(주)중부공장</td> <td>등급판정일자</td> <td colspan="2">2008년 07월 01일</td> </tr> <tr> <td>소재지</td> <td>소재지</td> <td>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제리 421-3</td> <td>043-211-7356</td> <td colspan="2"></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도체번호</th> <th>귀표번호</th> <th>종중</th> <th>성별</th> <th>중량</th> <th>등급</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607</td> <td>000195694930</td> <td>한우</td> <td>거세</td> <td>372</td> <td>1++</td> <td>A</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계 : 壹 두</p> <p style="text-align: right;">발급일자 : 2008년 07월 22일</p> <p style="font-size: small;">* 본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cer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15mm * 세로 297mm 일반용지 80 g/m² (세탁용 또는 친환경표시제용)</p> | | | | 신청인 | 성 명 | 차상협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01-85-09099 | | | 업소명 | 한국농장중부공장 | | | |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제리 421-3 | 043-211-7721 | | | 도축장 | 업체명 | 한국농업(주)중부공장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01일 | | 소재지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제리 421-3 | 043-211-7356 | | | 도체번호 | 귀표번호 | 종중 | 성별 | 중량 | 등급 | 등급 | 607 | 000195694930 | 한우 | 거세 | 372 | 1++ | A | <p>[별지 제 43호 서식]</p> <p>발급번호 : 0509-17911</p> <p>축산물 (돼지) 등급판정 확인서</p> <p>『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07월 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충청지역본부 성 명 : 유승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td> <td>성 명</td> <td>차상협</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2">301-85-09099</td> </tr> <tr> <td></td> <td>업소명</td> <td>한국농장중부공장</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주 소</td> <td>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제리 421-3</td> <td>043-211-7721</td> <td colspan="2"></td> </tr> <tr> <td>도축장</td> <td>업체명</td> <td>한국농업(주)중부공장</td> <td>등급판정일자</td> <td colspan="2">2008년 07월 14일</td> </tr> <tr> <td>소재지</td> <td>소재지</td> <td>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제리 421-3</td> <td>043-211-7356</td> <td colspan="2"></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도체번호</th> <th>부수</th> <th>등급</th> <th>도체번호</th> <th>부수</th> <th>등급</th> <th>도체번호</th> <th>부수</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3</td> <td>1</td> <td>A</td> <td>2</td> <td>1</td> <td>B</td> <td>1</td> <td>1</td> <td>C</td> </tr> <tr> <td>1</td> <td>1</td> <td>B</td> <td>2</td> <td>1</td> <td>C</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td> <td>1</td> <td>C</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1+등급: 0</td> <td>1등급: 5</td> <td>2등급: 0</td> <td>3등급: 0</td> <td>4등급: 0</td> <td>5등급: 0</td> <td>6등급: 0</td> <td>7등급: 0</td> <td>8등급: 0</td> </tr> <tr> <td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 폐기고기 축질등급은 1+, 1, 2, 3등급(4단계)으로 구분됩니다.</td> </tr> <tr> <td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전체 : 5 두 (1+등급: 0 1등급: 5 2등급: 0 3등급: 0 4등급: 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발급일자 : 2008년 07월 23일</p> <p style="font-size: small;">* 본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cer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15mm * 세로 297mm 일반용지 80 g/m² (세탁용 또는 친환경표시제용)</p> | | | | 신청인 | 성 명 | 차상협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01-85-09099 | | | 업소명 | 한국농장중부공장 | | | |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제리 421-3 | 043-211-7721 | | | 도축장 | 업체명 | 한국농업(주)중부공장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14일 | | 소재지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제리 421-3 | 043-211-7356 | | | 도체번호 | 부수 | 등급 | 도체번호 | 부수 | 등급 | 도체번호 | 부수 | 등급 | 3 | 1 | A | 2 | 1 | B | 1 | 1 | C | 1 | 1 | B | 2 | 1 | C | 0 | 0 | 0 | 1 | 1 | C | 0 | 0 | 0 | 0 | 0 | 0 | 1+등급: 0 | 1등급: 5 | 2등급: 0 | 3등급: 0 | 4등급: 0 | 5등급: 0 | 6등급: 0 | 7등급: 0 | 8등급: 0 | * 폐기고기 축질등급은 1+, 1, 2, 3등급(4단계)으로 구분됩니다. | | | | | | | | | 전체 : 5 두 (1+등급: 0 1등급: 5 2등급: 0 3등급: 0 4등급: 0) |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차상협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01-85-090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한국농장중부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제리 421-3 | 043-211-77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축장 | 업체명 | 한국농업(주)중부공장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0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제리 421-3 | 043-211-73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체번호 | 귀표번호 | 종중 | 성별 | 중량 | 등급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7 | 000195694930 | 한우 | 거세 | 372 | 1++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차상협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01-85-090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한국농장중부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제리 421-3 | 043-211-77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축장 | 업체명 | 한국농업(주)중부공장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제리 421-3 | 043-211-73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체번호 | 부수 | 등급 | 도체번호 | 부수 | 등급 | 도체번호 | 부수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 | A | 2 | 1 | B | 1 | 1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B | 2 | 1 | C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C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등급: 0 | 1등급: 5 | 2등급: 0 | 3등급: 0 | 4등급: 0 | 5등급: 0 | 6등급: 0 | 7등급: 0 | 8등급: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고기 축질등급은 1+, 1, 2, 3등급(4단계)으로 구분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5 두 (1+등급: 0 1등급: 5 2등급: 0 3등급: 0 4등급: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닭) | | 확인서(닭 부분육) | | 확인서(계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 제 43호 서식]</p> <p>발급번호 : 0654-1226</p> <p>축산물 (닭) 등급판정 확인서</p> <p>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 제 2007-6호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07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대전충남지역본부 성 명 : 유승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td> <td>성 명</td> <td>이승준</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2">124-81-51459</td> </tr> <tr> <td></td> <td>업소명</td> <td>성화식용(주)</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주 소</td> <td>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td> <td>041-569-6000</td> <td colspan="2"></td> </tr> <tr> <td>도축장</td> <td>업체명</td> <td>성화식용(주)</td> <td>등급판정일자</td> <td colspan="2">2008년 07월 22일</td> </tr> <tr> <td>소재지</td> <td>소재지</td> <td>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td> <td>041-569-6000</td> <td colspan="2"></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도체번호</th> <th>수 양</th> <th>중량구</th> <th>등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2085 ~ 2091</td> <td>7(수)</td> <td>10호</td> <td>1+등급</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계 : 壹 수</p> <p style="text-align: right;">발급일자 : 2008년 07월 22일</p> <p style="font-size: small;">* 본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cer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15mm * 세로 297mm 일반용지 80 g/m² (세탁용 또는 친환경표시제용)</p> | | 신청인 | 성 명 | 이승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24-81-51459 | | | 업소명 | 성화식용(주) | | |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도축장 | 업체명 | 성화식용(주)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22일 | | 소재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도체번호 | 수 양 | 중량구 | 등급 | 비고 | 2085 ~ 2091 | 7(수) | 10호 | 1+등급 | | <p>[별지 제 43호 서식]</p> <p>발급번호 : 0654-1224</p> <p>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확인서</p> <p>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 제 2007-6호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07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대전충남지역본부 성 명 : 유승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td> <td>성 명</td> <td>이승준</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2">124-81-51459</td> </tr> <tr> <td></td> <td>업소명</td> <td>성화식용(주)</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주 소</td> <td>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td> <td>041-569-6000</td> <td colspan="2"></td> </tr> <tr> <td>도축장</td> <td>업체명</td> <td>성화식용(주)</td> <td>등급판정일자</td> <td colspan="2">2008년 07월 22일</td> </tr> <tr> <td>소재지</td> <td>소재지</td> <td>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td> <td>041-569-6000</td> <td colspan="2"></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도체번호</th> <th>수 양</th> <th>중량구</th> <th>등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6 ~ 196</td> <td>191(kg)</td> <td></td> <td>1+등급</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계 : 壹 수</p> <p style="text-align: right;">발급일자 : 2008년 07월 22일</p> <p style="font-size: small;">* 본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cer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15mm * 세로 297mm 일반용지 80 g/m² (세탁용 또는 친환경표시제용)</p> | | 신청인 | 성 명 | 이승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24-81-51459 | | | 업소명 | 성화식용(주) | | |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도축장 | 업체명 | 성화식용(주)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22일 | | 소재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도체번호 | 수 양 | 중량구 | 등급 | 비고 | 6 ~ 196 | 191(kg) | | 1+등급 | | <p>[별지 제 43호 서식]</p> <p>발급번호 : 0360-755</p> <p>축산물 (계란) 등급판정 확인서</p> <p>『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07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경기지역본부 성 명 : 유승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신청인</td> <td>성 명</td> <td>한현승</td> <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2">126-81-60835</td> </tr> <tr> <td></td> <td>업소명</td> <td>농업회사법인(주)정계원</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주 소</td> <td>경기 서천시 아음면 중앙리 388-89</td> <td>021-627-0270</td> <td colspan="2"></td> </tr> <tr> <td>도축장</td> <td>업체명</td> <td>농업회사법인(주)정계원</td> <td>등급판정일자</td> <td colspan="2">2008년 07월 22일</td> </tr> <tr> <td>소재지</td> <td>소재지</td> <td>경기도 서천시 아음면 중앙리 388-89</td> <td></td> <td colspan="2"></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도체번호</th> <th>수 양</th> <th>중량구</th> <th>등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002</td> <td>13,000</td> <td>대란</td> <td>1등급</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계 : 壹 수</p> <p style="text-align: right;">발급일자 : 2008년 07월 22일</p> <p style="font-size: small;">* 본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cer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15mm * 세로 297mm 일반용지 80 g/m² (세탁용 또는 친환경표시제용)</p> | | 신청인 | 성 명 | 한현승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26-81-60835 | | |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주)정계원 | | | | | 주 소 | 경기 서천시 아음면 중앙리 388-89 | 021-627-0270 | | | 도축장 |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주)정계원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22일 | |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서천시 아음면 중앙리 388-89 | | | | 도체번호 | 수 양 | 중량구 | 등급 | 비고 | 002 | 13,000 | 대란 | 1등급 | |
| 신청인 | 성 명 | 이승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24-81-514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성화식용(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축장 | 업체명 | 성화식용(주)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2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체번호 | 수 양 | 중량구 | 등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5 ~ 2091 | 7(수) | 10호 |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이승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24-81-514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성화식용(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축장 | 업체명 | 성화식용(주)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2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319-6 | 041-569-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체번호 | 수 양 | 중량구 | 등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196 | 191(kg) | |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한현승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26-81-608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주)정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경기 서천시 아음면 중앙리 388-89 | 021-627-02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축장 |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주)정계원 | 등급판정일자 | 2008년 07월 2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서천시 아음면 중앙리 388-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체번호 | 수 양 | 중량구 | 등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2 | 13,000 | 대란 |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매단계 식육판매표지판

| 식육판매표지판 | |
|----------|--|
| 부 위 명 | |
| 등 급 | |
| 용 도 | |
| 100g당 가격 | |
| 원 산 지 | |

- * 소·돼지의 식육에 해당
- 소 : 5개 부위 등급표시 의무
- 돼지 : 등급표시 자율

4. 개선안

가. 제기된 등급표시 방법의 문제점

- 소비자 단체에서 등급표시 방법이 복잡하므로 쉽고, 단순한 등급표시 개선을 요망하였다.
 - 쇠고기의 경우 1등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1⁺⁺, 1⁺등급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1등급이 최고등급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비지표로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도체에 육질과 육량등급을 동시에 표시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소비지표로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매단계 표시는 육질등급만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체에 육질과 육량(규격)등급이 모두 표시되고 있어 혼란 초래하고 있다.
 - 1A, A⁺, A등급 표기 등 소매단계에서 잘못 표기되는 사례가 많다.

나. 그 동안 개선 노력

- 의견수렴 방법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간담회('08.7.2)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자문회의 개최('08.10.28)
 -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생산자 단체와 협의(08. 11. 11)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소비자의 알기 쉬운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표시방법 변경에 따른 유통혼란 및 제도정착까지 또다시 긴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현행유지가 바람직하고,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 그 원인이 표시방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홍보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등급, 1⁺⁺등급의 신설은 한우산업 보호차원에서 만들었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방법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맛을 중시한 등급제도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봄. 음식점까지 등급을 표기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 1⁺⁺등급 신설은 소비자 입장, 한우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므로 등급표시 방법의 변경 보다는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관련 법 개정시 음식점까지 등급을 표기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 등급표시 방법을 누구나 보면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 유통시장에서 소비자가 식육을 구매할 때 1⁺등급이나 1⁺⁺등급이 있다는 점을 잘 몰라서 속을 수도 있다.

➡ 현행을 유지하되 유통·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전개하며,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음식점까지 확대한 유통 쏠단계 등급표시 제도화로 보완한다.

다. 개선안

< 기본방향 >

- 축산물 유통관행은 변화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가능한 최소한의 개정을 기본으로 하고
- 변화적용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기간단축이 용이하도록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개정에 따른 비용이 행정적으로, 관련 제도의 변경과 홍보비 등이 상당히 소요됨으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 소비자들이 품질에 따른 가격지불에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 축산물 등급표시 개선(안) 〉

| | |
|-----------|--|
| A안 | 현행 등급표시 방법을 유지하되 등급표시 적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육질만 표시 |
|-----------|--|

- 등급판정기준과 표시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도매단계의 지육확인서에 현행과 같이 육질, 육량 표시를 하되 육질 표시를 크게 하여 육질표시를 강조하고 양축가에게 등급판정결과를 홍보할 때도 현행과 같이 육질·육량을 표시하며, 전광판에는 가격결정의 합리성 유지를 위해 육질·육량을 표시함. 다만 도매단계의 도체와 소매단계에서는 육질만 표시하고 등급 전체를 표시하여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한다.
- 닭고기, 계란의 경우는 현행을 유지한다.

□ 등급표시 방법 및 적용

| | 현행 | 개정 |
|-------------|--|---|
| 쇠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B, 16개 1⁺⁺C, 등외..... · 확인서(육질,육량): " 16개 · 전광판(육질,육량): " 16개 · 등급판정결과통보서(육질,육량): " 16개 · 소매단계(육질):1⁺⁺,1⁺,1,2,3,등외 등심,채끝,안심,갈비,양지(의무) 6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1⁺, 1, 2, 3, 등외 6개 현행과 같음 16개 현행과 같음 16개 현행과 같음 16개 현행과 같이 하되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예) 1⁺⁺, 1⁺, 1, 2, 3 6개 |
| 돼지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A,2A... 17개 · 확인서(육질,육량): " 17개 · 전광판(육질,육량): " 17개 · 소매단계(육질):1⁺1,2,3,D(등외) 부위: 자육 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1, 2, 3, 등외 5개 현행과 같음 17개 현행과 같음 17개 현행과 같이 하되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예) 1⁺, 1, 2, 3 5개 |
| 닭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포장(품질):1⁺1,2 3개 · 속포장(품질,규격):1⁺1,2, 특,대,중,중소,소 15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을시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3개 현행과 같음 15개 |
| 계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포장(품질):1⁺1,2,3 4개 · 속포장(품질,규격):1⁺, 1, 2, 3, 왕,특,대,중,소 20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을시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4개 현행과 같음 20개 |

□ 개선에 따른 장·단점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소매단계 | ○도체 및 확인서에 육질등급만 표시하게 되어 식육 구입시 품질구분이 쉬워짐 | ○1 ⁺⁺ , 1 ⁺ 등급의 소비자 인식을 위한 교육, 홍보비용 증가 필요 |
| 도매단계 | ○육량지표 존속으로 도매시장 운영이 현행과 동일함 | |
| 생산단계 | ○육질·육량등급 모두를 통보하므로 고급육 생산에 차질없음(현행과 동일) | |
| 기 타 |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음 ○지육에서 부분육 거래로 유통 개선 및 한우 '맛' 등급제 추가 표시 등 소비자 중심으로 등급 표시 방법 추가 개선 추진이 용이함 | |

B안

모든 축종의 등급을 4개등급(1⁺, 1, 2, 3)으로 통일하고, 육질(품질)등급만 표시

- 쇠고기의 1⁺⁺, 등급은 폐지, 돼지고기는 현행유지, 닭고기는 3등급 추가, 계란은 현행을 유지한다.
- 쇠고기, 돼지고기는 5개, 닭고기, 계란은 4개로 표시를 단순화한다.

□ 등급표시 방법 및 적용

| | 현행 | 개정 |
|------|--|---|
| 쇠고기 | · 도체(육질,육량):1 ⁺⁺ A,1 ⁺⁺ B, 16개 1 ⁺⁺ C, 등외..... | (육질):1 ⁺ , 1, 2, 3, 등외 5개 |
| | · 확인서(육질,육량): " 16개 | (육질): " 5개 |
| | · 전광판(육질,육량): " 16개 | (육질,육량):1 ⁺ A,1 ⁺ B,1 ⁺ C... 13개 |
| | · 등급판정결과통보서(육질,육량): " 16개 | (육질,육량):1 ⁺ A,1 ⁺ B,1 ⁺ C... 13개 |
| | · 소매단계(육질):1 ⁺⁺ ,1 ⁺ ,1,2,3,등외 등심,채끝,안심,갈비,양지(의무) 6개 | (육질):1 ⁺ , 1, 2, 3, 등외 5개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매대 사용시에만 표시하고 라벨의 경우 해당등급만 표시 |
| 돼지고기 | · 도체(육질,육량):1 ⁺ A,1A,2A... 17개 | (육질):1 ⁺ , 1, 2, 3, 등외 5개 |
| | · 확인서(육질,육량): " 17개 | (육질): " 5개 |
| | · 전광판(육질,육량): " 17개 | 현행과 같음 17개 |
| | · 소매단계(육질):1 ⁺ 1,2,3,D(등외) 부위: 자율 5개 | 현행과 같이 하되 해당되는 등 5개 급에 ○ 표시(식육판매표시판) |
| 닭고기 | · 겉포장(품질):1 ⁺ ,1,2 3개 | 겉포장(품질):1 ⁺ , 1, 2, 3 4개 |
| | · 속포장(품질,규격):1 ⁺ ,1,2, 특,대,중,중소,소 15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을시 의무 | * 3등급 신설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 계란 | · 겉포장(품질):1 ⁺ ,1,2,3 4개 | 겉포장(품질):1 ⁺ , 1, 2, 3 4개 |
| | · 속포장(품질,규격):1 ⁺ ,1,2,3, 왕,특,대,중,소 20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을시 의무 |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 신청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 육질,육량을 표시

□ 개선에 따른 장·단점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소매단계 | ○ 축산물 품목별 등급표시가 통일됨에 따라 인식이 쉬워짐 | |
| 도매단계 | ○ 모든 축종의 등급이 통일됨에 따라 유통 및 홍보에 효과 | ○ 1 ⁺⁺ 등급이 1 ⁺ 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른 도매경락가격 혼란 우려 |
| 생산단계 | | ○ 1등급 이상 고급육의 가격하락 우려(쇠고기, 돼지고기) ○ 고급육 생산 사양지표 변경으로 혼란초래(쇠고기) |
| 기 타 | | ○ 개선에 따른 교육·홍보 비용 증가 ○ 한우 '맛' 등급제 등 후속 개정의 필요성 약화 * 세계는 현재 소비자 중심의 맛등급제로 재편중 ○ 닭고기,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이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비율이 저조하고, 2등급이하는 별로 없는데도 세분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 | |
|-----------|---|
| C안 | 모든 축종의 육질(품질)등급을 4개등급(1, 2, 3, 4)으로 전면 재조정하고, 육질(품질)등급만 표시 |
|-----------|---|

- 쇠고기의 1⁺⁺, 1⁺등급을 폐지하고 4등급을 신설한다.
- 돼지고기, 계란은 1⁺등급을 폐지하고 4등급을 신설한다.
- 닭고기의 1⁺등급을 폐지하고, 3, 4등급을 신설한다.

□ 등급표시 방법 및 적용

| | 현 행 | 개 정 |
|------|---|---|
| 쇠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B, 16개 · 확인서(육질,육량): " 16개 · 전광판(육질,육량): " 16개 · 등급판정결과통보서(육질,육량): " 16개 · 소매단계(육질):1⁺⁺,1⁺,1,2,3,등외 등심,채끝,안심,갈비,양지(의무) 6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2, 3, 4, 등외 5개 (육질) 1, 2, 3, 4, 등외 5개 (육질,육량)1A,1B,1C,등외... 13개 (육질,육량)1A,1B,1C,등외... 13개 (육질) 1, 2, 3, 4, 등외 5개 *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식육판 대표시판) |
| 돼지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A,2A... 17개 · 확인서(육질,육량): " 17개 · 전광판(육질,육량): " 17개 · 소매단계(육질):1⁺1,2,3,D(등외) 부위: 자육 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2, 3, 4, 등외 5개 (육질) 1, 2, 3, 4, 등외 5개 (육질,육량)1A,1B,1C,등외... 17개 (육질) 1, 2, 3, 4, 등외 5개 *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식육판 대표시판) |
| 닭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포장(품질):1⁺,1,2 3개 · 속포장(품질,규격):1⁺,1,2, 특,대,중,중소,소 15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으시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겹포장(품질) 1, 2, 3, 4 4개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 계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포장(품질):1⁺,1,2,3 4개 · 속포장(품질,규격):1⁺,1,2,3, 왕,특,대,중,소 20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으시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겹포장(품질) 1, 2, 3, 4 4개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 신청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 육질,육량을 표시

□ 개선에 따른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소매단계 | ○ 축산물 품목별 등급표시가 숫자 '1' 기준으로 단순해짐에 따라 인식 용이 | ○ 기존 등급체계와의 다소의 혼란 유발 |
| 도매단계 | ○ 축종별 등급이 통일됨에 따라 유통 및 홍보에 효과 | ○ 등급이 전면 조정됨에 따른 기존 시장질서, 특히 유통가격 형성에 혼란 |
| 생산단계 | | ○ 고급육 사양지표 하향조정으로 고급화 차질(쇠고기) ○ 1 ⁺⁺ , 1 ⁺ 등급 품질의 가격하락 예상 |
| 기타 | | ○ 도·소매단계에서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에 혼란 초래 ○ 축종별 특징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표시방법은 문제가 있음 |

< 표 III-9 > B안·C안에 따른 도매시장의 한우 가격영향도 분석

| 육질등급 | 현재 | | 개선(안) | | 영향도(억원) |
|-----------------|--------|---------|--------|---------|---------|
| | 출현율(%) | 경락가격(원) | 출현율(%) | 경락가격(원) | |
| 1 ⁺⁺ | 7.3 | 17,125 | | | △ 200억원 |
| 1 ⁺ | 19.2 | 15,523 | 26.5 | 15,523 | |
| 1 | 27.1 | 14,114 | 27.1 | 14,114 | |
| 2 | 25.5 | 12,298 | 25.5 | 12,298 | |
| 3 | 20.1 | 9,676 | 20.1 | 9,676 | |
| 등외(D) | 0.8 | 5,496 | 0.8 | 5,496 | |
| 계(평균) | 100 | 12,372 | 100 | 11,421 | △ 200억원 |

- 주) 1. 1⁺⁺등급이 없을 경우 1⁺등급에 해당하는 쇠고기의 가격이 1⁺등급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단순 비교
2. 도매시장 영향도는 {등급별출현두수(총40만두)x경락가격x출하평균도체중(357kg)}로 산출('08.1~10월, 서울공판장 한우 경락가격 기준, 동기간 대비 전체 한우두수로 환산)
3. 1⁺의 등급판정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가격 영향도는 축소될 것임

D안

축종의 특성에 따라 육질(품질)등급을 축소 조정하고, 육질(품질)등급만 표시

- 쇠고기의 1⁺⁺를 1⁺로 통합하고, 돼지고기의 3등급을 2등급으로 통합 (3등급 출현율 :1.6%수준), 계란의 3등급을 2등급으로 통합한다. (3등급 출현율 저조)
- 닭고기, 계란의 등급판정이 의무화 되는 시점에 등급 구분을 세분화한다.
- 쇠고기 5개, 돼지고기 4개, 닭고기, 계란을 3개 등급으로 단순화하여 축종에 따라 등급표시를 축소하여 소비자 인식도 제고한다.

□ 등급표시 방법 및 적용

| | 현행 | 개정 |
|------|--|---|
| 쇠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B, 16개 1⁺⁺C, 등외..... · 확인서(육질,육량): " 16개 · 전광판(육질,육량): " 16개 · 등급판정결과통보서(육질,육량): " 16개 · 소매단계(육질):1⁺⁺,1⁺,1,2,3,등외 등심,채끝,안심,갈비,양지(의무) 6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1, 2, 3, 등외 5개 (육질) 1⁺, 1, 2, 3, 등외 5개 (육질,육량) 1⁺A,1⁺B,1⁺C,.... 13개 (육질,육량) 1⁺A,1⁺B,1⁺C,.... 13개 (육질) 1⁺, 1, 2, 3, 등외 5개 *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식육판 매표시판) |
| 돼지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A,2A... 17개 · 확인서(육질,육량): " 17개 · 전광판(육질,육량): " 17개 · 소매단계(육질):1⁺1,2,3,D(등외) 5개 부위: 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1, 2, 등외 4개 (육질) 1⁺, 1, 2, 등외 4개 (육질,육량) 1⁺A,1⁺B,1⁺C,.... 13개 (육질) 1⁺, 1, 2, 등외 4개 *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식육판 매표시판) |
| 닭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포장(품질):1⁺,1,2 3개 · 속포장(품질,규격):1⁺,1,2, 특,대,중,중소,소 15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으시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겹포장(품질) 1⁺, 1, 2 3개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 계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포장(품질):1⁺,1,2,3 4개 · 속포장(품질,규격):1⁺,1,2,3, 왕,특,대,중,소 20개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으시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겹포장(품질) 1⁺, 1, 2 3개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

※ 신청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 육질,육량을 표시

□ 개선에 따른 장·단점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소매단계 | ○ 축산물 품목별 등급표시가 3~5개로 축소되어 소비자 인식이 쉬워짐 | |
| 도매단계 | ○ 축종에 따른 등급표시가 축소되어 상품구분이 편리 | |
| 생산단계 | ○ 쇠고기의 1 ⁺⁺ 와 1 ⁺ 의 중간등급이 1 ⁺ 이 된다면 품질고급화에 문제가 없으며 ○ 돼지고기의 3등급 출현율이 사실상 저조하기 때문에 폐지하더라도 품질면에 문제가 없을것임 | ○ 고급육 생산 사양지표 변경으로 혼란초래 |
| 기 타 | ○ 닭고기는 현행 유지가되므로 혼란이 없고 계란은 3등급을 폐지하더라도 출현율이 낮아 문제가 없을 것임 | ○ 개선에 따른 교육·홍보 비용 증가 |

- 등급표시 변경에 따른 유통혼란과 제도정착까지 긴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하되,
 - 식육구분 판매시 육질등급만 표시토록 한 현행제도가 제대로 실천되도록 식육 판매점에 대하여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음식점까지 확대한 유통 쏠단계 등급 표시 제도화**로 보완한다.

□ 등급표시 방법 및 적용 : 현행 유지

- 육질·육량 또는 품질·규격등급 병기 표시

| | 현행 | 보완 |
|------|---|----------|
| 쇠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B, 16개 1⁺⁺C, 등외..... · 확인서(육질,육량): " 16개 · 전광판(육질,육량): " 16개 · 등급판정결과통보서(육질,육량): " 16개 · 소매단계(육질):1⁺⁺,1⁺,1,2,3,등외 6개 등심,채끝,안심,갈비,양지(의무) | 교육·홍보 강화 |
| 돼지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A,2A... 17개 · 확인서(육질,육량): " 17개 · 전광판(육질,육량): " 17개 · 소매단계(육질):1⁺1,2,3,D(등외) 5개 부위: 자육 | " |
| 닭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포장(품질):1⁺,1,2 3개 · 속포장(품질,규격):1⁺,1,2, 15개 특,대,중,중소,소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을시 의무 | " |
| 계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포장(품질):1⁺,1,2,3 4개 · 속포장(품질,규격):1⁺,1,2,3, 20개 왕,특,대,중,소 *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을시 의무 | " |

□ 소매단계 등급표시 : 현행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교육·홍보 강화

- 식육구분 판매시 육질등급만 표시토록 지속 권고

< 건의 : A안을 채택하되 일부를 수정함 >

1. 등급판정 기준과 표시방법은 현행을 유지하되 표시적용을 일부 개정

2. 개정 내용

1) 쇠고기·돼지고기

- 도매단계의 도체에는 육질·육량 중 ‘육질만’ 표시
- 소매단계의 등급은 육질만 표시하고,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표시하면서 해당 등급에 ‘○’ 표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판매표시판에만 적용하고 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만 표시
- 확인서, 등급판정결과통보서, 도매시장 전광판에는 육질·육량을 현행과 같이 표시
- 돼지고기의 소매단계 표시의 경우 현행 자율사항인 것을 삼겹살, 목살 등 2개의 부위에 대하여 의무화

- ▶ 의무표시 부위 :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쇠고기) 등심, 채끝, 안심, 양지, 갈비

2) 닭고기·계란

* 등급판정 받은 경우에만 등급표시가 의무사항임

- 현행과 같음

< 건의안 종합 >

| | 현행 | 개정 |
|------|--|---|
| 쇠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B, 16개 1⁺⁺C, 등외..... · 확인서(육질,육량): " 16개 · 전광판(육질,육량): " 16개 · 등급판정결과통보서(육질,육량): " 16개 · 소매단계(육질):1⁺⁺,1⁺,1,2,3,등외 6개 <p>* 등심,채끝,안심,갈비,양지(의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1⁺, 1, 2, 3, 등외 6개 현행과 같음 16개 현행과 같음 16개 현행과 같음 16개 현행과 같이 하되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예) 1⁺⁺, 1⁺, 1, 2, 3 <p>* 부위 : 현행유지</p> |
| 돼지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질,육량):1⁺A,1A,2A... 17개 · 확인서(육질,육량): " 17개 · 전광판(육질,육량): " 17개 · 소매단계(육질):1⁺,1,2,3,D(등외) 5개 <p>* 부위: 자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 1⁺, 1, 2, 3, 등외 5개 현행과 같음 17개 현행과 같음 17개 현행과 같이 하되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 예) 1⁺, 1, 2, 3 <p>* 부위 : 의무(삼겹살, 목살)</p> |
| 닭고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곱포장(품질):1⁺,1,2 3개 · 속포장(품질,규격):1⁺,1,2, 특대,중,중소소 15개 <p>*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음시 의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3개 현행과 같음 15개 <p>*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음시 의무</p> |
| 계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곱포장(품질):1⁺,1,2,3 4개 · 속포장(품질,규격):1⁺, 1, 2, 3, 왕,특대,중,소 20개 <p>*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음시 의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4개 현행과 같음 20개 <p>* 소매단계는 등급판정받음시 의무</p> |

3. 상기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전문가 간담회 결과

- 일 시 : 2008. 12. 15
- 장 소 :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
- 참석자 : 16명 (별첨)
- 주 관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논의결과 : 개선안 A, B, C, D, E안 중 전원 A안 채택
 - 확인서에도 육질·육량을 표시하되 육질을 강조해서 표시(한우협회)
 - 양축가에게 등급판정 결과를 홍보할 때에도 육질·육량을 표시(기업조합, 등판소)
 - 소매단계에서 식육판매표시판에는 '○' 표를 하되 라벨을 사용시에는 해당 등급판 표시(농식품부, 등판소). 다만, 축산기업중앙회의 한수현 전무는 '○'표 표시는 향후 개체식별번호, 도축장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상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어려움을 언급(기업조합)
 - 소매단계의 돼지도 일부 선호부위(삼겹살, 목살)에 대하여는 의무표시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음(양돈협회)
 - 향후 쇠고기의 맛 등급표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한우협회)
 - 소매단계에 표시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부족했기 때문(기업조합)

IV. 축산물등급판정의 기계화

1. 국내 기계등급판정 현황

- 계란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장에서 품질평가장비를 활용하여 등급판정하고 있다.
- 닭고기의 경우에는 도체의 신선도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09년부터 기계 등급판정 실시하고 있다.
- 돼지의 경우 일부 규모화된 도축장에서 규격등급에 한하여 기계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질등급은 등급판정사에 의한 인력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 소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사에 의하여 인력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가. 국내 소 육질등급판정 장비 개발 현황

|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과제책임자 및 세부책임자 | |
|------------------|---|-----------|---------------|-----|
| 소 도체 육질등급 판정기 개발 | 농업기계 | '06 ~ '08 | 국립농업과학원 | 이** |
| 과제설계 배 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행하고 있는 소고기 육질등급 판정의 기계화 - 기계화를 통한 등급판정의 객관화와 신뢰성 향상 | | | |

□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 도체 등급판정은 조건표에 의해 등급판정사가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기계적 등급 판정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단계에 있는 이러한 기술의 조기 실용화야 말로,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기술의 대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추진 성과

- 초분광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살코기와 지방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파장대역을 구명함으로써 영상처리장치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 등심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소형 CMOS 카메라, 신호처리보드, 조명장치로 구성된 시험장치를 제작하였다.
- 공시기를 이용하여 프로브 탐침 깊이별, 프로브 간격별 임피던스 변화를 조사하여 적정 측정 조건을 찾았으며, 각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값들의 비를 구하여 등급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주파수대를 찾았다.

3) 연차별·단계별 종합연구목표

| 구 분 | 총 합 연 구 목 표 |
|-------------------|--|
| 1년차 2년차 3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도체의 적정 등급판정 기술 선발 ○ 육질등급 판정용 시작기 제작 ○ 시작기의 성능향상 시험 |

□ 연구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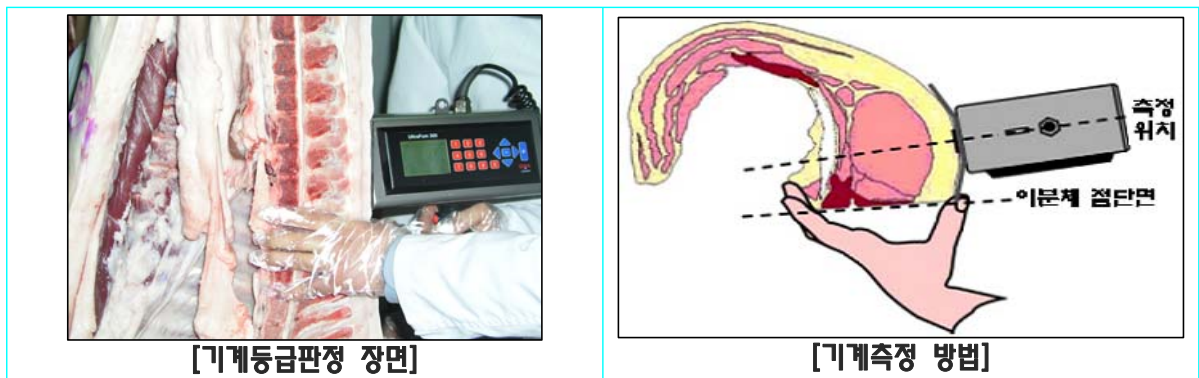
| 세 부 과 제 | 주 요 연 구 내 용 | 연 구 목 표 | 수행기간 |
|---------------------|---|---|-----------|
| 1) 소 도체 육질등급 판정기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최장근의 초분광 영상특성구명 시험 ○ 육질별 생체임피던스 측정시험 ○ 육질 등급판정용 영상처리시스템 제작 ○ 시스템 성능 시험 ○ 휴대형 시작기 제작 및 성능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도체의 적정 등급판정기술 선발 ○ 육질등급판정 시스템 개발 | '06 ~ '08 |

나. 국내 돼지등급판정기계 운영 현황

□ 기계등급판정 장비 현황

- 제작사 : 덴마크(SKF사)
- 기기명 : **UltraFom 300**(초음파 측정기기)
- 측정원리 : 도체표면에 초음파(3.5MHz)를 발사한 후 지방조직과 고기조직의 경계면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검출하여 적절한 신호처리를 통해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을 측정하는 기계적 장치
- 측정방법

< 그림 IV-1 > 돼지 기계등급판정 장면 및 측정방법



□ 연도별 구입현황

| 구 분 | '04 | '05 | '06 | '07 | 계 |
|--------|-----|-----|-----|-----|---|
| 수 량(대) | 2 | 1 | 1 | 1 | 5 |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 초음파기계(Ultrafom)를 사용하여 왼쪽 반도체의 제12등뼈와 제13등뼈 사이에서 북부방향으로 6cm지점의 도체표면에 기계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mm단위로 등지방두께 및 등심직경을 측정한다.
- 등급판정기계로 측정된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정육수율을 산출한다.

$$\therefore \text{수율산식} = 57.8661 - [0.4147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0.1443 \times \text{등심직경(mm)}]$$

-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수율에 의한 1차 등급기준(기계판정)

< 표 IV-1 > 돼지 기계등급판정 기준(1차)

| 등급 | 1차 등급기준 | | |
|----|-------------------|-----------|--------|
| | 중량(kg) | 등지방두께(mm) | 수율(%) |
| A | 80이상 - 94이하 | 14.0이상 | 56.0이상 |
| B | 76 - 98 | 12.0 | 54.0 |
| C | 71 - 101 | 10.0 | 52.0 |
| D | A, B, C에 속하지 않는 것 | | |

- 2차 등급기준
 - 균형, 비육상태, 지방부착, 마무리를 평가하여 A, B, C, D등급으로 판정
- 최종등급
 - 1차 등급판정과 2차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낮은 등급으로 최종판정

□ 기계등급판정을 위한 시설 및 적용조건

- 탕박방법으로 도축하고 냉장하지 아니한 온도체
- 도축처리 중 도체피부에 화상 등이 없어 기계측정이 가능한 도체
- 도체의 이동은 기계판정까지 현수상태로 자동 이동될 수 있는 시설
- 기계측정을 위한 도체의 이동속도가 1마리당 최소 10초 이상인 시설
- 계근기에서 계측된 중량이 기계등급판정에 연계된 컴퓨터에 자동전송이 가능한 시설

□ 연도별 기계등급판정 비율

< 표 IV-2 > 연도별 돼지 기계등급판정 비율

(단위 : 천두, %)

| 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
| 돼지 전체판정(A) | 14,574 | 13,432 | 13,072 | 13,611 |
| 기계판정(B) | 1,000 | 1,912 | 1,931 | 1,371 |
| 기계판정율(B/A) | 6.9 | 14.2 | 14.8 | 10.1 |

다. 국내 계란 등급판정장비 운영 현황

□ 계란 판정장비(QCM+시스템)

- 제작사 : 영국 TSS사
- 주요사용국 : 미국, 영국, 한국 등 80여개국
- 제품구성 : 난황색측정기, 난백고측정기, 전자저울, 난각두께측정기, 난각색측정기 등
- 측정내용 : 호우유니트(신선도), 난황색도, 계란의 무게, 난각두께, 난각색 등

라. 국내 닭고기 판정장비 운영 현황

□ 닭고기 신선도 판정장비(Torry meter)

- 제작사(판매원) : 영국 토리연구소에서 개발하여 DISTELL(사)에서 생산 및 판매
- 주요사용국 : 미국, 일본 등 48개국
- 제품특징 : 측정시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 휴대가 가능하며, 작동이 빨라 공장 및 연구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제품구성 : 신선도측정기, 충전기

2. 외국의 기계등급판정 현황

-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은 정육중심의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에 따라 소, 돼지 등에 대하여 수육등급에 대한 기계화 추진이 대부분이다.
- 그러나 소규모 도축장의 경우에는 등급판정사에 의한 육안판정을 실시하고 있고, 육질등급을 기계로 판정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 캐나다

- 측정위치 및 방법 : 마지막 늑골에서 3번째와 4번째 늑골사이를 2분도체 분할 중심선에서 7cm 복부방향의 지점을 탐침으로 측정한다.

○ 적용조건

- 주당 1,000두 이상 돼지를 도축하는 작업장
- 탐침(probe)이 공인된 것(정확성이 검증된 탐침)
- 돼지 도체 중량이 40kg 이상
- 탐침 장비를 갖춘 도축장(육가공업체)

○ 기계등급기준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
| 수율 | 64.3% 이상 | 61.8 - 64.29 | 59.6 - 61.79 | 57.7 - 59.59 | 56.1 - 57.69 | 54.7 - 56.09 | 54.7 이하 |

□ 유럽연합(EU)

○ 공통사항

- '87년 공식적으로 기계적인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 탐침(probe)에 의한 방법에서 최근에는 초음파 등에 의한 기계적판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 돼지도체 등급판정 측정기 채택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기계측정치와 도체정육수율과의 상관관계(r)가 0.80이상, 측정오차(잔차)가 최고 2.5이하
 - 측정시간이 짧고 효율적이어야 함
 - 도축장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측정방법 제시
 - 산식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120두 이상 해체시험 결과 제시
- 살코기 수율에 따라 S, E, U, R, O, P의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등급 | S | E | U | R | O | P |
|----|-------|---------|---------|---------|---------|-------|
| 수율 | 60%이상 | 55 ~ 60 | 50 ~ 55 | 45 ~ 50 | 40 ~ 45 | 40 미만 |

○ 독일

- 측정기기 종류 : FOM, SKG II, Porkitron
- 도체중 범위 : 50kg이상 120kg이하인 도체
- 측정위치 : 마지막 늑골 2/3 높이의 분할선 측면에서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 측정 (단위 : mm)

○ 네델란드

- 측정기기 종류 : Hennsey Grading Probe(HGP)
- 공통 등급에 적육율 60% 이상은 별도로 S등급으로 구분(6개 등급)
- 측정위치 및 방법 : 3~4 늑골 사이를 probe를 통과시켜 측정
- 도체중 범위 : 60~12kg
- 도체중 범위내에서 수율에 따라 도체단가 지급

○ 덴마크

- 측정기기 종류 : Ultrafom 300(수동), Autofom(자동)
- 측정위치 : 마지막 늑골 3~4번 사이에서 복부방향 7cm 지점의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 측정
- 수율에 따라 도체단가 지급(59%를 기준으로 가감)

3. 기계등급판정의 문제점

- 우리나라 도축장의 경우 도축규모가 영세하거나 적용조건이 맞지않아 기계등급판정의 효율화가 미흡하고
- 육질중심의 소비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질등급판정 장비의 국내기술 개발이 미흡하다.
 - 더구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육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계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대부분의 판정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음에 따라 고장발생시 즉각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

가. 등급판정기계(UltraFom) 문제점

- UltraFom의 피스틀이 무거워 등급판정사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킨다.
 - 등급판정사가 사용하는 기계(피스틀) 무게가 3.0kg정도로 기계판정으로 피로도를 증가 시켜고, 근골격질환 등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 도입취지와 달리 수동형 등급판정기계인 UltraFom은 인력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가 없었다.
 - 1999년 당시 기계화가능 작업장 14개소에서 11명(55명→44명)의 인력과 년 275백만원의 예산 절감효과 기대하였으나
 -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산화 및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 기계판정을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는 없었다.
- 돼지고기 육질등급의 판정이 불가능 하다.
 - 규격 1차 등급만 판정기계(UltraFom)로 정확히 측정하나 육질판정이 불가능하여 판정기계로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나. AutoFom 측정기기 검토의견

- 현재 판정기계(Ultrafom)보다는 측정지점(16센서)이 많아서 도체의 육량에 대한 정보파악이 좀더 용이하나 육질등급판정의 한계가 있다.
 - 정육수율 및 부위별 정육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이 가능하다.
 - AutoFom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육질판정 항목(육색, 지방색, 지방침착도 등)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자동적으로 정육수율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판정기계(Ultrafom)보다는 편리성이 있다.
 - 등급판정사는 육질등급 항목만 판정함으로써 노동강도가 낮아진다.
- 자동적으로 정육수율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등급판정기계 보다 편리성이 있다.

다. AutoFom 사용국가 : 10개 국가

- Westfleisch (Germany)
- Tönies (Germany)
- George Adams (Great Britan)
- HK (Finland)
- Incarlopsa (Spain)
- Danish Crown (Denmark)
- Vion (Netherland)
- Hatfield (USA)

라. AutoFom 구매가격

- System 1세트 : 632백만원
- 도축장설비 낙후로 인한 개보수 비용(별도) : 70백만원

4. 향후방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등급판정장비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민은 축산물의 품질을 중요한 구매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질 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계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기계판정장비의 대규모 도축장에 우선 적용한다.

- 돼지 수율측정을 위한 기계등급판정 장비(AutoFom 등)는 도축규모가 많은 작업장에 우선 배치해야 하므로 도축장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닭고기 기계등급판정을 추진한다.

- 닭고기 등급판정은 많은 수의 도체를 판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관판정시 기계 등급판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급판정인기 자동화가 필요하다.

- 돼지 등급판정 후, 등급도장 날인은 도체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하여 등급판정사가 직접 날인함에 따라 등급판정시간 연장과 노동력 증가로 이어진다.
- 이에 따라 등급판정인기 자동화 개발 필요하며 저렴한 가격에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향후 발전방향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989년 4월 정부로부터 등급판정사업을 수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과 품질향상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사)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 부서로 시작하였으나 그 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정원 260명의 규모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 제고, 환율 상승으로 더욱 어려워진 축산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는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 처해 질 것이 분명하다.

- 한편으로는 기회요인도 많다.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급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고기 및 계란에 이어 기타 축산물에 대한 등급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등급판정소의 업무영역은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멜라민 파동, 수입 쇠고기의 위생문제 등을 계기로 소비자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된 국내산 축산물과 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여건을 기반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등급판정 대상 품목의 다각화

□ 오리, 원유(原乳) 등 등급판정 대상품목 확대 필요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등급판정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 측면과 국민 소비편익 제공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리, 원유(原乳), 벌꿀 등에 대한 등급판정이다.
- 오리는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백색육 소비증가에 힘입어 2007년도에 (주)화인코리아 등 14개 도축장에서 42,187천수를 도축하였으며 이것은 10년전의 23,838천수와 비교해 77%나 증가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소비량 또한 약 3kg으로 닭고기의 1/4수준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리고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소비형태가 과거의 '탕요리' 위주에서 '구이 및 훈제'로 변화되고 있어 품질에 따른 차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오리에 대한 등급판정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오리에 대한 중량규격과 품질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오리 도축물량이 많은 도축장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1917년부터), EU(1941년부터;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돼지·닭 등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오리에 대한 구분, 기준, 등급에 기반을 둔 판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질과 가격의 관계와 좀 더 질서있는 시장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 원유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총괄하고 있으며 전국의 12개 위생시험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품질검사는 유지방 함량, 세균 수, 체세포 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농가에 대한 원유가격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유검사는 세균 수 측정을 통한 위생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원유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유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기와 건물 확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이 사전에 검토 또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 우리나라 벌꿀의 유통은 양봉꿀과 토봉꿀로 구분되고 있으며 밀원에 따라 꽃꿀과 사양꿀(설탕물 등을 먹이로 하여 생산한 꿀)로 구분한다.

현재 농가가 생산한 꿀에 대한 품질검사는 생산자 단체 및 업체가 자율적으로 항생제 검사 또는 탄소 동위원소비율 등을 이용하여 꽃꿀이나 사양꿀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이와 같이 품질평가 주체의 공공성이 다소 부족한 점,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꿀에 대한 품질평가도 공공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소 동위원소비율을 이용한 품질평가 방법은 일부 사양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품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품질평가 기준을 개발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2008. 7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식품위해요인의 사전예방, ②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③ 식품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대응, ④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수입, ⑤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⑥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6가지 사항으로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가운데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한다거나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하려는 점 등에 있어서 보다 확실히 소비자에게 식품안전과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현지에 축산물등급판정사를 함께 파견하여 식품안전 뿐만아니라 품질관리까지 병행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수입업체에 대한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해당 수출국가의 품질정보를 명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소비자를 향한 직접적인 업무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식육의 품질기준에 준하여 수입품에 대한 등급판정도 고려해봄직 하다.

2. 등급제도의 의무 대상품목 확대

□ 닭고기·계란 등급판정 의무화 필요

- UR 협상타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 착수하여 1993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소 및 돼지도체에 대한 축산물등급제도는 등급별 부위별 차등가격과 구분판매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이익의 적정분배와 식육가격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냉장육 유통과 전수 등급판정을 통해 강제급수와 무자료 도축 등 부정 축산물의 방지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었다.

향후 FTA 등 수입개방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여 종축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 등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 식육의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등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급제도 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성과를 보인 것과 같이 현재 등급판정소가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닭고기('03년부터) 및 계란('01년부터)에 대하여 먼저 의무화 시행으로 양계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닭고기 및 계란의 등급판정이 현행 4%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양계산업의 시장 영향력 및 가격안정 등에 미치는 효과 또한 적을 수 밖에 없다.

등급제도의 시행에 따른 집하장 및 농장의 시설현대화, 냉장시설 확보 및 냉장유통 등의 품질유지 및 향상 노력은 국내 양계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 정산가격의 기준이 되어 지속적인 고품질생산에 촉매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유통업계의 인식변화 및 소비자의 기호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닭고기·계란 등급판정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도계장, 계육가공장 등 일일 도계·가공수수가 많은 업계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력에 의한 등급판정을 기계등급판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계란의 경우에는 농장간 개인간 직거래 등 복잡한 현재의 유통구조를 소·돼지·닭의 도축장처럼 '집하장'을 통한 유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처럼 계란의 유통구조가 보다 단순화되고 닭고기·계란 등급판정을 의무화하면 국내 닭고기·계란의 위생·안전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꾀할 수 있게 되고, 수입산과의 차별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수급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이 개선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등급제도의 의무시행 품목을 확대하는데 있어 이 제도의 의무시행이 '08년 2월 출범한 새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의 대치 여부 및 포함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국제관계 및 식문화 선진화방향 등 거시적인 관점과 제도의 의무시행에 따른 성과 및 규제요소 등 미시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본다.

우선 미국(1927년), EU(1972), 캐나다(1929), 일본(1963) 등 주요 축산선진국 모두는 가축개량과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주요국 대부분이 등급판정 신청은 자율에 맞기되 국가간 또는 지역간 이동 및 수출용 지육 등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별 축산업 환경과 등급제도의 도입배경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오히려 캐나다의 경우 부분육 포장박스에 대하여 등급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WTO에 '축산물의 국제무역·유통 및 가격결정을 위한 등급기준'에 관한 표준화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축산물의 거래와 자국 축산물의 가치 척도 및 식문화 수준을 판별하는데 있어 축산물의 등급은 주요국 모두에서 법령에 의거 보호 또는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축산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이처럼 등급제도의 의무시행은 그 성과와 파급효과를 볼 때 식문화 선진화를 앞당기는 한편 축산물의 품질이 국제우위에 서는 기회를 제공한다.

○ 만일 현행 등급제도의 의무시행을 자율화한다거나 대상품목의 확대를 주저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생산단계

- 생산자의 고급육 생산목표 설정이 불가능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욕상실 등으로 국내 축산물의 품질저하 가속화가 예상된다.
- 한우와 수입육과의 품질차별화 기반이 붕괴됨으로써 수입육과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도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 유통단계

- 품질에 따라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거래지표 상실로 육류유통의 일대 혼란이 야기되어 국내산 육류유통시장이 마비될 것이다.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및 구매지표가 불가능하여 도·소매시장의 혼란이 오게 된다. 또한 고급육은 등급표시가 되고 저급육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됨으로써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저급육은 고급육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19년 동안 정부 주도로 쌓아올린 유통질서가 부정축산물의 유통성행으로 무너질 개연성이 있으며, 더구나 냉장육 유통시스템마저 장애를 받을 것이다.
- 등급제도에 따른 냉도체 유통의 촉매작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온도체 유통에 따른 미생물 증식 등 비위생적인 관리로 국민건강이 위협될 것이다.
- 등급제도로 품질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구조가 깨져 유통이 불투명하게 되고 가격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 소매단계

-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성행할 것이다.
- 소비자의 육류구매시 알권리 충족에 역행하게 되어 국내산 육류의 소비저하가 예상되며 등급별 구분판매가 불가능하다.
- 등급판정 받지 않은 저품질육의 상위등급 둔갑판매로 소매질서가 문란해지고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 결론으로, 이처럼 국내 축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에서의 품질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제도의 의무시행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확고한 축산기반이 품질경쟁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등급제도의 자율화 논의 자체가 없어야 하겠다. 향후 국제적인 품질경쟁력을 갖출 축산물 대상품목이 많고, 취약한 축산업 환경을 조기에 선진화하는 방법으로 등급제도의 의무시행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부도 등 금융혼란이 세계경제에 미친 여파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어 혼란이 시작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격의 결정과 축산업 지표로서의 등급이 없다면 '89년 UR 협상타결에 대비한 정부주도의 축산분야 대응에서 등급제도를 통한 이제까지의 성과 또한 없었을 것이다.

새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경감 및 산업체의 투자활성화 등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축산업계에서 등급제도는 규제적인 측면보다는 국제관계에서의 자국 축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확보, 식육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에 있어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보다 강력한 도구로서 쓰기 위해 의무시행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수입육의 증가 및 산지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취약한 현재의 축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주요 축산선진국 대부분이 등급제도를 의무시행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의무시행으로 성과를 낸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강점이므로 소, 돼지에 이어 닭, 계란, 오리, 벌꿀, 우유, 치즈 등 국내 다양한 축산물에 대하여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크게 사용할 일이다.

3. 가격안정과 투명유통 강화를 위한 지육등급별 가격정산 제도화

- 현행 등급제도가 소매단계 연계 및 유통거래의 지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유통 전단계에 대한 가격지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지육 지급을 가격정산 방식을 지육등급별 가격정산 방식으로 제도화하여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에 있어 통제가능한 품질지향적인 정책기조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등급제도 관계법령에 따라 소 및 돼지도체는 의무적으로 100% 등급판정을 받고 있으나, 도매가격의 30%만이 등급별로 정산됨으로써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판매'(농식품부 고시 제2007-82호)에 따른 부위별 등급별 가격차등의 반영이 미흡하다. 소매단계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지육 지급을 가격정산방법을 지육등급별 정산체계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정산 방법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4.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 제고와 컨설팅 기능의 확대

- 등급판정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농가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등급판정' 그 행위 자체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크다. 이는 등급판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등급판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기 때문이다.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농가 컨설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일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사업초기부터 가축을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등급판정결과를 제공해 왔다. 이에 많은 농가들이 통보받은 등급판정결과를 기초로 나뭇대로 사양관리방법이나 가축의 혈통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등급판정결과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농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등급판정결과는 농가에서 출하하기 까지 가축이 어떤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양과 질병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활용 여하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결과를 분석한 이후 이를 컨설팅에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예도 있다. 2007년 개인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를 그 이전과 비교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5%나 증가한 사례가 그것이다.

등급판정소는 타 컨설팅 기관이나 업체가 갖고 있지 않은 '등급판정결과 분석자료'라는 경쟁력 있는 기본자료를 잘 활용할 경우 한 차원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부문 유료화로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에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분석자료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또 하나의 핵심 정보제공 콘텐츠는 '축산물 검수 시스템'이다. 등급판정소는 2006년 지역 교육청의 요청을 발단으로 각 학교의 급식용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검수 편의를 돕기 위해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개발하여 '08년 11월 현재 전국의 11,000여개 학교 중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8,700여 학교가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콘텐츠는 07년 공공기관 '우수 서비스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등급판정소는 '축산물 검수시스템'에 대하여 각급 학교 급식담당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축산물 검수를 위한 포털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은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력추적사업의 확대

-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력추적 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돈업계에서도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그러나 수입육에 대한 이력추적 즉,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은 등급판정소가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입육에 대한 이력정보 중에서 품질구분 및 정보표시를 위한 등급판정소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수입육에 대한 이력추적의 목적이 수입육의 수입부터 가공, 판매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과 함께 소비자에게 적정한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품질정보 제공은 도입초기에 검토되어 반영될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이력추적의 전산처리 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국내산과 수입육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산처리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다.

6. 검정 및 개량사업과 연계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수행하고 있는 등급판정 업무와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브루셀라 관련 전산업무와 송아지생산가격안정 업무를 하나의 전산망에 연결함으로써 소의 검증과 개량업무를 추진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업무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소 이력추적시스템 업무를 가축개량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음을 참고해 볼만 하다. 다만 국가마다 다른 환경임을 고려해서 검정 및 개량사업과 연계된 전산통합의 운영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이력업무를 담당해온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축적된 기술과 역량, 그리고 전산처리능력, 축산물 검수안심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능력은 고려될 만하다.

7. 기관의 명칭 변경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1993년 8월 (사)한국중축개량협회의 소속 단위 조직으로 있을 때 만들어졌으며 2001년 7월 독립법인으로서 출범할 때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이 과거에는 축산물등급판정이라는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지금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시 명칭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은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이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제시한 바 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기관의 명칭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축산관련단체에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며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또한 지금까지 등급판정소가 구축해 놓은 전국적인 조직 인프라와 인력 구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유 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매우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업무의 범위를 '등급판정'에 한정하고 있는바, 향후 쇠고기이력추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적정한 기관의 명칭으로는 2001년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수행한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 있고 지금까지 등급판정소 내부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던 '(가칭)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명칭변경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제기가 되어 왔고 축산물의 품질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한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법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의 명칭이 새롭게 개정될 경우 이에 걸맞는 CI(Corporate Identity)개발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 시 CI개발에 따르는 비용 50백만원, CI가 적용되는 현판, 서식 교체비용 50백만원, 홍보비용 150백만원 등 모두 250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적지 않다.

첫째, 다양한 부대사업 추진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보다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사업인 등급판정 업무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무영역 확대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서는 등급제의 자율화 등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을 다양화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등급판정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한 컨설팅 사업, 등급판정 관련정보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축산업 전반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칭의 변경은 기관의 위상변화와 소속 직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원이 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재정안정화 방안

□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예산지원 현황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지원 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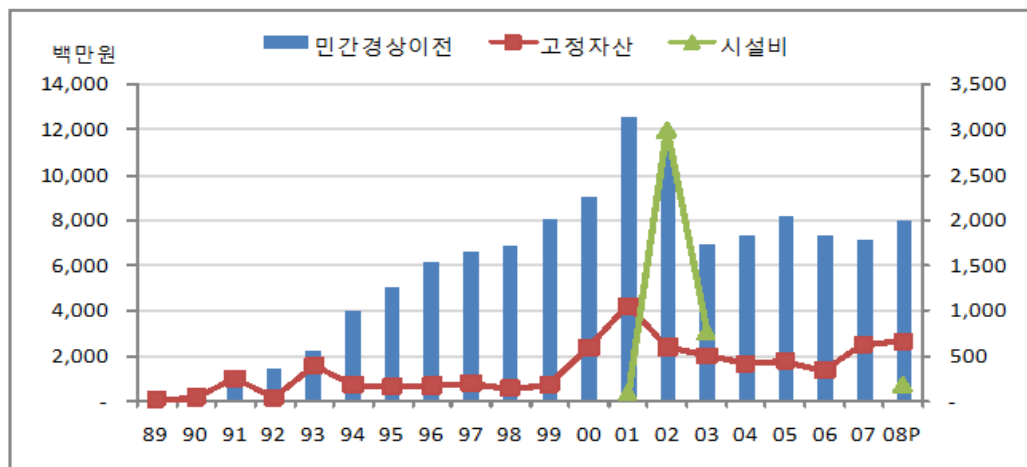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지원 예산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 1,078백만원에서 2008년 16,225백만원으로 약 1,405% 증가되었다.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지원 예산중 고정자산 누적액은 7,105백만원으로 1989년부터 연평균 355백만원의 고정자산이 지원되었으며 정부의 축발기금에 귀속된 자산이다.
- 2001년에서 2003년까지와 2008년의 시설비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사옥의 신축 및 구사옥 철거에 소요되었다.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인력 의존율이 큰 사업으로서 지원예산 내에 별도의 사업비 편성이 없으며 고정자산과 시설비를 제외한 민간경상이전 예산의 약 80%가 인건비 소요액이다.

< 표 V-1 >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시점부터의 사업예산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정부 보조금 | | | | 등급판정 수수료 | 총 계 |
|---------|---------|-------|-------|---------|-------------|---------|
| | 민간경상이전 | 고정자산 | 시설비 | 소 계 | | |
| 1989 | 63 | 25 | - | 88 | - | 88 |
| 1990 | 251 | 48 | - | 299 | - | 299 |
| 1991 | 829 | 249 | - | 1,078 | - | 1,078 |
| 1992 | 1,458 | 35 | - | 1,493 | - | 1,493 |
| 1993 | 2,273 | 397 | - | 2,670 | - | 2,670 |
| 1994 | 3,995 | 184 | - | 4,179 | - | 4,179 |
| 1995 | 5,113 | 170 | - | 5,283 | - | 5,283 |
| 1996 | 6,198 | 176 | - | 6,374 | - | 6,374 |
| 1997 | 6,631 | 202 | - | 6,833 | - | 6,833 |
| 1998 | 6,912 | 151 | - | 7,063 | - | 7,063 |
| 1999 | 8,071 | 191 | - | 8,262 | - | 8,262 |
| 2000 | 9,021 | 593 | - | 9,614 | - | 9,614 |
| 2001 | 12,552 | 1,060 | 102 | 13,714 | - | 13,714 |
| 2002 | 11,270 | 605 | 3003 | 14,878 | - | 14,878 |
| 2003 | 6,973 | 508 | 766 | 8,247 | 4,926 | 13,173 |
| 2004 | 7,348 | 420 | - | 7,768 | 5,291 | 13,059 |
| 2005 | 8,177 | 451 | - | 8,628 | 5,027 | 13,655 |
| 2006 | 7,377 | 344 | - | 7,744 | 6,470 | 14,214 |
| 2007 | 7,129 | 628 | - | 7,757 | 7,191 | 14,948 |
| 2008(P) | 8,009 | 668 | 181 | 8,858 | 7,367 | 16,225 |
| 총 계 | 119,650 | 7,105 | 4,052 | 130,807 | 36,272 | 167,079 |

< 그림 V-1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지원 예산의 종류별 투입 추이



- 민간경상이전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20%의 예산은 축산물등급판정업무 및 판정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에 소요되었다.
- 2003년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개시 이후 사업예산의 정부보조금 및 등급판정수수료 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 표 V-2 > 사업예산의 정부보조금 및 등급판정수수료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P | 평균 |
|-------|--------|--------|--------|--------|--------|--------|--------|
| 계 | 13,173 | 13,059 | 13,617 | 14,192 | 14,918 | 16,225 | 14,801 |
| 국가보조금 | 8,247 | 7,768 | 8,590 | 7,722 | 7,727 | 8,858 | 8,414 |
| 수수료 | 4,926 | 5,291 | 5,027 | 6,470 | 7,191 | 7,367 | 6,387 |
| 보조비율 | 62.6 | 59.5 | 63.1 | 54.4 | 51.8 | 54.6 | 57.1 |
| 수수료비율 | 37.4 | 40.5 | 36.9 | 45.6 | 48.2 | 45.4 | 42.9 |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수료부담원칙에 입각한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개시

- 1989년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이후 2002년까지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운영을 위한 일체의 재원이 국가보조금(축발기금)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와 WTO에 의한 농업부문 보조금 감축 협상에 따라 등급판정제도 운영 재원의 일부를 등급판정 신청자가 부담하는 등급판정수수료 징수가 2003년부터 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표 V-3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단가 및 조정 내역

| 구 분 | 2002년 단가 확정 | 2005년 단가 확정 | 2006년 단가 확정 | 조정내역 |
|-------|-------------|-------------|-------------|---------|
| | 2003년 반영 | 2006년 반영 | 2007년 반영 | |
| 소 | 1,600원/두 | 2,000원/두 | - | 25% 인상 |
| 돼지 | 300원/두 | 400원/두 | - | 33% 인상 |
| 계란 | 50천 원/100천개 | 50천 원/50천개 | - | 100% 인상 |
| 부분육확인 | - | 300원/BOX | - | 신규징수 |
| 닭 | - | - | 70,000원/7천수 | 신규징수 |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단가는 2002년 최초 단가책정이후 현재까지 5개년 간 2005년 소 25%, 돼지 33%, 계란 100%의 1회 단가 인상이 있었으며 이는 2006년부터 반영되어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다.
- 2005년 등급판정수수료 품목에 부분육등급확인 수수료가 추가되었으며 2006년에는 닭고기등급판정수수료가 추가 고시됨으로써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상 품목은 2003년 최초 3개 품목에서 2006년 4개 품목, 2007년에는 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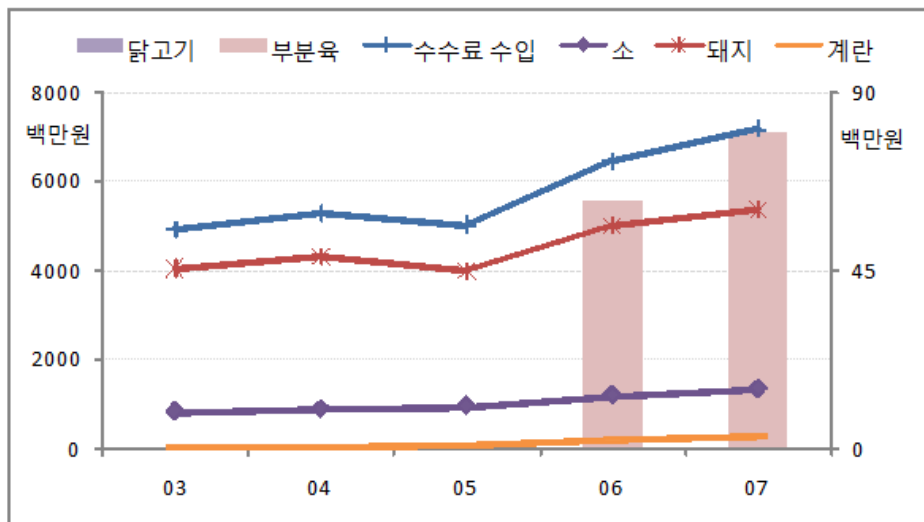
< 표 V-4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소 | 830 | 906 | 961 | 1,209 | 1,350 |
| 돼지 | 4,059 | 4,336 | 4,006 | 5,003 | 5,378 |
| 계란 | 36 | 49 | 60 | 195 | 286 |
| 닭고기 | - | - | - | - | 97 |
| 부분육확인 | - | - | - | 63 | 80 |
| 계 | 4,926 | 5,291 | 5,027 | 6,470 | 7,191 |

-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자립을 강화 정책과 맞물려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가 2003년부터 징수 개시됨으로써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운영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재정자립율은 제도도입 이후 2002년까지 0%에서 2003년 이후 최저 36.9%에서 최고 48.2%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증가, 가축질병 발생, 사료값 인상 등 어려워지는 국내축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판정제도의 최대 수요자인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인 등급판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및 인상에 대한 생산농가의 거부감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림 V-2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징수 추이



- 위 표에서 보듯이 2006년 소 및 돼지등급판정수수료의 단가인상에 따라 타 품목에 비하여 소 및 돼지등급판정수수료의 수입추이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5 > 품목별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점유율

<단위 : %>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소 | 16.9 | 17.1 | 19.1 | 18.7 | 18.8 |
| 돼지 | 82.4 | 82.0 | 79.7 | 77.3 | 74.8 |
| 계란 | 0.7 | 0.9 | 1.2 | 3.0 | 4.0 |
| 닭고기 | - | - | - | - | 1.3 |
| 부분육확인 | - | - | - | 1.0 | 1.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품목별 점유율은 2007년 시점에서 소 19%, 돼지 75%, 계란 4% 닭고기 및 부분육확인이 각각 1%대를 점유하고 있는바 FTA 확대와 쇠고기수입물량 확대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중 소 및 돼지의 생산 위축은 등급판정수수료의 94%를 점유하는 등급판정 의무품목의 위축으로 이어져 등급판정제도 운영을 위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재정자립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주요국의 축종별 등급판정수수료 징수체계 및 단가 검토

- 미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등급제품의 유통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수수료 징수
 - 등급판정사와 관리감독자의 급여 등을 포함한 비용을 충당
 - 두수보다는 등급판정업무 투입시간을 기준으로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
 - 1946년 AMA(농산물유통법)에 의해 서비스의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
 - 수수료가 적절하고 합당한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고용자의 임금과 이익을 위해 대략적으로 81%를 계산하고 있으며, 임금과 비용이 상승한 만큼 수수료를 인상한다.

< 표 V-6 > 시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소·돼지등급판정수수료 단가

| 구 분 | 상주 여부 | 서비스의 종류 | 수수료 | 비고 |
|---------------------|--------------|-----------|-------------------------|--|
| 소 및 돼지도체 등급판정 | 상주 (계약) | - 일과시간 | 시간당 \$45 | ※ 일과시간 : 오전6시~오후6시 ※ 휴일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 | - 일과시간외근무 | 시간당 \$57 | |
| | | - 휴일근무 | 시간당 \$90 | |
| | 비상주 (비계약) | - 일과시간 | 시간당 \$52 | |
| | | - 일과시간외근무 | 시간당 \$57 | |
| | | - 휴일근무 | 시간당 \$90 | |
| 계란 및 닭고기 등급판정 | 상주 | - 서비스 신청비 | \$310 | 일회성 경비 |
| | | - 일과시간 | 시간당 \$29.96 | |
| | | - 행정수수료 | MIN\$225 ~MAX\$2,625 | 닭1파운드당 \$0.00035 계란 30-dozen당 \$0.044 |
| | 비상주 | - 일과시간 | 시간당 \$29.96 | |
| | | - 행정수수료 | \$260 | |
| | 재등급판정 | - 일과시간 | 시간당 \$51.32 | |
| | | - 휴일근무 | 시간당 \$59.12 | |

- 캐나다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단가는 도체 및 시간 단가를 혼용하고 있으며 돼지등급판정의 경우 시간당 등급판정 규모를 감안한 도체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계란과 닭의 경우는 주평균 판정물량을 기준으로 연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표 V-7 > 시간 및 판정규모를 기준으로 한 캐나다의 등급판정수수료 단가

| 구 분 | 서비스의 종류 및 주평균 판정물량 | 수수료 |
|------|---|----------------|
| 소도체 | - 송아지, 양, 들소의 등급판정 및 등급표시 모니터링 | 15분당 \$13 |
| | - 도체 등급판정 | 도체당 \$1.25 |
| | - 도체 등급표시 모니터링 | 15분당 \$13 |
| 돼지도체 | - 시간당 등급판정두수 250두 미만 작업장에서의 등급판정과 등급표시 모니터링 | 15분당 \$13 |
| | - 시간당 등급판정두수 250두 이상 작업장에서의 등급판정과 등급표시 모니터링 | 도체당 \$0.22 |
| 계란 | 30,001box 이상(주평균 등급판정 물량) | 연간수수료 \$18,390 |
| | 25,001 ~ 30,000 | \$16,860 |
| | 20,001 ~ 25,000 | \$13,790 |
| | 15,001 ~ 20,000 | \$11,920 |
| | 10,001 ~ 15,000 | \$8,515 |
| | 8,001 ~ 10,000 | \$6,130 |
| | 6,001 ~ 8,000 | \$4,770 |
| | 4,001 ~ 6,000 | \$3,410 |
| | 2,001 ~ 4,000 | \$2,050 |
| | 1,001 ~ 2,000 | \$1,530 |
| | 501 ~ 1,000 | \$770 |
| | 101 ~ 500 | \$480 |
| | 50 ~ 100 | \$200 |
| | 50box미만(1box=180개) | \$135 |
| 닭고기 | - 등급표시 모니터링 | 시간당 \$44 |
| | 5,000미만(주평균 도축물량/수) | 연간수수료 \$750 |
| | 5,000 ~ 14,999 | \$1,000 |
| | 15,000 ~ 29,999 | \$1,250 |
| | 30,000 ~ 74,999 | \$1,500 |
| | 75,000 이상 | \$2,000 |

- 한·미·일 3개국의 등급판정수수료 단가를 원화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국의 등급판정수수료 단가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편의상 국내에서 등급판정시의 시간당 적정판정물량('07년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경영평가실적 보고서상 표준 직무시간 설정표의 제시 자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환산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소 : 28두/시간, 돼지 : 140두/시간, 계란 : 10,000개/시간, 닭고기 : 2,000수/시간
- 국내 등급판정 시 1일 1인당 평균 시간외근무 발생시간 0.5시간(07년) 적용
- 환율 : '08년 9월 1달러당 평균 환율 1,150원 적용<외환은행 고시 환율>

< 표 V-8 > 주요 3개국의 축종별 등급판정수수료 단가

<단위 : 원>

| 구 분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
| 소 | | 2,000/두 | 84,525/시간/1인 | 5,443원/두 |
| 돼지 | | 400/두 | 84,525/시간/1인 | 1,048원/두 |
| 계란 | | 1/개 | 34,450/시간 | - |
| 닭 | | 10/수 | 34,450/시간 | - |
| 환산 | 소 | 2,000/두 | 3,019/두 | 5,443원/두 |
| | 돼지 | 400/두 | 604/두 | 1,048원/두 |
| | 계란 | 1/개 | 3.4/개 | - |
| | 닭 | 10/수 | 17.2/수 | - |

※ 미국은 행정업무 등 부대비용 제외

- 주요 3개국의 등급판정단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국내의 등급판정수수료 단가 수준이 비교 대상국가에 비해 상당 수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수수료 징수체계가 시간외 및 휴일근무 가산, 행정수수료 징수, 서비스신청료 징수 등의 혼합체계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값의 수준이 50%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소도체등급판정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66.2%, 일본에 비해 36.7% 수준
- 돼지도도체등급판정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66.2%, 일본에 비해 38.2% 수준
- 계란등급판정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29.4% 수준
- 닭고기등급판정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58.1% 수준

- 등급판정수수료징수 대상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V-9 > 주요국가별의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대상자 구분

| 구 분 | 한국 | 미국 | 덴마크 | 캐나다 | 일본 |
|-----------|---------------------------|---------------------|-----|-----------|--------------------------|
| 수수료징수 대상자 | 등급판정 신청자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 | 등급판정 신청자 (주요 팩커) | 생산자 | 출하자 또는 팩커 | 등급판정 신청자 (생산자 또는 출하자) |

- 우리나라의 등급판정수수료 직접 납부 대상자의 비율은 생산자 12.3%, 유통업자 87.7%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8.1.~11, 등급판정물량 용도코드 분류 ; 도매시장상장 코드 = 생산자, 그 외 = 유통업자, 등급판정신청두수를 기준으로 분류함)

< 표 V-10 > 우리나라 등급판정수수료 납부 대상자 구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생산자 | 유통업자 |
|----------|------|------|
| 소도체등급판정 | 35.3 | 64.7 |
| 돼지도체등급판정 | 14.0 | 86.0 |
| 계란등급판정 | - | 100 |
| 닭고기등급판정 | - | 100 |

※ 생산자에는 도매시장 계통출하자인 생산자단체 및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되며 유통업체에는 생산자단체 운영 육가공장 및 판매장이 포함됨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수료정책 제언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편중율과 매출액 증가율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의무품목에 편중된 수수료 점유비를 축소하고 자율품목의 수수료 점유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수료 수입의 품목별 편중율을 개선하고 등급판정제도의 수요확대를 통한 대상 물량과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수수료 매출액을 증가시켜 소 및 돼지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재무적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표 V-11 > 수수료 매출액 대비 자율품목 점유율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평균 |
|--------------|------|-------|------|------|------|-----|
| 자율품목 수수료 점유율 | 2.2% | 2.6 | 2.8 | 5.4 | 9.1 | 4.4 |
| 수수료 매출액 증가율 | - | △3.5% | △5.4 | 32.9 | 8.7 | 8.2 |

-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지속적인 원가관리 실시

- 축산물등급판정제도운영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 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내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서비스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서비스 원가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1개년 동안 판정단위당 수수료 수입단가는 0.008% 증가한 반면 판정단위당 등급판정 원가 단가는 12.956% 감소하였으며 기관전체의 영업손실이 2.531% 감소되었다. 이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자체의 원가절감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현재 147% 이르는 등급판정수수료 수입대비 원가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 표 V-12 > 2006년 및 2007년 등급판정서비스 원가관리 결과

<단위 : 원, %>

| 구 분 | 수입대비 원가비율 | | | 1인당 인건비 대비 수수료수입 비율 | | |
|----------|-----------|--------|--------|---------------------|-------|-------|
| | 06년 | 07년 | 증감율 | 06년 | 07년 | 증감율 |
| 원가 합계 | 158.73 | 147.43 | △11.30 | 72.07 | 75.89 | 3.82 |
| 소·돼지 수수료 | 155.51 | 135.35 | △20.16 | 73.64 | 82.66 | 9.02 |
| 계란 수수료 | 231.98 | 277.27 | 45.29 | 48.54 | 40.38 | △8.16 |
| 닭고기 수수료 | - | 337.39 | - | - | 33.13 | - |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적정 단가 책정

- 축산물등급판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흘렀으며 국내 축산업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제도운영의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정부의 재정자립화 및 효율화 정책과 불리한 축산환경에 따른 생산자의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에 맞물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급판정 수수료 단가를 면면히 유지하고 있는 실상이며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자산의 취득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기본적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축적도 없이 인력위주로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추후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수차에 걸친 정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경영효율성 제고와 재정자립을 향상을 위한 과제로 자본금 및 고정자산 취득, 수수료단가 인상, 신규수익사업 전개, 수수료수입기반 다변화의 필요성을 지적받아오고 있으나 현재의 등급판정수수료 수준으로는 이 모든 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적정한 등급판정수수료 단가를 책정하고 국내축산환경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사용자부담의 분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적정 등급판정수수료 단가의 책정은 '07년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외부회계감사기관을 통해 산출한 축종별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대비 원가(적정단가1)와 인건비 대비 수수료비율(적정단가2)로 이원화 하였다.

< 표 V-13 > 2007년 등급판정서비스 원가산출 결과적용 적정단가 책정

<단위 : 원, %>

| 구 분 | 수입 대비 원가 | | | 1인당 인건비 대비 수수료수입 비율 | | |
|---------|----------|----------|-------|---------------------|---------|-------|
| | 단가 | 07년 원가비율 | 적정단가1 | 07년 수입비율 | 수수료 가산율 | 적정단가2 |
| 소 수수료 | 2,000 | 135.35 | 2,700 | 82.66 | 17.34 | 2,400 |
| 돼지 수수료 | 400 | 135.35 | 550 | 82.66 | 17.34 | 500 |
| 계란 수수료 | 1 | 277.27 | 4 | 40.38 | 59.62 | 2 |
| 닭고기 수수료 | 10 | 337.39 | 30 | 33.13 | 66.87 | 20 |

※ 수수료수입 산출 간소화를 위해 소숫점 이하는 절하·절상하고 일, 십, 백 단위로 조정

※ 적정단가1 = 현재단가 × 원가비율%

※ 적정단가2 = 현재단가 + (현재단가 × 가산율% <100 - 수입비율>)

- 위의 산출결과를 미국과 일본의 현재 수수료단가로 비교시 다음과 같은 대비결과가 나타난다.

< 표 V-14 > 축종별 등급판정수수료 적정단가의 외국과의 비율

<단위 : 원>

| 구 분 | 적정단가 | 미 국 | | 일 본 | | |
|-----------|------|---------|---------|-------|----------|------|
| | | 단가 | 대비율 | 단가 | 대비율 | |
| 적정 단가1 | 소 | 2,700/두 | 3,019/두 | 89.4 | 5,443원/두 | 49.6 |
| | 돼지 | 550/두 | 604/두 | 91.1 | 1,048원/두 | 52.4 |
| | 계란 | 4/개 | 3.4/개 | 117.6 | - | - |
| | 닭 | 30/수 | 17.2/수 | 174.4 | - | - |
| 적정 단가2 | 소 | 2,400/두 | 3,019/두 | 79.4 | 5,443원/두 | 44.0 |
| | 돼지 | 500/두 | 604/두 | 82.7 | 1,048원/두 | 47.7 |
| | 계란 | 2/개 | 3.4/개 | 58.8 | - | - |
| | 닭 | 20/수 | 17.2/수 | 116.3 | - | - |

- 위의 산출결과를 축산물등급판정소의 2009년도 판정계획물량에 산입시 다음과 같은 대조결과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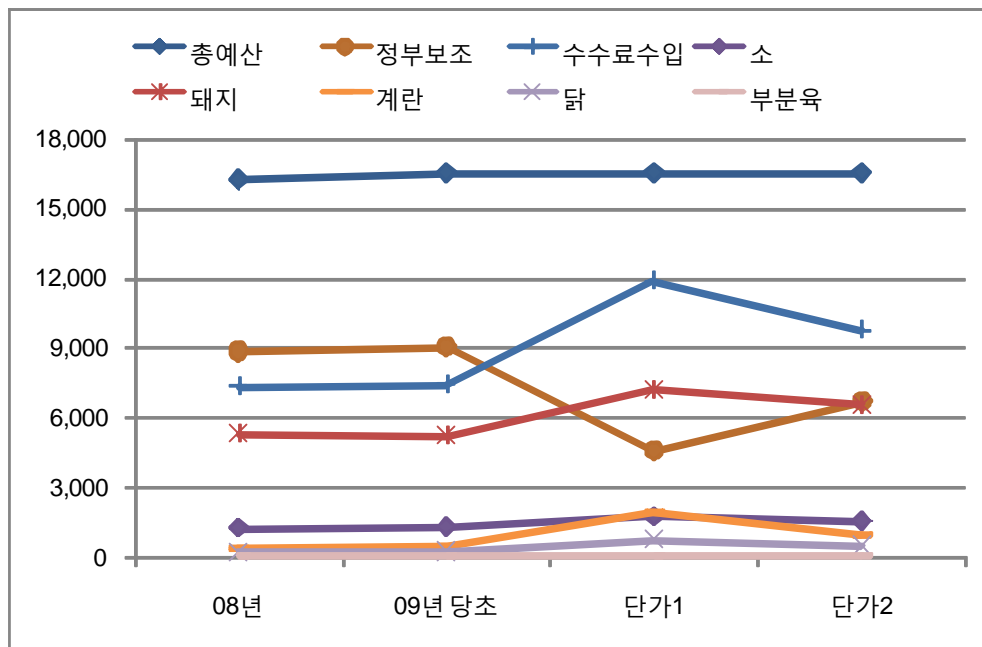
< 표 V-15 > 적정단가 인상에 따른 2009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변동 추정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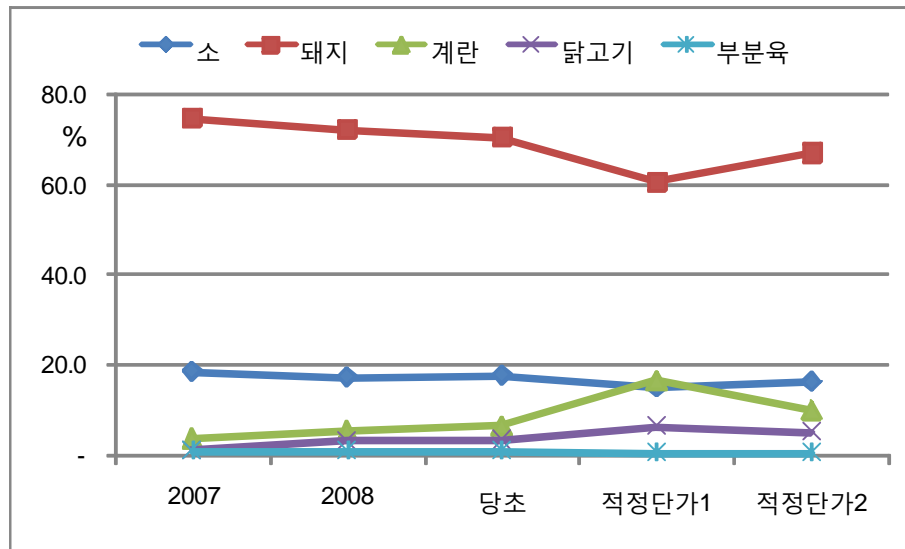
| 구 분 | 계획 물량 | 09년 수수료수입 계획 | | 적정단가1 | | 적정단가2 | |
|-----|----------|--------------|------|--------|------|-------|------|
| | | 수입액 | 점유비 | 수입액 | 점유비 | 수입액 | 점유비 |
| 소 | 688천두 | 1,335 | 17.9 | 1,802 | 15.1 | 1,602 | 16.4 |
| 돼지 | 13,568천두 | 5,264 | 70.7 | 7,239 | 60.8 | 6,580 | 67.2 |
| 계란 | 514백만개 | 499 | 6.7 | 1,994 | 16.8 | 997 | 10.2 |
| 닭 | 27백만수 | 262 | 3.5 | 786 | 6.6 | 524 | 5.3 |
| 부분육 | 284천박스 | 85 | 1.2 | 85 | 0.7 | 85 | 0.9 |
| 계 | | 7,445 | 100 | 11,906 | 100 | 9,788 | 100 |

※ 부분육등급판정확인수수료는 적정단가 산출을 하지 않고 적용

< 그림 V-3 > 적정단가 책정에 따른 2009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변동 추이



< 그림 V-4 > 적정단가 인상에 따른 2009년도 등급판정수수료 수입점유 추이



- 원가산출결과를 반영한 적정단가 책정시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액의 정부보조금과 수수료매출액 비율(재정자립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정부보조금 : 수수료매출액 → (당초) 54.9 : 45.1 → (적정단가1) 27.9 : 72.1 → (적정단가2) 40.7 : 59.3

- 원가산출결과를 반영한 적정단가 책정시 축산물등급판정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예산액 대비 수수료매출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인건비 대비 수수료수입 → (당초) 61.6% → (적정단가1) 98.6% → (적정단가2) 81.0%

- 적정단가1에서는 계란등급판정수수료총액이 소등급판정수수료총액을 1.8%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단계적 인상과 징수체계 개편

- 등급판정제도운영의 성과가 농가소득 증대와 유통의 원활 및 소비자의 국내축산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도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규모와 국민경제의 이익을 고려하면 등급판정수수료의 서비스 직접 수요자 부담이 제도운영의 성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또한, 국내 등급판정수수료 납부대상자 분류결과에 의하면 소의 경우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비율이 4:6, 돼지의 경우는 1:9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품목으로 환산할 경우 생산자가 12.3%, 유통업자가 8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축산물생산자가 등급판정수수료를 직접비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유통업자가 직접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리한 축산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수수료의 현실화 정책이 국내 축산생산농가에 미치는 부담도 유통비용이 생산농가에게 전가되는 거래관행만 개선된다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내보다 등급판정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운영해온 미국(1927년 제도운영 개시)과 일본(1964년 제도운영 개시)의 수수료징수체계를 일부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등급제품의 유통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비용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수시로 수수료 단가를 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간외 및 휴일 등급판정에 대한 가산수수료를 철저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식육격부협회는 정부의 자본금 출연과 자산운용수익, 정부보조금 및 위탁사업수수료와 함께 우리나라의 등급판정 수수료단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수료단가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본의 등급판정수수료단가는 국내보다 소는 272%, 돼지는 262% 높음)

- 이를 감안하여 국내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단가도 이전 2개년간의 원가산출을 바탕으로 2개년 원가 평균액을 적용한 수수료 단가 현실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산서에 의한 원가산출은 해당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수입과의 차이율을 계산하게 되므로 물가상승을 및 사업 투입액에 따라 원가율이 변동된다. 위의 적정단가1 및 2의 산출결과를 보면 수입비율과 인건비대비 원가비율로 산출된 적정단가액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순수 등급판정에 투입된 재원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며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배제된 단가이다. 적정단가1과 2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공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

- 등급판정수수료의 현실화 토대를 서비스원가를 근거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책정된 2가지 단가의 인상에 대하여는 현재의 축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단가 → 적정단가2(인건비 대비 수입원가) → 적정단가1(수입 대비 원가)로의 인상경로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급판정수수료 인상 시기는 2009년도에 인상논의를 통해 2010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9년도에 등급판정제도의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인식도 제고를 통해 수수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 축적 및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와 함께 2007년도 및 2008년도 원가산출결과를 고려한 적정 단가를 책정하여 2010년부터 인상된 단가(적정단가2)로의 전환을 단행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단, 적정단가1로 고정하기 보다는 적정단가2 사이의 절충을 통한 단가책정도 고려해 볼만하다.

- 또한, 시간외 및 휴일 등급판정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적정단가 1과의 차액분을 일부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장기적으로 자율등급판정품목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작업장 지정 수수료 도입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이와 함께 등급판정제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인건비 차액과 제도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정부보조율은 일정부분 유지하되 제도운영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현재의 정부 귀속 고정자산의 축산물등급판정소 불하와 연차적 자본금 축적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
2.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2007. 위기의 도축장 탈출구는 없는가?
3.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8. 식육편람
4.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8. 2차 육가공산업 및 외식산업의 실태와 소비확대 방안
5.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월간 축산물등급판정통계
6.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7.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고객만족 우수사례
8.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안내
9.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 축산물등급판정소 혁신리더 워크숍(6월)
10.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축산물등급판정소 혁신리더 워크숍(7월)
11.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 경영평가 및 혁신대회
12.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경영실적보고서

부 록 1. 축산물 등급표시 관련 법령 조문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①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 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 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식품부 고시 제2005-14호(축산물등급거래규정)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13과 같다.

※ [별표13] 3호(축산물판매업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등급·용도·도축장명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부위명·등급·원산지·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도축장명·용도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 및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역대 ‘소매단계 식육구분 방법’ 관련규정 조문

□ 농식품부 고시 제1995-114호(‘96.1.4)

- 제6조(부위별 표시방법 등)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의 부위별 표시방법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분할 상태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소분할상태의 세부부위명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 세부부위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대분할 부위명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등급별 표시방법 및 지역 등) ①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등급별 표시방법은 도체등급판정시 등급기준인 1, 2, 3, 등의등급 대신에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명칭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도체상태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등외’로 의무표시 판매하되, A, B, C, D등급은 ‘기준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등급별로 의무 표시하여야 할 부위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심, 채끝부위, 돼지고기의 경우 목심, 삼겹살 부위로 한다.
- ③ 식육판매업소에서 등급별로 표시 판매하여야 할 지역은 축산물등급화 거래규정에 의한 등급화 거래 고시지역으로 하고, 소매단계의 등급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등급화 거래 고시지역 | 등급별 명칭 | |
|----------|------------------|------------------------------|-----------------------------|
| | | 도체등급기준 | 소매단계 등급 |
| 국내산 쇠고기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도 | 1 등급 2 등급 3 등급 등외등급 | 특상등급 상 등급 중 등급 등 외 |
| 국내산 돼지고기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도 | A, B, C, D등급 E등급 | 기준등급 등 외 |

□ 농식품부 고시 제1996-69호('96.9.18)

- 제6조(등급표시방법 및 지역) 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등심, 채끝 부위에 대하여 도체등급판정 결과인 1, 2, 3, 등외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에서 희망할 경우 특상, 상, 중, 등외등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할 업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로 한다.

□ 농식품부 고시 제1998-42호('98.7.10)

- 제4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대분할 부위인 등심, 채끝과 소분할 부위인 윗등심살, 아랫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및 채끝살은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대분할 부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에 대한 부위별 등급표시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등급의 표시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으로 표시하거나 1⁺등급은 특상등급(1⁺), 1등급은 특상등급(1), 2등급은 상등급, 3등급은 중등급, 등외등급은 등외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표시한다.

□ 농식품부 고시 제2004-67호('04.11.6)

-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 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등급표시는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표시한다. 다만, 돼지도체 중 추가로 냉도체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A(1⁺)등급, A(1)등급, A(2)등급, A(3)등급, B(1⁺)등급, B(1)등급, B(2)등급, B(3)등급, C(1⁺)등급, C(1)등급, C(2)등급, C(3)등급, D(1⁺)등급, D(1)등급, D(2)등급, D(3)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농식품부 고시 제2007-82호('07.12.10) 전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5-50호, 200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농 립 부 장 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육의 종류) 식육은 국내산고기와 수입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젓소고기·육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판매대상은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소, 돼지의 식육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돼지고기도 적용한다.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등) ①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돼지고기의 분할 정형기준 중 탕박 처리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돈피(털을 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다)를 제거하지 않고 분할 정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부위별로 정한 지방두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식육판매업소는 제1항에 따른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며,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칭 다음에 ()를 이용하여 그 명칭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D등급)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E등급)로 표시한다.

제6조(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①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국내산고기 및 수입고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로,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중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젓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젓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젓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젓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나 규정에 의한 소도체 검사시 쇠고기 종류별로 구분한 색깔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쇠고기 종류에 의한다.

제7조(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 등) ①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별표4에 의거 식육의 부위·등급·용도 및 원산지(쇠고기의 종류와 수입 생우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생우의 수출국)와 판매가격(100g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된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의 표시항목이 하나의 표지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식육판매표지판은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하거나 모양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부위명란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분할 부위명칭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한다.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

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③“등급”란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명을 표시한다. 다만,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④“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내에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다만, 수입생우에서 도축·생산된 고기의 경우 ()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부 록 2. 등급별 출현 경향 및 도매시장가격 차이

□ 한우 육질등급별 출현경향 및 경락가격 차이

- '97년 1⁺등급 신설, '04년 1⁺⁺등급 신설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한 결과 1등급 이상이 '93년 10.7% 대비 5배 급증
- 1⁺⁺등급과 3등급간 경락평균가격이 2배 차이
- 더구나 생체 650kg 출하시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2,852천원

(단위 : %, 원, 천원)

| 육질등급 | 연 도 | | | | | 경락가격 | |
|-----------------|------|------|------|------|------|---------|-------|
| | '93 | '98 | '05 | '07 | '08 | 평균 | 가격차이 |
| 1 ⁺⁺ | % | | 9.8 | 7.5 | 7.3 | 17,125원 | |
| 1 ⁺ | | 3.4 | 15.2 | 18.4 | 19.2 | 15,523 | 613천원 |
| 1 | 10.7 | 11.9 | 22.9 | 25.0 | 27.1 | 14,114 | 1,153 |
| (1등급이상) | 10.7 | 15.3 | 47.9 | 50.9 | 53.6 | | |
| 2 | 49.2 | 28.2 | 24.1 | 24.5 | 25.5 | 12,298 | 1,848 |
| 3 | 34.5 | 54.0 | 27.3 | 23.5 | 20.1 | 9,676 | 2,852 |
| 등외 | 5.6 | 2.5 | 0.7 | 1.1 | 0.8 | 5,496 | 4,452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주) 1. 한우 기준 ('08.1~10월)
 2. 경락가격은 '08.1~10월까지 농협서울공판장 평균가
 3. 가격차이는 1⁺⁺등급 기준, 생체 650kg(도체율 58.9% 적용)

□ 한우 육량등급별 출현경향 및 경락가격 차이

- 출하체중 및 거세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97년, '04년 2차례 육량지수를 보정하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B등급 이상 출현율이 일정

(단위 : %, 원, 천원)

| 육량등급 | 연 도 | | | | | 경락가격 | |
|---------|------|------|------|------|------|---------|--------|
| | '93 | '98 | '05 | '07 | '08 | 평균 | 가격차이 |
| A | 8.7 | 42.7 | 47.4 | 40.2 | 37.0 | 13,983원 | |
| B | 76.5 | 50.1 | 41.4 | 46.5 | 49.6 | 14,138 | △101천원 |
| (B등급이상) | 85.2 | 92.8 | 88.8 | 86.7 | 86.6 | | |
| C | 9.2 | 4.7 | 10.5 | 12.2 | 12.6 | 13,615 | 141 |
| D(등외) | 5.6 | 2.5 | 0.7 | 1.1 | 0.8 | 5,496 | 3,249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돼지고기 육질등급별 출현경향 및 경락가격 차이

- 1등급 이상 고급육이 꾸준히 증가하여 '08.10월 현재 70.7%
- 생체 110kg 출하시 1⁺등급과 3등급간 경락가격이 86천원 차이

(단위 : %, 원, 천원)

| 육질등급 | 연 도 | | | | 경락가격 | |
|----------------|------|---------|---------|--------|--------|------|
| | '07 | '08.1~6 | '08.7~9 | '08.10 | 평균 | 가격차이 |
| 1 ⁺ | 1.0 | 1.2 | 1.2 | 1.6 | 3,870원 | 17천원 |
| 1 | 63.1 | 63.9 | 64.2 | 69.1 | 3,662 | |
| (1등급이상) | 64.1 | 65.1 | 65.4 | 70.7 | | |
| 2 | 29.6 | 28.8 | 28.5 | 23.9 | 3,313 | 46 |
| 3 | 2.3 | 1.9 | 1.9 | 1.6 | 2,828 | 86 |
| 등외 | 4.0 | 4.2 | 4.2 | 3.8 | 2,760 | 91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주) 1. '07.7월 육질등급제 시행

2. 경락가격은 '08.10월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

3. 가격차이는 1⁺등급 기준, 생체 110kg(도체율 74.9% 적용)

□ 육량등급별 출현경향 및 경락가격 차이

- B등급 이상 규격돈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08.10월 현재 68.6%
- 생체 110kg 출하시 A등급과 D등급간 경락가격이 55천원 차이

(단위 : %, 원, 천원)

| 육량등급 | 연 도 | | | | 경락가격 | |
|---------|------|---------|---------|--------|--------|------|
| | '07 | '08.1~6 | '08.7~9 | '08.10 | 평균 | 가격차이 |
| A | 36.1 | 36.4 | 36.8 | 38.3 | 3,747원 | 22천원 |
| B | 29.9 | 29.8 | 30.5 | 30.3 | 3,599 | |
| (B등급이상) | 66 | 66.2 | 67.3 | 68.6 | | |
| C | 17.3 | 16.5 | 17.2 | 15.7 | 3,424 | 37 |
| D | 12.8 | 13.1 | 11.3 | 11.9 | 3,201 | 55 |
| E(등외) | 3.9 | 4.2 | 4.2 | 3.8 | 2,760 | 91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 닭고기 육질등급별 출현경향 및 경락가격 차이

○ 1등급 이상 고급육이 '08.10월 현재 87.5%

(단위 : %, 원, 천원)

| 육질등급 | 연 도 | |
|----------------|------|------|
| | '07 | '08 |
| 1 ⁺ | 40.2 | 31.1 |
| 1 | 55.4 | 56.4 |
| (1등급이상) | 95.6 | 87.5 |
| 2 | 4.4 | 12.5 |
| 계 | 100 | 100 |

주) 1. '07.3.26일 등급판정 재개 ('08년은 1~10월까지 기준)

2. 판정율(도축수수 대비 판정수수, '08.8월기준) 3.6% 대비 출현실적임

□ 계란 육질등급별 출현경향 및 경락가격 차이

○ 1등급 이상 고급계란이 '08.10월 현재 98.9%

(단위 : %, 원, 천원)

| 육질등급 | 연 도 | | | |
|----------------|------|------|------|------|
| | '05 | '06 | '07 | '08 |
| 1 ⁺ | 81.0 | 80.0 | 84.9 | 86.0 |
| 1 | 16.4 | 16.9 | 13.3 | 12.9 |
| (1등급이상) | 97.4 | 96.9 | 98.2 | 98.9 |
| 2 | 2.5 | 2.9 | 1.7 | 0.5 |
| 3 | 0.1 | 0.2 | 0.1 | 0.6 |
| 계 | 100 | 100 | 100 | 100 |

주) 1. '08년은 10월까지 집계 기준

2. 판정율(계란생산량 대비 판정개수, '08.8월기준) 2.6% 대비 출현실적임

부 록 3. 등급표시 개정에 소요되는 정책·사회적 비용 추정

- 등급표시 개정까지 22개월, 65억원 소요 예상
- 등급표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식육 품질을 쉽게 알게 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 등급표시 개정이 축산업 전반을 살피서 결정해야 하므로 어렵기도 하지만, 개정 이후에 국민이 변경된 등급표시를 수용하는데 까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은 단점

(단위 : 천원, 월)

| 추진일정(개요) | 소요비용 | 소요기간 | 비 고 |
|---------------|------------------|-----------|-----------------|
| ▪ 각계의 의견수렴 | 10,000 | 10월 | '08.3월부터 설문조사 등 |
| ▪ 개정(안) 마련 | 30,000 | 6 | 연구용역비 및 공청회비 |
| ▪ 관련법령 개정·공포 | - | 3 | |
| ▪ 제반준비(등급판정소) | 337,300 | 6 | 전산PG 개발 |
| | 275,400 | | 등급판정인기 제작 |
| | 20,000 | | 등급판정사 직무교육 |
| ▪ 대국민 홍보·교육 | 5,787,000 | 3 | (3개월 홍보비용임) |
| 계 | 6,459,700 | 22 | (법령 개정부터 6개월) |

※ 등급판정소 제반준비비 및 대국민 홍보비는 덧붙임 참조

□ 등급판정인 제작 비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작수량 | 단가 | 소요액 | 비 고(set구성) |
|------------|-------------------------------|---------|----------------|------------|
| 소 | 184set [(87개소*2set)+10set] | 1,050천원 | 193,200 | 7개 |
| 돼지 | 184 [(87개소*2set)+10set] | 300 | 55,200 | 2 |
| 닭 | 20 [14개소+6set] | 600 | 15,000 | 2 |
| 계란 | 25 [20개소+5set] | 600 | 12,000 | 2 |
| 합 계 | | | 275,400 | 13 |

※ 제작기간 : 3개월

<등급판정인 SET 구성>

| 구 분 | 현 재 | 개정(안) | 비 고 |
|-----|---|--|-----|
| 소 | (1 ⁺⁺ A, 1 ⁺⁺ B, 1 ⁺⁺ C), (1 ⁺ A, 1 ⁺ B, 1 ⁺ C), (1A, 1B, 1C), (2A, 2B, 2C), (3A, 3B, 3C), D, 결함 이상 7개 | (1A, 1B, 1C), (2A, 2B, 2C), (3A, 3B, 3C), (4A, 4B, 4C), (5A, 5B, 5C), D, 결함 이상 7개 | |
| 돼지 | (1, 2, A, B, C, D), (1 ⁺ , 3, E) 이상 2개 | (2, 3, A, B, C, D), (1, 3, E) 이상 2개 | |
| 닭 | (1 ⁺ , 2), (1) 이상 2개 | (1, 3), (2) 이상 2개 | |
| 계란 | (1 ⁺ , 1), (2, 3) 이상 2개 | (1, 2), (3, 4) 이상 2개 | |
| 합계 | 13 | 13개 | |

□ 등급판정 관련 전산PG 개발비용 및 소요일

○ 신규 프로그램 개발(개발자 8명, 230천원/1인 기준)

- 소요 기간과 비용 : 6개월, 337,300천원

○ 등급표시만 개정PG 개발(개발자 8명 기준. 230천원/1인 기준)

- 소요 기간과 비용 : 5개월, 295,000천원 소요

○ 등급표시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용 및 소요기간 산출

| 구 분 | | PG개수 | 시간(hr) | 소요일 | 소요비용(원) |
|--------------|------------|------|--------|-------|-------------|
| 현장프로그램 | 소 | 40 | 5 | 25 | 5,750,000 |
| | 돼지 | 40 | 5 | 25 | 5,750,000 |
| | 계란 | 40 | 5 | 25 | 5,750,000 |
| | 닭고기 | 40 | 5 | 25 | 5,750,000 |
| | 쇠고기 부분육 | 40 | 5 | 25 | 5,750,000 |
| | 돼지고기 부분육 | 40 | 5 | 25 | 5,750,000 |
| 핸드단말기 | 소 | 10 | 5 | 7 | 1,440,000 |
| | 돼지 | 10 | 5 | 7 | 1,440,000 |
| | 계란 | 10 | 5 | 7 | 1,440,000 |
| | 닭고기 | 10 | 5 | 7 | 1,440,000 |
| | 쇠고기 부분육 | 10 | 5 | 7 | 1,440,000 |
| | 돼지고기 부분육 | 10 | 5 | 7 | 1,440,000 |
| 본부 분석프로그램 | 소 | 50 | 8 | 50 | 11,500,000 |
| | 돼지 | 50 | 8 | 50 | 11,500,000 |
| | 계란 | 50 | 8 | 50 | 11,500,000 |
| | 닭고기 | 20 | 8 | 20 | 4,600,000 |
| | 쇠고기 부분육 | 20 | 8 | 20 | 4,600,000 |
| | 돼지고기 부분육 | 5 | 8 | 5 | 1,150,000 |
| 자동 분석 시스템 | 일 통계 분석 | 5 | 36 | 23 | 5,180,000 |
| | 월 통계 분석 | 5 | 36 | 23 | 5,180,000 |
| | 년 통계 분석 | 5 | 36 | 23 | 5,180,000 |
| | 돈육선물 통계 | 15 | 36 | 68 | 15,530,000 |
| | DB변환 | 50 | 36 | 225 | 51,750,000 |
| 경영프로그램 | 등급판정수수료 | 10 | 24 | 30 | 6,900,000 |
| 홈페이지 | 경매시황및 경락가격 | 300 | 3 | 113 | 25,880,000 |
| | 등급정보제공 | 900 | 3 | 338 | 77,630,000 |
| | 고객관리 시스템 | 300 | 3 | 113 | 25,880,000 |
| | 자료전송 시스템 | 100 | 3 | 38 | 8,630,000 |
| | 실시간 경매 시스템 | 10 | 3 | 4 | 870,000 |
| | E메일 전송 | 20 | 36 | 90 | 20,700,000 |
| 육류이력추적시스템 | | 40 | | 0 | 0 |
| 관련기관 협업 | AGRIX | 5 | | 0 | 0 |
| | 증권선물거래소 | 5 | | 0 | 0 |
| | 농 협 | | | 0 | 0 |
| | 기타 작업장 | | | 0 | 0 |
| 합계 | | | | 1,475 | 337,300,000 |

□ 등급표시방법 개정홍보 관련 비용산출

| 홍보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
| TV광고 (캠페인) | - SA급 13,200천원×30일×6회×2월 (9시뉴스 등 10%, 시청률 10%, 공익광고) - 광고 제작비 200,000천원 | 4,952,000천원 |
| | - TV프로그램 PPL광고 10,000천원×10회 (프로그램 제작지원, 아침마당 등) | 100,000천원 |
| 신문 광고 | - 주요일간지 11,000천원×5종×4회×2월 | 440,000천원 |
| | - 무가지 6,000천원×5종×4회×2월 | 240,000천원 |
| 포스터 | - 1천원×40천부(정육점 배부용) | 40,000천원 |
| 전 단 | - 300원×50천부 | 15,000천원 |
| 기타 | - 보도자료 배포 | |
| | - 교육청, 소비자단체, 축산기업중앙회 등에 공문 배포 | |
| 계 | | 5,787,000천원 |

※ 20년간 지속적으로 기존의 등급표시가 유지되었으므로 변경시 소비자에게 대중매체(TV)를 통한 홍보 필요

부 록 4.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전문)

농림부고시 제2007-40호

축산법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4] 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부고시 제 2004-66호, 2004.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농 립 부 장 관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시행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돼지·닭의 도체 및 계란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된 소·돼지·닭을 말한다.
3. “벌크(Bulk)포장”이라 함은 가금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된 닭을 중량에 따라 일정 수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도체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5. “파각란”이라 함은 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계란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소·돼지·닭의 도체, 닭고기부분육 및 계란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소도체 등급판정

제4조(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육량등급판정기준>

| 육량등급 | 육 량 지 수 |
|------|---------------------|
| A | 67.50 이상 |
| B | 62.00 이상 ~ 67.50 미만 |
| C | 62.00 미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육량지수는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부도1과 같이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1. 등지방두께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북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mm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등지방 두께가 1mm 이하인 경우에는 1mm로 한다.
2. 배최장근단면적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cm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cm²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과 배반극근은 제외한다.
3. 도체중량 :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kg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육량지수} = & 68.184 - [0.625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 + [0.130 \times \text{배최장근단면적(cm}^2\text{)}] \\ & - [0.024 \times \text{도체중량(kg)}] \end{aligned}$$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지수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소도체의 육량등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낮추거나 높여 최종 판정한다.

1.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춘다.
2.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인다.

제5조(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4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육질등급 예비판정기준>

| 근 내 지 방 도 | 예비등급 |
|-------------------------|--------------------|
| 근내지방도 번호 8 또는 9에 해당되는 것 | 1 ⁺⁺ 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 | 1 ⁺ 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 | 1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 | 2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 | 3등급 |

2. 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5에 의한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3. 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6에 의한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4.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1에 의한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5. 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에 의한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1. 육 색 : 부도5의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2. 지방색 : 부도6에 의한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3. 조직감 : 별표1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4. 성숙도 :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인 경우

제6조(소도체의 등외판정) 소도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로 판정한다.

1.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제7조(소도체의 등급표시)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된 육량등급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된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별표4와 같이 표시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D로 표시한다.

②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 결과, 결함이 있는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그 결함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 3 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8조(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① 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은 작업장과 가공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도체 또는 냉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한다.② 온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계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기계의 고장 등으로 기계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인력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제9조(등급판정기준 및 적용방법) ① 인력등급판정은 별표7내지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1. 규격등급은 별표7에 의한 1차 판정과 별표8에 의한 2차 판정을 한 후 1차 판정결과와 2차 판정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
2. 육질등급은 별표9에 의한 1차 판정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별표10에 의한 2차 판정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등급판정은 별표7내지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1. 기계등급판정은 별표6의 시설 및 적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기계등급판정기준의 적용은 제1항의 1호 및 2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도체의 중량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중량에 의한다.
2. 인력등급판정기준에 의한 등지방두께 측정은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 및 제11등뼈와 제12등뼈 사이의 등지방을 mm단위로 측정한 평균치로 한다.
3. 기계등급판정기준에 의한 등지방두께 및 등심직경은 초음파기계(Ultrafom, A-mode)를 사용하여 왼쪽 반도체의 제12등뼈와 제13등뼈 사이에서 복부방향으로 6cm지점의 도체표면에 기계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mm단위로 측정한다.
4. 기계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수율 측정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수율산식} &= 57.8661 - [0.4147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quad + [0.1443 \times \text{등심직경(mm)}] \end{aligned}$$

제10조(돼지도체의 등외판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등외로 판정한다.

1. 거세하지 않은 수돼지 특유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도체
2.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3. 도체중량이 40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 또는 씨수돼지(종모돈)의 도체
5. 등지방 및 복부지방이 진한 황색이거나 연지방으로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체
6. 비육상태가 아주 불량하며 등지방 및 복부지방 부착상태가 빈약한 도체
7.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마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8. 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제11조(돼지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규격등급은 “A, B, C, D”로, 육질등급은 “1⁺, 1, 2, 3”으로 표시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외판정의 경우에는 “E”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급표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체표면에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닭도체 · 부분육 등급판정

제14조(닭도체의 등급판정) ①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판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별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3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4와 같다.

② 닭도체등급판정의 결과는 절단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표시 및 그 절차는 도체의 경우와 같다.

③ 등급판정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16조(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①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17조(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할 수 있다.

제18조(닭도체의 등급표시) ①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0과 같이 등급판정일자,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2(닭고기 부분육)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계란 등급판정

제19조(계란의 등급판정) ① 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란의 품질등급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롯트의 크기에 따른 표본추출율(신청수량에 따른 표본의 수)은 별표16과 같다.

제20조(계란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계란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외관·투광 및 할란판정의 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표본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별표18과 같이 신청 롯트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② 각 품질등급별 파각란 허용범위는 별표19와 같다.

③ 등급판정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1조(계란의 중량규격 기준) ① 계란의 중량규격은 계란의 무게에 따라 별표20과 같이 구분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롯트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6의 규정에 따라 외관·투광판정을 실시하는 계란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

서 2g이상 미달하는 계란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22조(계란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거나,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계란의 롯트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6의 규정에 의한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할 수 있다.

제23조(계란의 등급표시) ① 계란의 등급표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을 포장용기에 부도11과 같이 등급판정일자, 축산물 등급판정소장 인영(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등과 병행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난각에 식용색소로 부도12와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각의 등급판정 확인표시 방법에서 집하장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집하장 코드, 생산자번호, 계군번호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도체 조직감 구분기준(제5조제2항제4호관련)

| 번호 | 구 분 기 준 |
|----|--|
| 1 | 수분이 알맞게 침출되고 탄력성이 좋으며 결이 곱고 섬세하며 고기의 광택이 좋고 지방의 질이 좋은 것 |
| 2 | 수분의 침출정도가 약간 많거나 적고 탄력성이 보통이며 결이 적당하고 고기의 광택 및 지방의 질이 보통인 것 |
| 3 | 수분의 침출정도가 아주 많거나 적고 탄력성이 좋지 않으며 결이 거칠고 고기의 광택 및 지방의 질이 좋지 않은 것 |

[별표2]

소도체 성숙도 구분기준(제5조제2항제5호관련)

| 번호 | 골 격 의 특 성 | | | |
|----|---|---|---------------------------------|--------------------------|
| | 홍 추 골 | 요 추 골 | 천 추 골 | 갈 비 뼈 |
| 1 | 홍추의 가시돌기는 매우 붉은색이고 다공성조직이 부드러우며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 요추골의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 천추의 각 뼈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연골은 선명하고 뚜렷함 | 갈비뼈는 붉고 연하며 등금 |
| 2 | 가시돌기는 붉고 다공성조직이 부드러우며 연골은 골화가 시작됨 | 골화가 시작 되었으나 연골이 약간 있음 | 천추 각 뼈들의구분이 일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음. | 붉고 약간 연하며 약간 넓어짐 |
| 3 | 가시돌기는 붉고 연골은 1/5정도가 골화됨. | 상당히 골화되었고 연골이 조금 있음 | 천추의 각 뼈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흔적만 보임. | 붉은색을 조금 잃어 버리고 약간 넓고 평평함 |
| 4 |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연골은2/5정도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 대부분 골화되었고 연골이 거의 없으나 골화된 연골 조직의 형태는 뚜렷함 | 천추의 각 뼈들의 구분 흔적도 흐리게 보임. | 붉은색을 많이 잃어 버리고 약간 넓고 평평함 |
| 5 |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 연골은3/5정도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 완전히 골화되었고 연골이 거의 없으나 골화된 조직이 뚜렷함. | 천추 구분이 없이 완전히 융합됨 | 약간 넓고 평평하며 조금 단단함 |
| 6 |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 연골은4/5정도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 완전히 골화되었고 골화된 연골 조직의 형태는 흐리게 보임. | 상 동 | 희어지고 넓고 평평함 |
| 7 |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거의 없고 연골은 완전히 골화되었으나, 가시돌기와 구분흔적이 남아 있음. | 완전히 골화되었고 연골은 골화된 형태마저 보이지 않음. | 상 동 | 희고 넓고 평평함 |
| 8 |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없고, 연골은 완전히 골화되어 가시돌기와 구분 흔적이 없음 | 완전히 골화됨 | 상 동 | 상 동 |
| 9 | 완전히 골화되어 연골 조직의 형태마저 구분이 불가능하고, 가시돌기와 구분이 없음 | 상 동 | 상 동 | 상 동 |

[별표3]

소도체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제5조제3항관련)

| 예비등급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 | |
|--------------------|----------------|-----|-----|-----|
| | 1개 | 2개 | 3개 | 4개 |
| 1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 1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등외 |
| 3등급 | 3등급 | 3등급 | 등외 | 등외 |

[별표4]

소도체의 등급표시 방법(제7조제1항관련)

| 구 분 | | 육 질 등 급 | | | | | |
|------------------|-----|--------------------|-------------------|-----|-----|-----|----|
| | | 1 ⁺⁺ 등급 | 1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 ⁺⁺ A | 1 ⁺ A | 1A | 2A | 3A | |
| | B등급 | 1 ⁺⁺ B | 1 ⁺ B | 1B | 2B | 3B | |
| | C등급 | 1 ⁺⁺ C | 1 ⁺ C | 1C | 2C | 3C | |
| | 등외 | D | | | | | |

※ 등급표시를 읽는 방법(예)

1⁺⁺A : 일투플러스에이등급, 1⁺B : 일플러스비등급, 3C : 삼씨등급

[별표5]

소도체의 결합내역 및 표시방법(제7조제2항관련)

| 결합내역 | 표시방법 |
|----------|------|
| 근출혈(筋出血) | ㅎ |
| 수 종(水腫) | ㅈ |
| 근 염(筋炎) | ㅇ |
| 외 상(外傷) | ㅅ |
| 근 육 제 거 | ㄱ |
| 기 타 | ㅌ |

[별표6]

기계등급판정시설 및 적용조건(제9조제2항제1호 관련)

1. 탕박의 방법에 의하여 도축되고 냉장처리하지 아니할 것
2. 도체의 피부에 화상 등이 없어 기계등급판정이 가능할 것
3. 도체의 이동은 기계등급판정까지 현수상태로 자동 이동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도체의 이동속도는 1마리당 최소 10초 이상일 것
5. 계근기에서 계측된 중량이 기계등급판정에 연계된 컴퓨터에 자동 전송될 것

[별표7]

돼지도체의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의한 규격등급 1차 판정기준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분 | 인력판정 | | | | 기계판정 | | |
|-----|------------------|-----------------|------------------|------------------|------------------|---------------|-----------|
| | 박피도체 | | 탕박도체 | | 탕박도체 | | |
| | 도체중 (kg) | 등지방 두께(mm) | 도체중 (kg) | 등지방 두께(mm) | 도체중 (kg) | 등지방 두께(mm) | 수율 (%) |
| A등급 | 이상 미만 71 - 84 | 이상미만 12 - 22 | 이상 미만 80 - 94 | 이상 미만 17 - 27 | 이상 미만 80 - 94 | 14.0이상 | 56.0이상 |
| B | 67 - 71 | 10 - 24 | 76 - 80 | 15 - 29 | 76 - 98 | 12.0 | 54.0 |
| | 71 - 84 | 10 - 12 | 80 - 94 | 15 - 17 | | | |
| | 71 - 84 | 22 - 25 | 80 - 94 | 27 - 30 | | | |
| | 84 - 88 | 11 - 25 | 94 - 98 | 16 - 30 | | | |
| C | 63 - 67 | 8 - 27 | 71 - 76 | 13 - 32 | 71 - 101 | 10.0 | 52.0 |
| | 67 - 84 | 8 - 10 | 76 - 94 | 13 - 15 | | | |
| | 67 - 71 | 24 - 27 | 76 - 80 | 29 - 32 | | | |
| | 71 - 88 | 25 - 28 | 80 - 98 | 30 - 33 | | | |
| | 84 - 88 | 9 - 11 | 94 - 98 | 14 - 16 | | | |
| | 88 - 91 | 9 - 28 | 98 - 101 | 14 - 33 | | | |
| D | A·B·C에 속하지 않는 것 | | A·B·C에 속하지 않는 것 | | A·B·C에 속하지 않는 것 | | |

[별표8]

돼지도체의 규격등급 2차 판정기준(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판정항목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균형 | 길이와 폭이 적당하며, 두껍고 엉덩이, 등심,어깨 및 복부의 각 부분이 충실하면서 균형이 특히 좋은 것 | 길이와 폭이 적당하며, 두껍고 엉덩이, 등심,어깨 및 복부의 각 부분이 충실하면서 균형이 좋은 것 | 길이와 폭,두께,전체의 형태, 각 부위간의 균형 등에 있어서 어느 것도 좋은점이 없는 반면 결점도 없는 것 | 전체의 형태, 각 부위간의 균형이 다같이 결점이 많은 것 |
| 비육상태 | 두껍고 매끈하면서 살집이 좋으며 도체에 대한 살코기의 비율이 특히 많은 것 | 두껍고 매끈하면서 살집이 좋으며 도체에 대한 살코기의 비율이 대체로 많은 것 | 특별히 우수한 것이 없으면 살코기의 비율이 보통으로 큰 결점이 없는 것 | 얇고 살집이 나쁘며 살코기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 |
| 지방부착상태 | 등지방 및 복부지방의 부착이 양호한 것 | 등지방 및 복부지방의 부착이 적당한 것 | 등지방 및 복부지방의 부착에 큰 결점이 없는 것 | 등지방및 복부지방의 부착에 결점이 인정되는 것 |
| 마무리 | 방혈이 잘 되고 질병 등에 의한 손상이 없고 취급의 잘못으로 인한 오염,손상등의 결점이 없는 것 | 방혈이 잘 되고 질병 등에 의한 손상이 없고 취급의 잘못으로 인한 오염,손상등의 결점이 거의 없는 것 | 방혈이 보통이고 질병 등에 의한 손상이 적으며 취급의 잘못으로 인한 오염,손상등의 결점이 없는 것 | 방혈이 불충분하고 손상이 있으며, 취급의 잘못으로 인한 오염등의 결점이 인정되는 것 |

[별표9]

돼지도체의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의한 육질등급 1차 판정기준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분 | 인력판정 | | | | 기계판정 | |
|-----|-------------|-----------|---------|-----------|---------|-----------|
| | 박피도체 | | 탕박도체 | | 탕박도체 | |
| | 도체중량(kg) | 등지방두께(mm) | 도체중(kg) | 등지방두께(mm) | 도체중(kg) | 등지방두께(mm) |
| 1등급 | 67 이상 | 10 이상 | 76 이상 | 15 이상 | 76 이상 | 12 이상 |
| 2등급 | 67 미만 | 10 미만 | 76 미만 | 15 미만 | 76 미만 | 12 미만 |
| 3등급 | 거세하지 않은 수돼지 | | | | | |

[별표10]

돼지도체의 육질등급 2차 판정기준(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판정항목 | 1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육색 | 부도9의 육색기준 No.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매우 좋은 것 | 부도9의 육색기준 No.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좋은 것 | 부도9의 육색기준 No.2 또는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 및 광택이 좋지 않은 것 | 부도9의 육색기준 No.1 또는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 및 광택이 매우 좋지 않은 것 |
| 지방색과 질 | 지방색은 백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탄력성과 끈기가 매우 좋은 것 | 지방색은 백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탄력성과 끈기가 좋은 것 | 지방색이 탁하고 탄력성 및 끈기가 다 같이 좋지 않은 것 | 지방색이 매우 탁하고 탄력성 및 끈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 |
| 조직감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좋고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적어 조직감이 매우 좋은 것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좋고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적어 조직감이 좋은 것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불량하고,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많아 조직감이 좋지 않은 것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불량하며,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매우 많아 조직감이 매우 좋지 않은 것 |
| 지방 침착도 | 부도8의 근내지방도 기준 No.4 또는 No.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 침착이 좋은 것 | 부도8의 근내지방도 기준 No.2 또는 No.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 침착이 보통인 것 | 부도8의 근내지방도 기준 No.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 침착이 미미한 것 | 부도8의 근내지방도 기준 No.1에 해당되지만 지방 침착이 전혀 없는 것 |
| 삼겹살 상태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5mm~15mm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적당히 두툼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매우 좋은 것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5mm~15mm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적당히 두툼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좋은 것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4mm이하 또는 16~20mm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얇거나 과도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좋지 않은 것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1mm이하 또는 21mm이상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거나 과도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매우 좋지 않은 것 |
| 결합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없는 것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거의 없는 것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심한 것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매우 심한 것 |

※ 육질등급 2차판정은 판정항목별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별표11] 삭제 <2007.7. >

[별표12]

별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관련)

(단위 : 상자)

| 별크포장 수 | 표본의 크기 |
|----------------------|--------|
| 1 ~ 4 | 모두 |
| 5 ~ 50 | 4 |
| 51 ~ 100 | 5 |
| 101 ~ 200 | 6 |
| 201 ~ 400 | 7 |
| 401 ~ 600 | 8 |
| 601개 이상은 매 100단위 증가시 | 1 추가 |

[별표13]

닭도체 품질기준(제15조제1항관련)

| 항목 | 품질 기준 | | | | | | |
|---------------------|--|----------|---|----------|--|----------|------|
| | A급 | | B급 | | C급 | | |
| 외관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굽지 않고 좋은 외형과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없는 것 |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약간 있는 것 |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많이 있는 것 | | |
| 비육상태 | 충분한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잘 된 것 | | 보통의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보통 인 것 | | 빈약한 착육성을 지니며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적은 것 | | |
| 지방부착 | 피부의 지방층이 매우 잘 발달된 것 | | 피부의 지방층이 충분히 발달된 것 | | 피부의 지방층이 빈약한 것 | | |
| 잔털,깃털 |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약간의 잔털이 있다. -길이 1cm 이하의 깃털 2개 이하 | |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잔털이 일부분만 퍼져있다. -길이 1cm 이하의 깃털 4개 이하 | |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잔털이 넓게 고루 퍼져있다. -길이 1cm 이하의 깃털 6개 이하 | | |
| 신선도 | 피부색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육질의 탄력성이 있다. | | 피부색, 광택 및 육질의 탄력성이 보통이다. | | 피부색이 불량하고 광택이 없으며 육질의 탄력성도 없다. | | |
| 외상 |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적의 지름이 2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적의 지름이 4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총면적의 지름이 가슴과 다리부위는 2cm, 기타부위는 6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 변색 |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 | 중량규격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부위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부위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부위 |
| | 13호미만 | 1.5cm | 3cm | 2.5cm | 5cm | 3.5cm | 7cm |
| 13호이상 | 2.5cm | 4cm | 4cm | 6cm | 6cm | 8cm | |
| 상처로 인한 응혈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 | | | |
| 뼈의 상태 | 골절 및 탈골된 것이 없어야 한다 | | 골절된 것이 없어야 하고, 1개의 탈골된 뼈는 허용한다 | | 1개이하의 골절 및 2개이하의 탈골은 허용한다. | | |
| 이물질 부착 | 없음 | | 없음 | | 없음 | | |
| 냄새 | 이상취 없음 | | 이상취 없음 | | 이상취 없음 | | |
| 도체처리 | 머리와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 및 허파, 식도, 기도, 모래주머니 등의 내장이 제거되고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담즙에 의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 | | | | | |

[별표14]

닭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제15조제1항관련)

(1) 전수 등급판정

| 등급 | 등급판정 결과 |
|------|-----------------------------|
| 1+등급 |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
| 1등급 |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
| 2등급 |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

(2) 표본등급판정

표본 닭도체의 등급판정 결과의 구성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품질등급을 부여한다.

< 표본 닭도체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

| 등급 | 등급판정 결과 |
|------|--|
| 1+등급 | A급의 것이 90%이상이고 C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B급) |
| 1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90%이상인 경우(나머지는 C급) |
| 2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90%미만인 경우 |

[별표15]

닭도체 호수별 중량범위(제16조제1항관련)

(단위: g/마리)

| 중량 규격 | 소 | | 중소 | | | 중 | | | 대 | | 특대 | | |
|----------|-----------------|-----------------|-----------------|-----------------|-----------------|-------------------|---------------------|---------------------|---------------------|---------------------|---------------------|---------------------|-------------|
|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 해당 호수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 중량 범위 | 451 ~ 550 | 551 ~ 650 | 651 ~ 750 | 751 ~ 850 | 851 ~ 950 | 951 ~ 1,050 | 1,051 ~ 1,150 | 1,151 ~ 1,250 | 1,251 ~ 1,350 | 1,351 ~ 1,450 | 1,451 ~ 1,550 | 1,551 ~ 1,650 | 1,651 이상 |

[별표16]

롯데크기에 따른 표본 추출율(제19조제3항 관련)

| 롯데의 크기 | 표본 추출율 |
|-------------------|----------|
| 3,000개 미만 | 롯데의 7%이상 |
| 3,000이상 15,000미만 | 롯데의 5%이상 |
| 15,000이상 30,000미만 | 롯데의 3%이상 |
| 30,000개 이상 | 롯데의 2%이상 |

- (1) 표본추출된 계란중 100개 이상의 계란에 대하여 외관 및 투광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표본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량의 계란에 대하여 외관 및 투광판정을 실시한다.
- (2) 외관 및 투광판정이 실시된 계란 중 20개 이상에 대하여 활란판정을 실시한다.

[별표17]

계란의 품질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판정항목 | | 품질기준 | | | |
|----------|---------------------|--------------------------------------|--|---|---|
| | | A급 | B급 | C급 | D급 |
| 외관 판정 | 난각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에 이상이 없는 것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에 이상이 없으며 난각의 조직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 | 약간 오염되거나 상처가 없으며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에 이상이 있는 것 | 오염되어 있는 것, 상처가 있는 것,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
| | 기실 | 깊이가 4mm이내 | 깊이가 8mm 이내 | 깊이가 12mm이내 | 깊이가 12mm 이상 |
| 투광 판정 | 난황 |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흐리나 퍼져 보이지 않는 것 | 거의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뚜렷하고 약간 퍼져 보이는 것 |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현저하게 퍼져 보이는 것 |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완전히 퍼져 보이는 것 |
| | 난백 | 맑고 결착력이 강한 것 | 맑고 결착력이 약간 떨어진 것 | 맑고 결착력이 거의 없는 것 | 맑고 결착력이 전혀 없는 것 |
| 할란 판정 | 난황 | 위로 솟음 | 약간 평평함 | 평평함 |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
| | 농후난백 | 많은 량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 싸고 있음 | 소량의 난백이 난황주위에 퍼져 있음 | 거의 보이지 않음 | 이취가 나거나 변색되어 있는 것 |
| | 수양난백 | 약간 나타남 | 많이 나타남 | 아주 많이 나타남 | |
| | 이물질 | 크기가 3mm 미만 | 크기가 5mm 미만 | 크기가 7mm미만 | 크기가 7mm이상 |
| | 호우단위 ⁽¹⁾ | 72이상 | 60이상~72미만 | 40이상~60미만 | 40미만 |

(1) “호우단위(Haugh Units)”라 함은 계란의 무게와 농후난백의 높이를 측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text{호우단위(H.U)} = 100 \log(\text{H}+7.57-1.7\text{W}^{0.37})$$

H : 난백높이(mm)

W : 난중(g)

[별표18]

계란의 품질등급 부여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품질등급 | 등급판정 결과 |
|-------------------|---|
| 1 ⁺ 등급 | A급의 것이 70%이상이고, B급이상의 것이 90%이상이며 D급의 것이 3%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C급) |
| 1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80%이상이고, D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기타는 C급) |
| 2등급 | C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기타는 D급) |
| 3등급 | C급 이상의 것이 90% 미만(기타는 D급) |

[별표19]

파각란허용범위(제20조제2항관련)

| 품질등급 | 파각란 허용범위 |
|-------------------|----------|
| 1 ⁺ 등급 | 7%이하 |
| 1등급 | 9%이하 |
| 2등급 | 12%이하 |
| 3등급 | 12%초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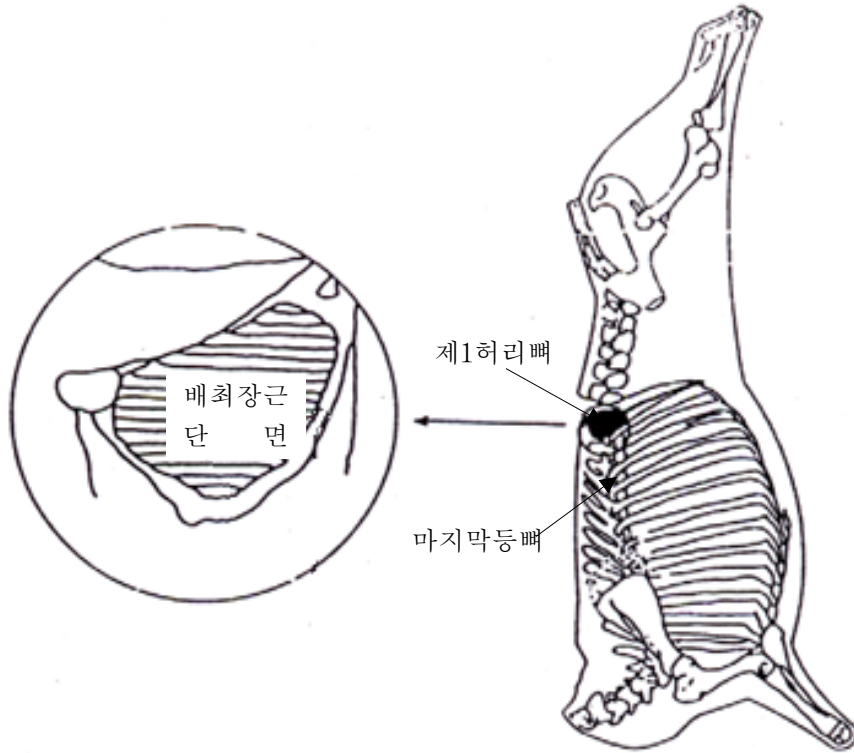
[별표20]

계란의 중량규격(제21조제1항 관련)

| 규격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
| 중량 | 68g 이상 | 68g 미만~ 60g 이상 | 60g 미만~ 52g 이상 | 52g 미만~ 44g 이상 | 44g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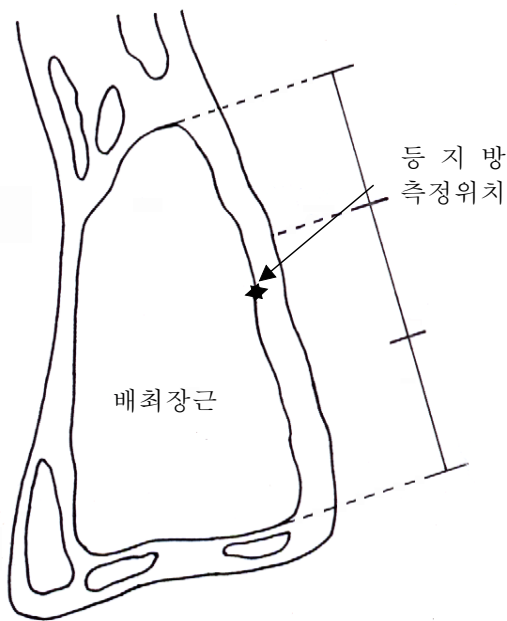
[부도1]

등굽판정 부위(제4조제2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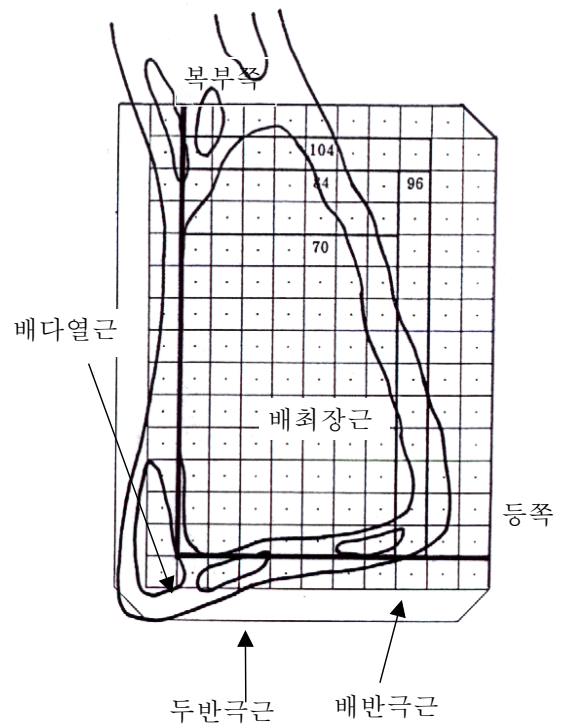
[부도2]

등지방두께 측정부위(제4조제2항제1호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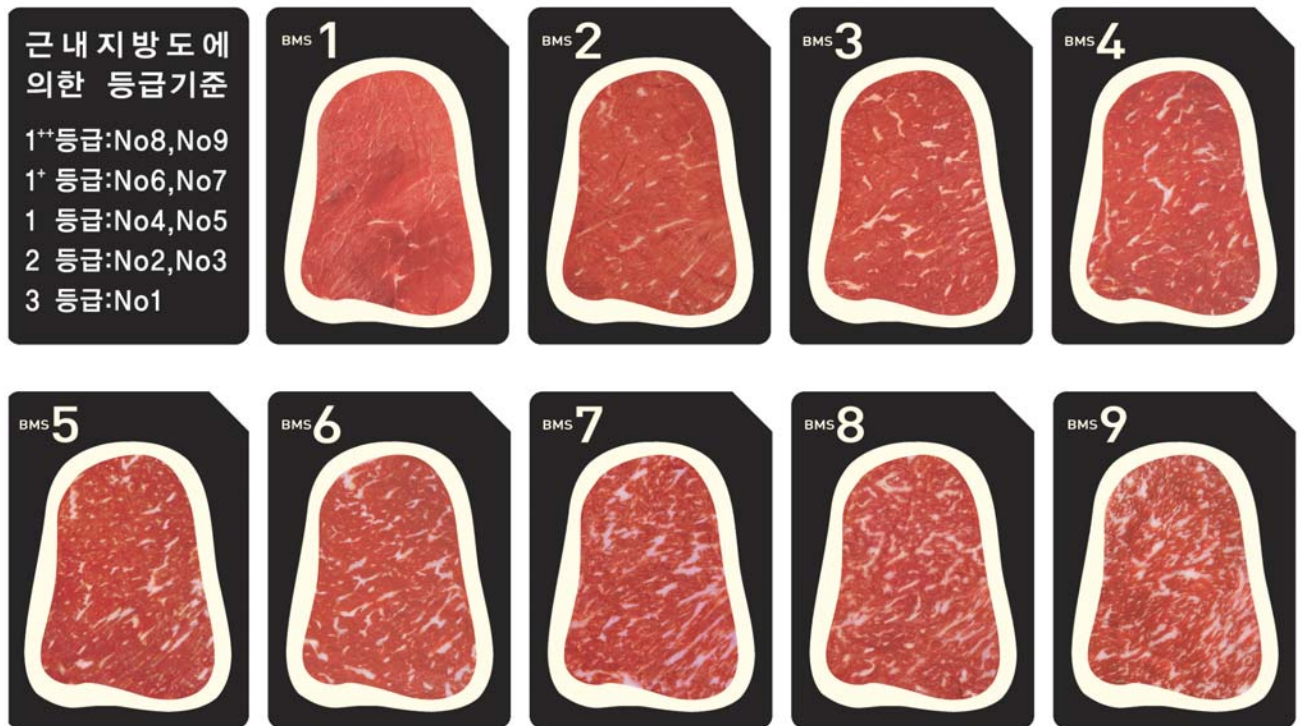
[부도3]

배최장근단면적 측정(제4조제2항제2호관련)



[부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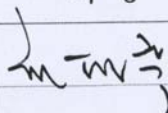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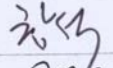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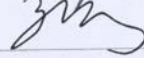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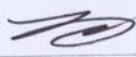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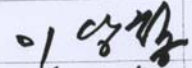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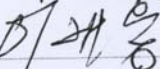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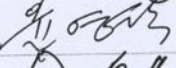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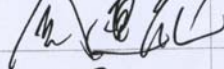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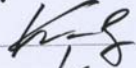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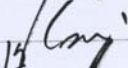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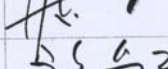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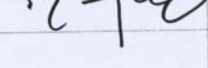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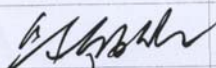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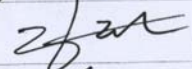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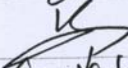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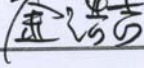
소도체의 근내지방도 기준(제5조제2항제1호관련)



부 록 5.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명단

'축산물 등급표시 방법 개선' 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명부

2008. 12. 5 (금)

| 소 속 | 참석자 | 서 명 | 비 고 |
|-------------|-----|--|-----|
| 농림수산식품부 | 최대휴 |  | 팀 장 |
| | 윤영렬 | | 사무관 |
| 한국식품연구원 | 이무하 |  | 원 장 |
| 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  | 팀 장 |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노경상 |  | 원 장 |
| 국립축산과학원 | 이상철 |  | 부 장 |
| 축산물등급판정소 | 이재용 |  | 소 장 |
| | 윤영탁 |  | 본부장 |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김연화 |  | 원 장 |
| 소비자시민모임 | 강광파 |  | 이 사 |
| 한국소비자원 | 김만중 |  | 부 장 |
| 농협 축산물공판장 | 김운철 |  | 장 장 |
| 축산기업중앙회장 | 한수현 |  | 전 무 |
| 신세계이마트 | 홍종식 | | 팀 장 |
| (주)선진 | 이익문 |  | BU장 |
| 전국한우협회 | 장기선 |  | 부 장 |
| 대한양돈협회 | 정선현 |  | 전 무 |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김호길 |  | 전 무 |
| 계 | 18명 | | |

16명 참석 12/14

부 록 6.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비교

< 목 차 >

| | |
|---------------------------------|-----|
| I.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및 시행 | 168 |
| 1. 도입배경 | 168 |
| 2. 등급제도의 의의 | 169 |
| 3. 법령 제정 | 170 |
| 4. 시행 시기 및 방법 | 171 |
| 5. 담당기관 | 171 |
| 6. 등급판정수수료 | 173 |
| II.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비교 | 178 |
| 1. 소·돼지 등급판정제도 | 178 |
| 2. 가금·계란 등급판정제도 | 190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도입 및 시행

도입배경

축산물의 품질을 지육 및 부위별로 구분하는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유통, 소비 수단계에 걸친 지표로서의 역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 미국 농무성에서는 지난 수년간 쇠고기에 등급을 정해주는 통일된 체계 및 방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르는 기준의 체계화는 생산자로부터 소매업자 및 일반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마케팅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자의 역할이었으며, 그들은 지방과 뼈 등의 버리는 양을 최소화하고 좋은 품질의 기름기 적은 쇠고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쇠고기 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생산이 표준화(규격화)되고 품질등급제도를 이해하는 것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 일본에서는 등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도축장에서 주로 생체 거래 후 도살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후에 도체의 거래가 확산되고 유통합리화 일환으로 도매시장이 정비되었고 도체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넓은 지역까지 대량 유통이 촉진된 이상으로 전국공통의 거래규격에 의한 등급판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육류와 가축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통일된 용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다.

- EU의 경우 역내 회원국들이 소도체 등급제도를 채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서 각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생산구조와 소비성향에 따라 등급제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발달되어 왔다. 등급제 채택의 동기도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식육유통업에 관련된 민간주도하의 정부지원에 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정부에서 식육의 유통을 원활히 통제할 목적으로 각국 정부주도하에 시작되었다.
- 호주의 경우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효과를 본 이후 다른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점점 더 이 용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내수시장에서도 회사상품 또는 주단위 상표로 이용되고 있다.

등급제도의 의의

축산농가에게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구매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 등급평가제도는 축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주고 있다.
 -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중요하다.
 - 쇠고기 근내지방도, 육색 및 지방색의 향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를 도와준다.
 - 소비자는 소매 우육에서 보다 더 일관된 품질을 제공받을 것이다.
 - 축산물평가제도가 비슷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시장 확보 기회를 산업체에 제공한다.
 - 생산자는 피드백(Feedback)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아니라 육질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육질에 맞추어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육류와 가축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보증과 제품의 규격사항을 정하여 이에 포함된 식육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품질에 따른 원활한 맞춤소비를 유도한다.

- 식품위생에 직결된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구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품질기준을 제시해 준다.
-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등급의 발상은 같은 품질과 같은 크기의 생산물을 하나의단위로 하여 유통을 편리하도록 하는데 있다. 다만 소비형태가 다양하므로 품질과 크기에 있어서 우수한 것은 대부분의 용도에 적당하여야 한다.
- 유통업자나 중간상인들이 제품을 일일이 보거나 들고 다니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등급은 잠재적으로 가격에 대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자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적절한 생산목표를 수립하는 근거로서 등급결과를 활용하고, 유통업자는 거래의 기준으로서 등급을 이용하며, 소비자는 그 용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등급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삼자(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의 3가지 의의를 부여하여 집약한 것이 등급이고 시장의 공표에 의하여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다.

법령 제정

주요국 모두 축산물 등급관정을 관련법령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에 근거를 두고 식육 및 식육 부산물의 등급, 분류 및 기준에 대하여 연방법전 코드 7(7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54장(Part 54)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생축(Livestock)의 등급, 분류 및 기준에 대하여는 제53장(Part 53)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가금 및 토끼산물에 대하여는 제70장(Part 70)에서, 계란은 제56장(Part 56)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 캐나다는 농산물법(Agricultural Products Act)에 근거를 두고 축산물 및 가금 도체에 관한 등급 규정(Livestock and Poultry Carcass Grading Regulations)에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 EU는 의회규정(Council Regulation)에 근거를 두고 소도체 등급범위 결정을 위한 규정, 도체등급을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수립하는 규정 등 관련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 호주는 식육 및 축산업 (수출 라이선싱) 규정(the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Industry (Export Licensing) Regulations)에 의거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 한국은 축산법에 근거를 두고 도체의 등급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등급관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07-40호)에서 정하고, 도체 등급관정의 확대를 위하여 축산물등급 거래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05-14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법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식품부 고시 제2007-82호)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 표 I -150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근거법령

| 구 분 | 법 령 | 시행시기 |
|-----|--|-------|
| 미 국 | Agricultural Marketing Act | 1927년 |
| 캐나다 | Agricultural Products Act | 1929년 |
| EU | Council Regulation (EC) | 1972년 |
| 호 주 | Meat and Livestock Industry (Export Licensing) Regulations | 1987년 |
| 일 본 | 축산물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1964년 |
| 한 국 |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 1993년 |

시행 시기 및 방법

시행시기

- 주요국별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는 쇠고기의 경우 1920년대에 미국 및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였으며, 뒤를 이어 1964년에 일본이 시행하고 1972년 EU, 1987년 호주, 1993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시행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I-151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시행시기

| 구 분 | 쇠고기 | 돼지고기 | 가금 | 계란 |
|-----|-----------|-----------|-------------|-----------|
| 미 국 | 1927년 | 1927년 | 1917년 | 1917년 |
| 캐나다 | 1929년 | 1929년 | - | - |
| EU | 1972년(독일) | 1972년(독일) | 1941년(영국) | 1941년(영국) |
| 호 주 | 1987년 | - | - | - |
| 일 본 | 1964년 | 1964년 | 1961년(거래규격) | - |
| 한 국 | 1993년 | 1993년 | 2003년 3월 | 2001년 12월 |

주)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을 말하며, 한국은 닭고기만 해당

시행방법

- 주요국 대부분에서 소, 돼지, 가금 및 계란 등 축산물의 등급판정 적용에 있어 해당 국가의 시장 규모, 수출육에 한정되는 특수성, 자율경쟁 유도 등 이유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89년 UR 협상에 따른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국내산 한우·양돈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의 궤하고자 소와 돼지에 대하여 '93년 시행초기부터 점차 축산물등급 거래지역을 확대하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08년 현재 백령도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참고로, 일본의 경우 닭고기 및 계란의 등급판정제도는 규정만 제정된 상태로 실제로 시장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담당기관

- 주요국 대부분에서 축산물등급판정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만 사단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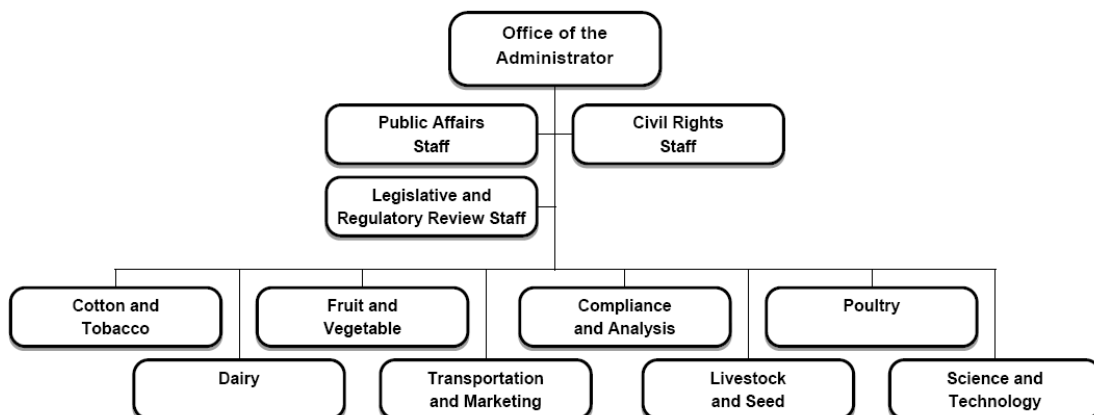
< 표 I -152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담당기관

| 구 분 | 쇠고기 | 돼지고기 | 가금 | 계란 |
|--------|--------------|--------------|-----------|-----------|
| 미 국 | USDA(MGCB) | USDA(MGCB) | USDA(PGB) | USDA(PGB) |
| 캐나다 | CBGA | CBGA | CFIA | CFIA |
| EU(영국) | MHS | MHS | MHS | EMI |
| 호 주 | AUS-Meat Ltd | AUS-Meat Ltd | - | - |
| 일 본 | (사)일본식육격부협회 | (사)일본식육격부협회 | (사)일본식조협회 | - |
| 한 국 |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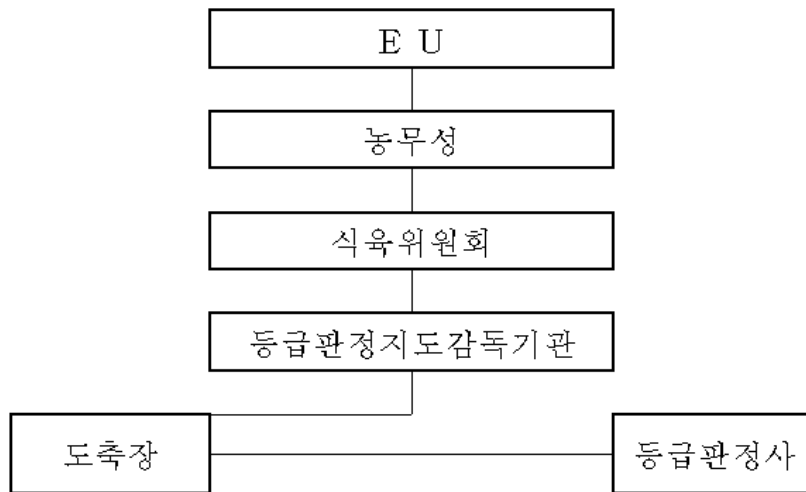
- * 미국 : USDA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 Livestock and Seed Division - the Meat Grading and Certification Br.
 - Poultry Division - the Poultry Grading Br.
- * 캐나다 : Canada Beef Grading Agency(캐나다 쇠고기 등급판정기관)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캐나다 식품위생 검사기관)
- * 영국 : Meat Hygiene Service(식육위생검사기관)
Egg Marketing Inspectorate(계란유통검사기관)
- * 호주 : Authority for Uniform Specification Meat and Livestock(식육 및 육류의 통일규격 위원회)

< 그림 I -1 > 미국의 등급판정기관 조직체계도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그림 I-2 > EU(덴마크)의 등급판정기관 조직체계도



등급판정수수료

가. 수수료

주요국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당 비용으로 산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간당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 표 I-153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 구 분 | 쇠고기 | 돼지고기 | 가금 | 계란 |
|---------|----------|----------|------------|------------|
| 미 국 | 45\$/시간 | 45\$/시간 | 29.96\$/시간 | 29.96\$/시간 |
| 캐나다 | 1.25\$/두 | 13\$/두 | 44\$/시간 | 57\$/시간 |
| EU(덴마크) | 2.3크로네/두 | 0.2크로네/두 | - | - |
| 호 주 | - | - | - | - |
| 일 본 | 540엔/두 | 104엔/두 | - | - |
| 한 국 | 2,000원/두 | 400원/두 | 70천원/7천수 | 50천원/50천개 |

* 캐나다에서 송아지, 양, 들소의 경우에는 13\$/15분

한국

- 우리나라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농식품부 고시 제2007-6호, '07.2.14)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 축산물 품목별 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는 1두당 2,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부분육의 경우에는 1박스당 300원을 징수한다.
 - 돼지는 1두당 400원을 징수한다.

- 닭은 7천수당 70천원을 기준으로 1일 7천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마리당 8원을 가산하고 10천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마리당 6원을 가산한다. 다만 부분육의 경우에는 1kg을 1수로 보아 계산한다.
- 계란은 50천개당 50천원을 기준으로 1일 50천개 이상 판정시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1개당 1원을 가산한다.

미국

- 1946년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에 의거 서비스의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수료가 적정하고 합당한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한다. 더구나 등급제품의 유통이익(Cost-Recovery Basis)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 등급판정사와 관리자(Supervisor)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비용을 책정한다. 고용자의 임금과 이익을 위해 대략 81%를 계산하고 있으며 임금과 비용이 상승한 만큼 수수료를 인상한다.
- 쇠고기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대략 파운드당 1/20센트이거나 도체당 약 38센트이다.
- 쇠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계란 등급판정 수수료는 다음표와 같다.

< 표 I -154 > 미국의 등급판정 수수료

< 소·돼지 >

| 서비스 종류 | 수수료 | 비고 |
|---|--|---|
| (a)계약하지 않은서비스의 수수료(비상주) (1) 일과시간 (2) 일과시간 이외의 근무 (3) 휴일근무 | (1) 시간당 \$52 (2) 시간당 \$57 (3) 시간당 \$90 | 주5일기준 오전6시-오후6시 까지 ※휴일-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b)계약된 서비스(상주) (1)일과시간 (2) 일과시간을 이외의 근무 (3) 휴일근무 | (1) 시간당 \$45 (2) 시간당 \$57 (3) 시간당 \$90 | |

< 가금·계란 >

| 구 분 | 내 용 | 비 용(\$) | 비 고 |
|---------------------|--|---------|--------|
| 등급판정사가 상주하는 작업장인 경우 | 서비스 신청비(inauguration of service) | 310 | 1회성 경비 |
| | 시간당 수수료(평일기준) | 29.96 | |
| | 행정 수수료 (가금 등급판정) | | |
| | 가금 1파운드당 | .00035 | |
| | 월별 최소치 | 225 | |
| | 월별 최대치 | 2,625 | |
| | 행정 수수료 (계란) | | |
| | 30-dozen 당 | .044 | |
| | 월별 최소치 | 225 | |
| | 월별 최대치 | 2,625 | |
| | 행정 수수료 (토끼) 등급판정사 월급의 25%를 기준 월별 최소치 | 260 | |
| 비상주 등급판정 서비스 | 시간당 수수료(Hourly charge) 통상시간 | 29.96 | |
| | 행정수수료 (월마다 등급사 급여 최소치의 25%를 기준) | 260 | |
| 상주 등급판정 서비스 | 시간당 수수료(Hourly charge) 통상시간 | 51.32 | |
| |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시간당 | 59.12 | |

캐나다

○ 캐나다의 소, 돼지, 가금 및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는 아래표와 같다.

< 표 I-6 > 캐나다의 등급판정 수수료

| 구분 | Service, Right, Product, Privilege 또는 Use | 수수료 |
|----|--|-----------------------------------|
| 소 | 송아지, 양, 들소, 소 도체를 규정 3(2)항에서 언급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등급판정사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송아지, 양, 들소 혹은 소 도체에 적용된 등급명을 모니터링할 경우 | |
| | (a) 송아지, 양, 들소 도체의 등급판정과 모니터링의 경우 | 15분당 13달러 |
| | (b) 소도체의 경우 (1) 등급판정 (2) 모니터링 | (1) 도체당 1.25달러 (2) 15분당 13달러 |
| 돼지 | 규정 3(2)항에서 언급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등급판정사에 의해 돼지도체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혹은 돼지도체에 적용된 등급명을 모니터링 할 경우 | |
| | (a) 시간당 250두미만의 도체가 등급판정되는 작업장에서의 등급판정과 모니터링 | 15분당 13달러 |
| | (b) 시간당 250두 이상의 도체를 등급판정하는 작업장의 경우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 도체당 0.22달러 |
| 가금 | 가금도체에 적용된 등급명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시간당 \$44 |
| | 도축장에서 가금도체의 등급명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 (주평균 도축물량/수) | 연간수수료 |
| | 5,000 미만 | \$750 |
| | 5,000 ~ 14,999 | \$1,000 |
| | 15,000 ~ 29,999 | \$1,250 |
| | 30,000 ~ 74,999 | \$1,500 |
| | 75,000 이상 | \$2,000 |
| 계란 | 검사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의 계란을 검사할 경우 | 시간당 57달러이지만 검사당 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 | 계란가공장에서 계란을 검사할 경우 | 시간당 57달러 |
| | 수출란을 검사할 경우 | 시간당 37.5달러이지만 검사당 1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 | 수입란을 검사할 경우 | 선적량 당 104달러 |
| | 가공을 목적으로 가공공장으로 운송되는 수입란을 검사할 경우 | 선적량 당 28달러 |
| | 등급판정받지 않은 계란을 검사할 경우 | 검사당 167달러 |
| | 집하장 일반 현황과 세부계획에 대해 검사원이 재검사할 경우 | 시간당 51.3달러 |
| | 법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검사할 경우 | 시간당 67달러 |

○ 다만, 계란의 경우 등록 집하장의 연간 검사수수료는 주 평균 등급판정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의 표에 따라 검사수수료는 식품검사청이 발부한 청구서에 근거해서 징수하며, 연 검사 수수료

료 징수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연 검사 수수료가 300달러 미만일 경우, 식품검사청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 수수료의 25%는 식품검사청이 발부한 청구서에 근거해서 징수
- 나머지 수수료의 75%는 회계연도 내에 일정 간격으로 3회 분할 방법으로 징수

< 표 I-7 > 캐나다의 계란등록집하장의 연 검사수수료

| 구분 | 주 평균 등급판정 몰량(boxes) | 연 수수료(달러) |
|----|---------------------|-----------|
| 1 | 30,001이상 | 18,390 |
| 2 | 25,001 ~ 30,000 | 16,860 |
| 3 | 20,001 ~ 25,000 | 13,790 |
| 4 | 15,001 ~ 20,000 | 11,920 |
| 5 | 10,001 ~ 15,000 | 8,515 |
| 6 | 8,001 ~ 10,000 | 6,130 |
| 7 | 6,001 ~ 8,000 | 4,770 |
| 8 | 4,001 ~ 6,000 | 3,410 |
| 9 | 2,001 ~ 4,000 | 2,050 |
| 10 | 1,001 ~ 2,000 | 1,530 |
| 11 | 501 ~ 1,000 | 770 |
| 12 | 101 ~ 500 | 480 |
| 13 | 50 ~ 100 | 200 |
| 14 | 50미만 | 135 |

나. 요금부담자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는 주로 등급판정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EU(덴마크)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 표 I-8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부담자

| 미 국 | 캐나다 | EU(덴마크) | 호주 | 일본 | 한국 |
|----------------|--------------|---------|----|------------------------|-----|
| 등급 신청자 (팩커) | 출하자 또는 팩커 | 생산자 | - | 신청자 (생산자 또는 출하자) | 신청자 |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비교

1. 소·돼지 등급판정제도

가. 한국

쇠고기

- 판정방법 : 인력방법
- 등급종류
 - 육질등급 : 1⁺⁺, 1⁺, 1, 2, 3등급 등 5개
 - 규격등급 : A, B, C등급 등 3개
 - 등외등급 : D
- 육량등급

| 육량등급 | 육량지수 |
|------|---------------------|
| A | 67.50 이상 |
| B | 62.00 이상 ~ 67.50 미만 |
| C | 62.00 미만 |

- 평가항목 : 등지방두께(mm), 배최장근단면적(cm²), 도체중량(kg)
- 육량산식 = $68.184 - [0.625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0.130 \times \text{배최장근단면적(cm}^2\text{)}]$
 $- [0.024 \times \text{도체중량(kg)}]$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 육질등급

- 평가항목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 근내지방도에 의한 육질등급 예비판정기준

| 근 내 지 방 도 | 예비등급 |
|-------------------------|--------------------|
| 근내지방도 번호 8 또는 9에 해당되는 것 | 1 ⁺⁺ 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 | 1 ⁺ 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 | 1 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 | 2 등급 |
| 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 | 3 등급 |

- 육질등급 최종판정 기준

| 예비등급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 | |
|--------------------|----------------|------|------|------|
| | 1개 | 2개 | 3개 | 4개 |
| 1 ⁺⁺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3 등급 |
| 1 ⁺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3 등급 |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3 등급 | 3 등급 |
| 2 등급 | 3 등급 | 3 등급 | 3 등급 | 등외 |

○ 등급표시

| 구 분 | | 육 질 등 급 | | | | | 등외 |
|------------------|------|--------------------|-------------------|------|------|------|----|
| | | 1 ⁺⁺ 등급 | 1 ⁺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
| 육 량 등 급 | A 등급 | 1 ⁺⁺ A | 1 ⁺ A | 1A | 2A | 3A | |
| | B 등급 | 1 ⁺⁺ B | 1 ⁺ B | 1B | 2B | 3B | |
| | C 등급 | 1 ⁺⁺ C | 1 ⁺ C | 1C | 2C | 3C | |
| | 등외 | D | | | | | |

돼지고기

- 판정방법 : 인력방법, 기계방법
- 대상 : 박피·탕박의 냉도체 또는 온도체
 - 품종, 연령, 성별의 구분없이 적용

○ 등급종류

- 육질등급 : 1⁺, 1, 2, 3등급 등 4개
- 규격등급 : A, B, C, D등급 등 4개
- 등외등급 : E

○ 규격등급 판정

- 등급결정 : 1차 판정과 2차 판정을 한 후 1차 판정결과와 2차 판정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최종판정
- 도체중과 등지방두께 등에 의한 규격등급 1차 판정기준

| 구분 | 인력판정 | | | | 기계판정 | | |
|-----|------------------|-----------------|------------------|------------------|------------------|------------|--------|
| | 박피도체 | | 탕박도체 | | 탕박도체 | | |
| | 도체중 (kg) | 등지방 두께(mm) | 도체중 (kg) | 등지방 두께(mm) | 도체중 (kg) | 등지방 두께(mm) | 수율 (%) |
| A등급 | 이상 미만 71 - 84 | 이상미만 12 - 22 | 이상 미만 80 - 94 | 이상 미만 17 - 27 | 이상 미만 80 - 94 | 14.0이상 | 56.0이상 |
| B | 67 - 71 | 10 - 24 | 76 - 80 | 15 - 29 | 76 - 98 | 12.0 | 54.0 |
| | 71 - 84 | 10 - 12 | 80 - 94 | 15 - 17 | | | |
| | 71 - 84 | 22 - 25 | 80 - 94 | 27 - 30 | | | |
| | 84 - 88 | 11 - 25 | 94 - 98 | 16 - 30 | | | |
| C | 63 - 67 | 8 - 27 | 71 - 76 | 13 - 32 | 71 - 101 | 10.0 | 52.0 |
| | 67 - 84 | 8 - 10 | 76 - 94 | 13 - 15 | | | |
| | 67 - 71 | 24 - 27 | 76 - 80 | 29 - 32 | | | |
| | 71 - 88 | 25 - 28 | 80 - 98 | 30 - 33 | | | |
| | 84 - 88 | 9 - 11 | 94 - 98 | 14 - 16 | | | |
| | 88 - 91 | 9 - 28 | 98 - 101 | 14 - 33 | | | |
| D | ABC에 속하지 않는 것 | | ABC에 속하지 않는 것 | | A·B·C에 속하지 않는 것 | | |

- 규격등급 2차 판정 : 균형, 비육상태, 지방부착상태, 마무리 등 4개항목

○ 육질등급 판정

- 등급결정 : 1차 판정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2차 판정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판정
- 도체중과 등지방두께 등에 의한 육질등급 1차 판정

| 구분 | 인력판정 | | | | 기계판정 | |
|-----|-------------|-----------|---------|-----------|---------|-----------|
| | 박피도체 | | 탕박도체 | | 탕박도체 | |
| | 도체중량(kg) | 등지방두께(mm) | 도체중(kg) | 등지방두께(mm) | 도체중(kg) | 등지방두께(mm) |
| 1등급 | 67 이상 | 10 이상 | 76 이상 | 15 이상 | 76 이상 | 12 이상 |
| 2등급 | 67 미만 | 10 미만 | 76 미만 | 15 미만 | 76 미만 | 12 미만 |
| 3등급 | 거세하지 않은 수태지 | | | | | |

▪육질등급 2차 판정기준

| 항목 | 1+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육색 | 부도9의 육색기준 No.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매우 좋은 것 | 부도9의 육색기준 No.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좋은 것 | 부도9의 육색기준 No.2 또는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 및 광택이 좋지 않은 것 | 부도9의 육색기준 No.1 또는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색 및 광택이 매우 좋지 않은 것 |
| 지방색과 질 | 지방색은 백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탄력성과 끈기가 매우 좋은 것 | 지방색은 백색이고 광택이 있으며 탄력성과 끈기가 좋은 것 | 지방색이 탁하고 탄력성 및 끈기가 다 좋지 않은 것 | 지방색이 매우 탁하고 탄력성 및 끈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 |
| 조직감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좋고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적어 조직감이 매우 좋은 것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좋고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적어 조직감이 좋은 것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불량하고,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많아 조직감이 좋지 않은 것 | 육의 탄력성 및 결이 불량하며,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가 매우 많아 조직감이 매우 좋지 않은 것 |
| 지방 침착도 | 부도8의 근내지방도기준 No.4 또는 No.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침착이 좋은 것 | 부도8의 근내지방도기준 No.2 또는 No.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침착이 보통인 것 | 부도8의 근내지방도기준 No.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침착이 미미한 것 | 부도8의 근내지방도기준 No.1에 해당되지만 지방 침착이 전혀 없는 것 |
| 삼겹살 상태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5mm~15mm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적당히 두툼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매우 좋은 것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5mm~15mm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적당히 두툼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좋은 것.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4mm 이하 또는 16~20mm 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얇거나 과도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좋지 않은 것 | 부도9의2 삼겹살내 근간지방두께가 1mm 이하 또는 21mm 이상 이거나 삼겹살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거나 과도하고, 지방 피복상태 등이 매우 좋지 않은 것 |
| 결함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없는 것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거의 없는 것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심한 것 | 농양, 방혈불량, 골절, 오염, 근육제거 등의 결점이 매우 심한 것 |

※ 육질등급 2차판정은 판정항목별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나. 미국

최고기

- 판정방법 : 인력판정
- 품질등급(Quality Grade)
 - 등급 :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 Canner (총 8개)
 - 판정항목 : 마블링, 성숙도, 육색 등에 의해 분류
 - 출현율('07) : Prime(2.6%), Choice(57.9%), Select(39.1%), Standard(0.30%)
- 수율등급(Yield Grade) : 1, 2, 3, 4, 5등급 등 5개
 - 판정방법 : 지방두께, 갈비심면적, KPH 지방량 등에 의해 분류
- 등급판정 미도체 (Ungrade or No Roll)

< 그림 II-3 > 마블링과 성숙도의 관계

| 근대지방도 | 성숙도 | | | | | | |
|---------------------|-----|----------|-----|---|------------|--------|---|
| | 0 | A | 100 | B | C | D | E |
| Abundant | | | | | | | |
| Moderately Abundant | | | | | | | |
| Slightly Abundant | | PRIME | | | | | |
| Moderate | | | | | COMMERCIAL | | |
| Modest | | CHOICE | | | | | |
| Small | | | | | | | |
| Slight | | SELECT | | | UTILITY | | |
| Traces | | | | | | | |
| Practically Devoid | | STANDARD | | | | CUTTER | |

- 최종 품질등급결정(FQS) : 마블링과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돼지고기

- 판정방법 : 인력판정
 - NPPC에서는 회원 농가에 대하여 육질등급판정을 실시
- 품질과 수율을 병합한 등급
 - U.S. No. 1, U.S. No. 2, U.S. No. 3, U.S. No. 4, U.S. Utility (5개)
- 돼지도체의 분류
 - barrow(거세돈), gilt(미경산돈), sow(경산돈), stag(중모돈), boar(비거세돈)
 - ※ stag(중모돈), boar(비거세돈)에 대한 등급은 판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쇠고기

- 판정방법 : 인력판정
- 품질등급 종류 : Prime, AAA, AA, A, B1, B2, B3, B4, D1, D2, D3, D4, E 등 13개
 - 판정방법 : 성숙도, 육 및 지방의 품질, 지방상태, 외관적 근육 성숙도 등
- 육량등급(수율측정자 이용) : 갈비심 면적(갈비12-13번째 사이) 측정
 - * 육량등급은 Prime, AAA, AA, A등급에만 적용
- 성숙도 : 어린소(30개월 이하), 늙은소(30개월 이상)로 구분
 - ※ 등급별 성숙도

| 등급 | Prime, AAA, AA, A | B1 ~ B4 | D1 ~ D4 | E |
|-----|-------------------|---------|---------|-----|
| 성숙도 | 어린소 | 어린소 | 늙은소 | 늙은소 |

- 육 및 지방의 품질(갈비심 부위) : 육색, 지방교잡도, 조직감

돼지고기

- 판정방법 : 기계판정
 - 좌도체의 마지막 늑골에서 3번째와 4번째 늑골사이의 2분체 분할 정중선에서 북부방향으로 7cm 지점에서 탐침방법에 의하여 측정

○ 기계측정에 의한 수율등급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
| 수율 | 64.3% 이상 | 61.8- 64.29 | 59.6- 61.79 | 57.7- 59.59 | 56.1- 57.69 | 54.7- 56.09 | 54.7 이하 |

○ 캐나다 암태지 등급을 위한 등지방두께

| 등급 | Sow1 | 2 | 3 | 4 | 5 | 6 |
|---------------|--------|-----------|-----------|-----------|-----------|--------|
| 등지방두께 (mm) | 18.9이하 | 19.0-29.9 | 30.0-47.9 | 48.0-63.9 | 64.0-79.9 | 80.0이상 |

- 등지방두께는 측정도구(자)에 의한 것 임
- 근육도와 마무리가 좋아야 함

호주

쇠고기

- 판정방법 : 육질은 인력판정 및 육량은 기계판정
- 등급판정 및 구분
 - 육질등급 : 육색, 지방색, 마블링양, 최장근 부위, 늑골지방, 도체의 성숙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도체에 할당하면 개별 계약 명세에 따라 도체를 선택하며, 등급결과는 평가 기관(AusMeat Ltd) 인증업체와 그 고객 및 공급업체만 이용 가능
 - 육량등급 : 1, 2, 3, 4, 5, 6등급 등 6개로 분류
- 육질평가기준(인력판정)
 - 평가항목 : 근내지방(No.1-9), 육색(쇠고기 9단계, 송아지 5), 지방색(No.0-9), 늑골지방측정, 도체성숙도
- 육량등급기준(기계판정)
 - 온도체중량,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를 기계로 측정하여 적육율 추정
 - 승인기계 : Cut and Measure Knife와 Hennessy Grading Probe (2개)

※ '99년부터 등급, 요리법, 숙성조건을 평가항목으로 MSA등급을 별도로 사용('07년 15%)

- MSA 3, 4, 5등급 등 3개로 구분
- 평가항목 : 마블링(100~1100, 10단위 구분), 육색(1A, 1B, 1C, 2~7; 9단계), 지방색(0~9; 10단계), 성숙도/경도(100~590, 10단위 구분), pH(최적 pH 5.70이하), 피하늑골지방, 육지방

돼지고기

- 판정방법 : 기계판정
- 등급종류 : 체중범위 A~M등급 등 13개 등급과 지방분류 0~5등급 등 6개 등급을 조합하여 A1, A2, A3, G1 등 78개로 구분
- 판정기계 : 유럽형 Introscope와 호주·뉴질랜드형 Hennessy Grading Probe 사용

EU(영국, 네덜란드)

쇠고기

- 판정방법 : 인력판정
 - 수출위주의 공동기준 적용, 단 유럽연합 각 회원국내에서의 교역시는 자국의 등급기준 적용
- 등급구분
 - 도체 분류 : 7종으로 분류(송아지고기, 육성우고기, 수고육성우고기, 수소고기, 거세우고기, 경산우고기, 암소고기)
 - 도체의 외형등급 : 도체 전체의 살붙임 상태(전구, 중구, 후구의 근육발달 정도)에 따라 S, E, U, R, O, P 등 6개 등급으로 구분
 - 도체의 지방등급 : 도체의 외면 피하지방 부착상태, 도체 내면의 복강내지방 축적상태 및 뒷다리 안쪽의 피하지방 부착상태에 따라 1-5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

돼지고기

○ 판정방법 : 기계판정

- 유럽연합 각 회원국내에서의 교역시는 자국의 등급기준 적용하고 회원국간의 교역시는 반드시 통합 등급기준 적용
- 공인기계 : Ultra Sound Scanner(SSD 256), Zwei Punkt Messverfahren(ZP), Fully Automatic Ultrasonic Carcass Grading(Autifom)

○ 등급의 종류 : S, E, U, R, O, P 등 6개 등급

* 별도구분 : M1, M2, V, Z

○ 등급기준(도체등급)

- EU 통합 도체등급은 기계적 측정방법에 의해서 도체 측정치를 측정하고 측정치들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져 각 회원국 및 등급측정기기별로 시험결과 확립된 수출산식으로 얻어진 수출성적에 따라 등급 적용
- 거래등급기준

| 거래등급 | 규정(수율) |
|------|--------------|
| S | 60%이상 |
| E | 55이상 ~ 60%미만 |
| U | 50이상 ~ 55%미만 |
| R | 45이상 ~ 50%미만 |
| O | 40이상 ~ 45%미만 |
| P | 40미만 |

* 'S'등급은 등급제 운영상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E등급의 상위등급으로 별도구분하여 사용

○ 별도 구분

- 경산 암돼지 도체 : M1, M2 (근육발달 정도에 따라)
- 수돼지 도체 : V
- 결함 도체 : Z
 - * 결함 : 매우 여윈 도체, 불구인 도체, 흠이 있는 도체, 연지방 또는 물돼지(PSE) 도체, 거친 피부의 도체, 부분적으로 도려낸 도체

○ 덴마크의 도체등급에 따른 가격정산 방법(1997년 1월 1일 제정)

▪도체중에 의한 가감

| 도체중 | 가감내역 | 비 고 |
|----------------|-----------------------|-----|
| 50.0 ~ 109.9kg | 도체중에 따라서 지급 | |
| 63.9 ~ 59.0kg | kg당 10크로네 씩 감액지급 | |
| 59kg 미만 | 50크로네 감액지급 | |
| 64.0 ~ 77.9kg | 일정비율로 지급 | |
| 78kg ~ 87.9kg | 10크로네 씩 감액지급 | |
| 87kg | 도체 kg당 1.00D크로네씩 감액지급 | |

▪수율에 의한 가감

| 수 율 | 가감내역 | 비 고 |
|---------------------------------------|-----------------|-----|
| 59%이상 | 1%당 10크로네씩 증액지급 | |
| 59%이하 | 1%당 10크로네씩 감액지급 | |
| 최고 증액금은 60크로네로서 65%이상인 경우 일정하게 증액지급 | | |
| 최고 감액금은 110크로네로서 48%이하인 경우는 일정하게 감액지급 | | |

일본

쇠고기

○ 최근 개정 : 1988년 3월(농림수산성 축산국장 승인)

- 근내지방도 평가기준의 완화
- 근내지방도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고기의 색과 광택, 고기의 탄력 및 결 및 지방의 색과 관택 및 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 절개 부위를 흉추 제6번과 7번사이로 통일
-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개정

○ 육량등급

▪평가항목 : 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갈비두께, 피하지방의 두께

▪육량산식 = $67.37 + [0.130 \times \text{배최장근단면적}(\text{cm}^2)]$
 $+ [0.667 \times \text{갈비두께}(\text{cm})]$
 $+ [0.025 \times \text{냉도체중}(\text{반도체, kg})]$
 $+ [0.896 \times \text{피하지방의 두께}(\text{cm})]$

단 육용종 도체(지육)의 경우에는 2.049를 가산하여 육량 기준치로 한다

▪육량등급 : A, B, C등급 등 3개 등급

| 등급 | 육량 기준치 | 육 량 |
|----|-------------|-----------------|
| A | 72이상 | 부분육 육량이 표준이상인 것 |
| B | 69이상 ~ 72미만 | 부분육 육량이 표준인 것 |
| C | 69미만 | 부분육 육량이 표준이하인 것 |

○ 육질등급

▪등급종류 : 1, 2, 3, 4, 5등급 등 5개

▪평가항목 : 근내지방도, 육색, 고기의 탄력 및 질, 지방의 색과 질

▪등급기준

〈근내지방도〉

| 등 급 | 5 | 4 | 3 | 2 | 1 |
|----------|---------|---------|-------|---------|---------|
| B.M.S No | 8 ~ 12 | 5 ~ 7 | 3 ~ 4 | 2 | 1 |
| | 매우 많은 것 | 다소 많은 것 | 표준인 것 | 다소 적은 것 | 거의 없는 것 |

〈고기의 색과 광택〉

| 등 급 | 5 | 4 | 3 | 2 | 1 |
|----------|---------|---------|-------|---------|-------------------|
| B.C.S No | 3 ~ 5 | 2 ~ 6 | 1 ~ 6 | 1 ~ 7 | 등급 5 ~ 2 이외의 것 |
| | 매우 좋은 것 | 다소 좋은 것 | 표준인 것 | 표준에 준한것 | |

〈고기의 탄력과 결〉

| 등 급 | 5 | 4 | 3 | 2 | 1 |
|-----|---------|---------|-------|----------|---------|
| 탄 력 | 매우 좋은 것 | 다소 좋은 것 | 표준인 것 | 표준에 준하는것 | 충지 않은 것 |
| 결 | 매우 가는 것 | 다소 가는 것 | 표준인 것 | 표준에 준하는것 | 거친 것 |

〈지방의 색과 광택 및 질〉

| 등 급 | 5 | 4 | 3 | 2 | 1 |
|----------|---------|---------|-------|---------|-------------------|
| B.F.S No | 1 ~ 4 | 1 ~ 5 | 1 ~ 6 | 1 ~ 7 | 등급 5 ~ 2 이외의 것 |
| 광택과 질 | 매우 좋은 것 | 다소 좋은 것 | 표준인 것 | 표준에 준한것 | |

▪육질등급의 결정(예) : 최저 등급 적용

| | |
|-----------|---|
| 육질등급 | 3 |
| 근내지방도 | 4 |
| 고기의 선택 | 4 |
| 고기의 탄력과 결 | 3 |
| 지방의 선택과 질 | 4 |

○ 등급표시

| 육량등급 | 육질등급 | | | | |
|------|--------|--------|--------|--------|--------|
| | 5 | 4 | 3 | 2 | 1 |
| A | A 5 | A 4 | A 3 | A 2 | A 1 |
| B | B 5 | B 4 | B 3 | B 2 | B 1 |
| C | C 5 | C 4 | C 3 | C 2 | C 1 |

□ 돼지고기

○ 최근 개정 : 1996년 8월(농림수산성 축산국장 승인)

▪품종별, 연령별,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

▪등급기준을 극상, 상, 중, 병, 등외의 5단계

▪등급을 결정하는 모든 도체의 모양은 반도체를 원칙으로 함

▪등급판정은 박피 또는 탕박한 도체를 대상으로 함

※가족증량을 도체중의 평균 9.9%로 하여 탕박용 판정표 작성

▪해체정형 방법 통일

○ 대상 : 박피 탕박의 냉각도체 또는 온도체

▪품종, 연령, 성별의 구분없이 적용

○ 등급종류 : 극상, 상, 중, 병, 등외 등 5개 등급

○ 등급기준

▪도체중 : 반도체 중량 적용

▪등지방두께 측정 : 흉추 제9번과 제13번사이의 등지방이 가장 얇은 부위를 측정

▪외관 평가항목 : 균칭, 살붙임, 지방부착, 마무리

▪육질 평가항목 : 육의 탄력과 결, 육의 선택, 지방의 선택과 질, 지방의 침착

○ 등급결정(최저 등급 적용)

- 등급판정표의 반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에 의하여 해당하는 등급을 판정하고 이어서 외관과 육질의 각항 조건에 따라 등급을 결정

2. 가금·계란 등급판정제도

가. 가금

한국 (닭고기)

- 등급의 종류 : 1⁺등급, 1등급, 2등급의 3개 품질등급과 특대, 대, 중, 중소, 소 등 5개의 중량규격으로 구분
- 품질등급 항목 : 외관, 살붙임, 지방부착, 잔털·깃털, 신선도, 변색, 외상, 뼈의상태, 냄새, 이물질부착, 도체처리상태
- 품질관리방법 : 회사직원이 등급판정 대상 도체를 처리(정선)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
- 판정방법 : 신청된 닭도체에 대하여 개체포장용 제품은 개체별로 전수를 판정하고, 대량처리용의 요구에 의한 벌크포장용 제품은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
- 등급의 결정 : 목표등급 이하의 도체가 10%미만이면 해당 등급부여

미국

- 등급의 종류 : US A, B, C 3개의 품질등급과 중량을 100g 단위로 포장지에 표시
- 품질등급 항목 : 외형, 착육성, 지방부착, 깃털제거, 절단, 찢김, 골절, 변색, 멍, 혈반, 동결소 등
- 품질관리방법 : 연방정부의 등급판정사에 의해 공인된 자체등급판정사가 사전에 도계라인에서 목표 등급 이하의 도체를 선별해 냄
- 판정방법 : 도계라인에서 일정시간(30~90분)마다 30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품질수준이하의 도체가 10%미만이면 합격(표본추출)
 - 도계장에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결점을 Co-Sum(합산)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적재장이나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등급판정은 LOT 판정방법을 적용함
- 등급의 결정 : 목표등급이하의 도체가 10%미만이어야 함($30 > 3$)

□ EU(영국)

- 등급의 종류 : Class A, Class B 등 2개 등급으로 구분
- 품질등급 항목 : 외형, 착육성, 지방부착, 깃털제거, 외상, 골절, 변색, 찢김, 동결소 등
- 품질관리방법 : 회사직원이 중량등급 라인에서 15개의 버튼을 눌러 A등급 이하의 도체를 제거함
- 판정방법 : Batch 크기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 등급의 결정 : A등급의 경우 30개의 샘플수 중 A등급 미만이 5개를 초과하면 안됨($30 > 5$)

나. 계란

한국

- 품질등급 :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중량규격 :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각 8g씩의 차이를 두어 5개 규격으로 분류

<계란의 중량규격>

| 규격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
| 무게 | 68g이상 | 60g이상~68g미만 | 52g이상~60g미만 | 44g이상~52g미만 | 44g미만 |

- 등급판정 방법 : 계란의 등급판정은 계란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출하농가 별 산란주령 등을 고려하여 룯트를 구성하고, 선별·세척·코팅·건조과정을 거쳐 제품화된 계란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후 외관검사·투광검사 및 할란검사 결과와 파각율에 따라 품질급수를 부여하고 품질평가기준 급수 구성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급부여

<품질평가 기준>

| 구분 | | A급 | B급 | C급 | C급 |
|------------------|----------|--------------------------------------|--|--|---|
| 외 관 검 사 | 난각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에 이상이 없는 것 | 대체로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 | 약간 오염되고 상처가 없으며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에 이상이 있는 것 | 오염되어 있는 것, 상처가 있는 것, 계란의 모양과 난각의 조직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
| | 기실 | 깊이가 4mm이내 | 깊이가 8mm이내 | 깊이가 12mm이내 | 깊이가 12mm초과 |
| 투 광 검 사 | 난황 |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흐리나 퍼져 보이지 않는 것 | 거의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뚜렷하고 약간 퍼져 보이는 것 |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현저하게 퍼져 보이는 것 |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완전히 퍼져 보이는 것 |
| | 난백 | 맑고 결착력이 강한 것 | 맑고 결착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 맑고 결착력이 거의 없는 것 | 맑고 결착력이 전혀 없는 것 |
| 할 란 검 사 | 난황 | 위로 솟음 | 약간 평평함 | 평평함 |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
| | 농후 난백 | 많은량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음 | 소량의 난백이 난황 주위에 퍼져 있음 | 거의 보이지 않음 | 혈반 또는 이물질이 보이는 것 |
| | 수양 난백 | 약간 나타남 | 많이 나타남 | 아주 많이 나타남 | |
| | 호우 단위 | 72이상 | 60이상~72미만 | 30이상~60미만 | 30미만 |

<파각란 허용범위>

| 품질등급 | 1+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파각란 허용범위 | 7%이하 | 9%이하 | 10%이하 | 10%초과 |

미국

- 품질에 의한 등급(quality standard) : AA, A, B
- 중량에 의한 등급(weight class) : Jumbo, Extra large, Large, Medium, Small, Peewee
- 등급판정 방법 : 외부품질상태는 육안으로, 내부품질은 주로 투광에 의하여 조사

<미국의 개별란 계란품질규격>

| 품질요인 | AA급 | A급 | B급 |
|--|--------------------------------------|--|---|
| 난각 | 표면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난형으로 깨어지지 않은 것 | 표면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난형으로 깨어지지 않은 것 | 표면에 약간의 얼룩진 부분이 있고 ¹⁾ , 난형에 이상이 있지만 깨어지지 않은 것 |
| 기실 | 기실의 깊이가 1/8inch를 초과하지 않은 것 | 기실의 깊이가 3/16 inch를 초과하지 않은 것 | 기실의 깊이가 3/16 inch를 초과하는 것 |
| 난백 | 투명하고 견고함 | 투명하고 비교적 견고함 | 연약하고 끈기없는 물이 있으며, 작은 혈반이나 육반이 혼합되어 있는 것 ²⁾ |
| 난황 | 윤곽을 희미하게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함도 없는 것 | 윤곽을 어느정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함도 없는 것 | 윤곽이 확실히 보이고 짙은 색으로 약간 크게 퍼져 납작하게 보이며, 배아의 발육을 볼 수 있으나 혈반은 없어야 함 |
| 오란 | | 파란 | |
| 깨어지지 않은 상태. 오물, 이물질, 반점 등의 오염물들이 부분적으로 난각표면의 1/32이상 에 부착되어 있거나 흩어져서 1/16이상을 덮고 있는 계란 | | 난각이 깨어지거나 금이 갔지만 난각막은 정상으로 내부의 물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계란 ³⁾ | |

¹⁾ 약간의 얼룩이 있어도 무방함(얼룩이 모여 있으면 표면적의 1/32까지, 흩어져 있으면 1/16)

²⁾ 육반의 크기가 1/8inch 이내일 것

³⁾ 난각과 난각막이 깨어졌거나 손상되어도 내용물이 외부로 세지 말아야 함

<미국의 계란 소비자 등급>

| 기준등급 | 허용 조건(생산지 기준) | 허용조건(소비지 기준) |
|----------|--------------------------------------|--------------------------------------|
| Grade AA | AA가 87%이상, A또는 B가 13%미만, 파각율 5%이하 | AA가 72%이상, A또는 B가 28%미만, 파각율 7%이하 |
| Grade A | A이상(AA포함)이 87%이상, B가 13%미만, 파각율 5%이하 | A이상(AA포함)이 82%이상, B가 18%미만, 파각율 7%이하 |
| Grade B | B이상(AA, A포함)이 90%이상, 파각율 10%이하 | B이상(AA, A포함)이 90%이상, 파각율 10%이하 |

<미국의 중량등급 기준>

| 중량등급 | Jumbo | Extra large | Large | Medium | Small | Peewee |
|-----------|-------|-------------|-------|--------|-------|--------|
| 1개당 무게(g) | 71이상 | 64이상 | 57이상 | 50이상 | 42이상 | 35이상 |

일본

- 품질등급 : 특급, 1급, 2급, 등외품 등 4가지로 구분
- 중량등급 : LL, LL, M, MS, S, SS
- 등급판정방법 : 외관검사, 투광검사(할란검사는 투광검사에 의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하며, 보통은 외관검사와 투광검사만으로 등급을 결정)

<일본의 개별란 계란품질규격>

| 검사사항 | 등급 | 특급(AAA) | 1급(AA) | 2급(A) | 등외(B) |
|-------|--------|--------------------------------|--|--------------------------------|--|
| 외관 검사 | 난각 | 깨끗하고 정상적인 난형으로 깨지지 않은 것 | 대체로 깨끗하며 난형은 약간 이상이 있으나 깨지지 않은 것 | 약간 오염되며, 깨지지 않고 난형에 이상이 있는 것 | 난각이 깨져 있으며, 난각의 오염이 크고, 난형의 이상이 있는 것 |
| 투광 검사 | 난황 |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고 결점이 없는 것 | 대체로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명확하고 희미한 결점이 있으며 난황이 약간 평평한 것 | 중심에서 벗어나며 평평해 보이고 약간의 결점이 있는 것 | 난황, 난백에 이상이 있으며, 혈반, 기타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 |
| | 난백 | 투명하고 견고한 것 | 투명하고 약간 유연한 것 | 연약한 액상을 보이는 것 | |
| | 기실 | 깊이는 4mm이내 | 깊이는 8mm이내, 기실이 약간 이동 | 깊이는 8mm이상, 기포가 있으며 크게 이동 | |
| 할란 검사 | 확산 면적 | 좁게 퍼진다. | 보통크기로 퍼진다. | 넓게 퍼진다. | |
| | 난황 | 둥글게 솟은 것 | 약간 평평하다. | 평평하다. | |
| | 농후난백 | 난황을 중심으로 견고히 둘러싼다. | 소량으로 평평하다. | 거의 농후난백이 없다. | |
| | 수양성 난백 | 적다 | 보통이다. | 많다. | |

<품질등급별 오차허용범위>

| 등급 | 특급(AAA) | 1급(AA) | 2급(A) | 등외(B) |
|----|--|---|----------------------|----------------------|
| 품질 | 포장중 특급품질의 계란이 개수로 7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1급 품질의 계란일 것, 단 나머지 부분중 총 개수의 3%이하의 2급품이나 1%이하의 급외품도 포함될 수 있다. | 포장중 1급품 이상의 개란의 개수가 80%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2급품질일 것, 단 나머지 부분중 총 개수의 3%이하의 급외품도 포함될 수 있다. | 포장중 급외란이 개수로 5%이하인 것 | 포장중 급외란이 개수로 5%이상인 것 |

<일본의 중량등급 기준>

| 중량등급 | LL | L | M | MS | S | SS |
|-----------|-----------|-----------|-----------|-----------|-----------|-----------|
| 1개당 무게(g) | 70 ~ 76미만 | 64 ~ 70미만 | 58 ~ 64미만 | 52 ~ 58미만 | 46 ~ 52미만 | 40 ~ 46미만 |

EU

- 품질에 의한 등급(quality classes)
 - A급, B급, C급(품질등급의 기준이 A급은 신선란에 적용되며, 저장란은 B급으로 분류)
- 중량에 의한 등급(weight grades)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EU의 계란품질 규격>

| 구분 | A급 | B급 | C급 |
|-------------|---|--------------------|---|
| 난각 및 난각막 | 정상, 청결, 손상이 없는 것 | 정상, 손상 없으며 청결한 것 | 눈에 보일 정도의 손상 |
| 기실 | 6mm 이하의 깊이 | 9mm 이하의 깊이 | 9mm를 초과하지 않음 |
| 난백 | 맑고 투명하며 견고한 성질, 이물질 없음 | 맑고 투명하며 이물질 없음 | A와 B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계란 |
| 난황 | 형태가 흐릿한 윤곽만 보임, 알을 돌릴 때 움직임이 안보일 정도, 이물질 없음 | 투광시 윤곽이 보임, 이물질 없음 | |
| 배 | 알아볼 수 없을 정도 | | |
| 냄새 | 이상한 냄새 없음 | | |
| 습식 또는 건식 세척 | 허락 안됨 | 허락됨 | 허락됨 |

<ECC의 중량등급 기준>

| 중량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1개당 무게(g) | 70이상 | 65~70 | 60~65 | 55~60 | 50~55 | 45~50 | 45이하 |

< 참고 문헌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
2.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2007. 위기의 도축장 탈출구는 없는가?
3.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8. 식육편람
4.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8. 2차 육가공산업 및 외식산업의 실태와 소비확대 방안
5.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월간 축산물등급판정통계
6.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7.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고객만족 우수사례
8.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안내
9.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 축산물등급판정소 혁신리더 워크숍(6월)
10.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축산물등급판정소 혁신리더 워크숍(7월)
11.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 경영평가 및 혁신대회
12.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 경영실적보고서
13. 미국 USDA. 1997. USA for Grades of Carcass Beef
14. 미국 USDA. 1985. USA for Grades of Pork Carcasses
15. 미국 USDA. 2002. US Classes, Standards, and Grades for Poultry
16. 미국 USDA. 1985. USA for Grades of Pork Carcasses
17. 미국 USDA. 2008. Regulations Governing the Voluntary Grading of Poultry Products and Rabbit Products
18. 미국 USDA. 1985. USA for Grades of Pork Carcasses
19. 미국 USDA. 1998. Poultry-Grading Manual
20. 미국 USDA. 2000. US Standards, Grades, and Weight Classes for Shell Eggs
21. 미국 USMEF. 2006. United States Meat Information Passport
22. 호주 AUS-Meat. 2005. Handbook of Australian Meat(호주식육편람 제7판)
23. 호주 AUS-Meat. 2008. Beef/Veal Language Brochures
24. 호주 AUS-Meat. 1996. Advanced Carcase Fat Measurement Bovine Workbook
25. 호주 AUS-Meat. 2000. Advanced Carcase Fat Measurement Porcine Workbook

26. 캐나다 CanLII. 1992. Livestock and Poultry Carcass Grading Regulations
27. 캐나다 CanLII. 1985.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28. 캐나다 CBEF. 2008. The Handbook of Canadian Beef(캐나다쇠고기구매안내서)
29. 미트저널사. 1993. 미국의 육류산업
30. 국립축산과학원. 1998. 주요국의 육류등급제도
31. EU Council Regulation. 1984. determining the Community scale for grading pig carcasses
32. EU Council Regulation. 1981. determining the Community scale for grading beef carcasses